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실무안내

2023. 06



금융감독원

* 일러두기

본서에서 인용하는 ‘법’ 또는 ‘자본시장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지배구조법’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금산법’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영’ 또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규정’은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은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을 의미합니다.

본서는 금융감독원 펀드신속심사실(심사총괄팀)에서 업무참고용으로 집필·발간한 자료로서 금융감독원의 공식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님을 밝혀둡니다.

개정판 발간사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2004년 12월 국내에 도입된 이후, 자본시장에서 기업 구조개선, 모험자본 공급 등과 관련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2004년 12월말 기준 2개, 3,100억원이었던 펀드수 및 출자약정액은 2022년 12월말 기준 1,098개, 125조 2,863억원까지 증가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더욱이 2021년 10월 사모펀드 제도개편으로 사모펀드 운용규제가 일원화되고 규제수준도 완화됨에 따라,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지난 십수년간의 바이아웃(buy-out) 투자 일변도의 틀에서 벗어나, 크레딧 펀드 등 보다 창의적이고 다양한 운용 전략 구사가 가능해지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기관전용 사모펀드 시장은 또 한 번의 도약을 이룰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간 금융감독원은 기관전용 사모펀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두 차례(2011년 12월, 2016년 12월) 기관전용 사모펀드에 대한 “실무안내서”를 발간한 바 있습니다. 동 실무안내서를 통해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개념부터 관련 법령까지 복잡한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제공하여, 기관전용 사모펀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데 충실한 길잡이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2016년 12월 이후 추가적인 개정본의 발간이 지연됨에 따라 2021년 10월 사모펀드 제도개편 사항을 반영하지 못하는 등 개정본 발간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에서는 최근의 제도개편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과거 실무안내서에서 다소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하여 금번에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실무안내」 개정본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동 실무안내서를 통해 다양한 시장참여자들이 기관전용 사모펀드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2023년 6월 28일

금융감독원 펀드신속심사실장 **민 봉 기**

[제 1 장]

개관

제1절 사모투자전문회사(PEF) 제도 도입 배경 8
 제2절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개요 및 분류 10
 제3절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관련 현황 13
 제4절 연혁 18

[제 2 장]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제1절 설립 및 보고 41
 제2절 사원 및 출자 53
 제3절 재산 운용 65
 제4절 내부 운영 88
 제5절 재산 평가 등 95
 제6절 해산 및 청산 98
 제7절 감독 및 검사 107
 제8절 특례 규정 113

[제 3 장]

업무집행사원(GP)

제1절 업무집행사원의 개요 128
 제2절 업무집행사원 등록 제도 133

[제4장]

특수목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제1절 기업재무안정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160
제2절 창업·벤처전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168

[제5장]

FAQ

제1절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설립 관련	174
제2절 재산운용 관련	178
제3절 투자목적회사 관련	180
제4절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변경보고 관련	185
제5절 경영권 참여보고 관련	188
제6절 GP 등록 관련	191
제7절 2021.10월 사모펀드 제도 개편 이후 규정 관련	192
제8절 기 타	195

[제6장]

업무집행사원 및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보고 실무

제1절 GP 등록 이후 보고전 준비사항	198
제2절 GP 및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보고	201

참고자료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관련 서식	206
---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실무안내
Handbook

개관

제1절 사모투자전문회사(PEF) 제도 도입 배경

제2절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개요 및 분류

제3절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관련 현황

제4절 연혁

제 1 장 개관

제1절 사모투자전문회사(PEF) 제도 도입 배경

1 | 기존 투자수단의 한계

- IMF 외환위기 이후 비효율적 지배구조 및 경영능력 취약 기업에 대한 대규모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 국내 금융기관 및 기업의 인수·매각을 통해 거대차익을 실현한 외국계 사모펀드 등에 대항할 국내자본 육성과 연기금 등의 대규모 장기 투자 수요 확대 등에 따른 새로운 투자 대안 필요
- 이미 부실기업 및 금융기관 부실채권 정리 등을 위해 다양한 기업구조조정 기구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었으나,
 - 특정 구조조정 목적에 따라 투자대상, 투자방법, 운용주체 자격 등이 제한되고, 이미 도산된 기업의 청산가치를 극대화하는 소극적 구조조정에 그쳐 일반적인 구조조정기구로 정착되는데 한계가 있었음

2 | 대체 투자수단 도입 필요성

- 기존 기업구조조정기구와 달리 자금조성 및 투자·운영 전반에 대해 포괄적인 자율권이 부여되는 종합적인 구조조정 펀드를 육성하기 위해 '04.10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 마련

'04년 당시 기업구조조정기구 비교

	CRV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	CRF (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	CRC		사모M&A펀드 (기업인수증권 투자회사)	CR-REITs (기업구조 조정 부동산 투자회사)
			CRC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CRC조합 (기업구조 조정조합)		
근거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	증권투자회사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산업발전법		증권투자회사법,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부동산투자 회사법
목적	위크아웃기업의 경영정상화	중소기업 지원	구조조정기업의 경영정상화		구조조정기업의 M&A 활성화	구조조정 부동산의 처분·운용
특징	채권기반 보유 대상기업 채권의 CRV 집중	중소기업에 대한 일시적인 유동성 지원	구조조정기업에 대한 투자 및 인수		유가증권 투자를 통해 구조조정기업의 M&A를 추진	투자의 70% 이상을 구조조정 부동산에 투자하는 형태
대상	기업개선계획이 수립된 부실기업 (위크아웃기업 등)	일시적 자금부족을 겪는 중소·중견 첨단산업기업	부실기업 및 구조조정이 필요한 부실징후기업		-	-
업무	위크아웃기업 유가증권 매매, 대출채권 우동화 및 매매 등 위크아웃기업의 정상화 업무 주도	대상기업에 대한 부채조정 (단기·장기), 신주인수, 대상기업에 대한 경영지도 및 자문	구조조정기업에 대한 투자 및 인수		증권거래법상 공모 외의 방법으로 주식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동 자금으로 기업을 인수·합병	주식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동 기업을 기업의 구조조정용 부동산에 투자
투자	채권금융기관이 보유한 기업 부실자산	기업의 유가증권, 콜론 등 (자산 50% 이상 대기업의 기업의 유가증권에 투자)	구조조정대상기업 및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등		중소·중견기업의 유가증권 등	부동산, 부동산 관련 유가증권 등
감독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산업 자원부	금융감독 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건설교통부 금융감독 위원회
한계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위크아웃기업 부실채권의 정리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설립	외환위기 이후 자금난에 처한 중소기업의 신규 발행, 주식 채권에 대한 투자를 통해 단기부채를 장기부채로 차환하는 재무구조조정기능난 수행	투자대상이 산별법상 부실기업으로 한정		① 일반적인 사모펀드에 적용되는 규제 중 일부를 면제받는 형식으로 제도화되어 있어 기업인수 펀드 특성이 고려되지 않음 ② 법적형식이 투자회사로 한정됨에 따라 분배 등에서 투자자(주주) 평등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 ③ 사무수탁회사 등에 펀드재산내역 제공의무로 인해 정보기밀 유지 관련	부동산투자 회사법상 부동산투자 회사의 특수형태로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매각하는 부동산 투자에 특화

제2절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개요 및 분류

◆ '21.10월 사모펀드 체계 개편으로, 사모펀드 운용규제가 일원화됨에 따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舊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도 경영권 참여 목적 이외의 투자가 가능해졌으나, 동 실무안내서에서는 경영권 참여 목적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위주로 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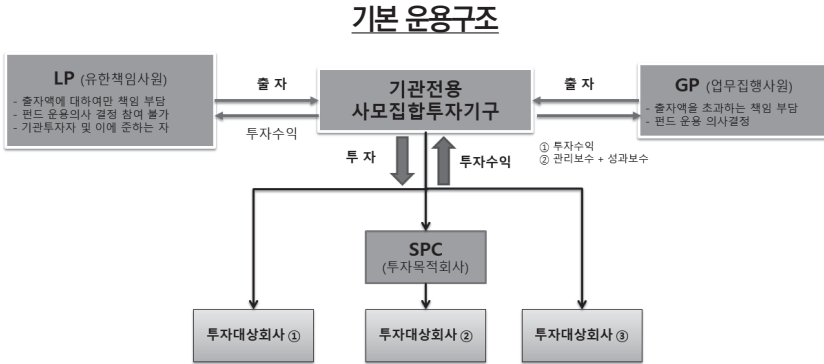
1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개요

■ 경영권 참여, 사업구조 또는 지배구조의 개선 등을 위하여 지분증권 등에 투자·운용하는 투자합자회사인 사모집합투자기구¹⁾

- ① 집합투자증권을 사모로만 발행하며, 투자자 총수가 100인 이하
- ② 투자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경영권 참여 및 구조개선 등을 통해 기업 가치를 제고하는 Buy-out 성격의 펀드
- ③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는 인적회사(partnership)
- ④ 상근 임원을 두거나 직원을 고용하지 아니하고, 본점 외 영업소를 설치하지 않는 서류상 회사(paper company)

1) 자본시장법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⑱ 이 법에서 “사모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증권을 사모로만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의 총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100인 이하인 것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제249조의11제6항에 해당하는 자만을 사원으로 하는 투자합자회사인 사모집합투자기구 (이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
2.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사모집합투자기구 (이하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



2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투자 단계

가. 자금모집 (fund raising)

- 업무집행사원은 전문성 및 위험감수능력을 갖춘 전문투자자(영§271의14 ④, ⑤)에게 투자 참여를 제안하여 자금을 모집

나.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투자 (investment)

-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실사(due diligence) 등을 통해 회사의 구체적인 정보를 얻고 투자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투자를 집행

다. 기업가치 제고 (value-addition)

- 투자집행 이후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임원 파견 등 회사의 경영에 직접 참여하거나, 경영·재무 자문 등을 통해 기업가치 제고

라. 매각 (exit)

- 투자 지분 등을 다른 투자자에게 매각하거나 증권시장 상장 (IPO) 등을 통하여 투하한 자본을 회수

3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분류

■ 투자 대상 및 근거 법률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류

- (일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자본시장법)
- 기업재무안정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자본시장법)
- 창업·벤처전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자본시장법)
-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산업발전법)
-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 (해외자원개발사업법)
-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 해외건설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해외건설촉진법)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분류 및 특징

	기관전용 사모집합 투자기구	기업재무 안정 기관전용 사모집합 투자기구	창업·벤처 전문 기관전용 사모집합 투자기구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 투자기구	해외자원개발 투자전문회사	해외농업자원 개발투자 전문회사	해외건설 기관전용 사모집합 투자기구
근거 법률	자본시장법			산업발전법	해외자원 개발사업법	해외농업· 산림자원 개발협력법	해외건설 촉진법
도입 시기	2004년 (舊간투법)	2010년 ²⁾	2016년	2009년 (CRC를 대체)	2006년	2011년 ³⁾	2016년
투자 유형	경영권 참여 등 ⁴⁾	재무구조 개선기업 투자	창업·벤처 기업등	구조조정 대상기업	해외자원개발 사업 등에 투자	해외농업자원 개발 등에 투자	해외공사 등에 투자
등록 ⁵⁾ (보고)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금융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협의)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협의)

2) '10.3월 3년 한시법으로 도입된 이후, '13.8월 한시법 재도입을 거쳐, '16.12월부터 상시화

3) 해자법상 해외자원의 범위에 광물 뿐만 아니라 농산물, 축산물 및 임산물이 포함되다가 해외자원이 광물로 제한 되는 것으로 개정(법률 제10843호, 2011.7.14)되면서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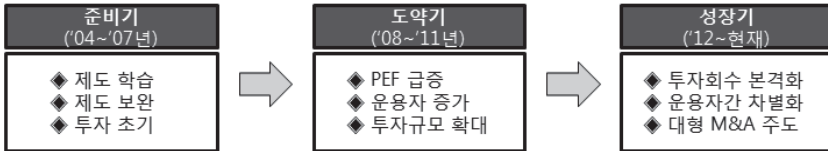
4) 사모펀드 제도 개편('21.10.20.)으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도 경영권 참여 이외의 투자 가능

5) 사모펀드 제도 개편('15.10.25.)으로 보고제도로 변경되었으나, 일부 특별법은 등록제 유지

제3절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관련 현황

■ 국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산업은 준비기('04년~'07년) 및 도약기('08년~'11년)를 거쳐,

- '12년부터 투자회수가 본격화되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자간 운용능력 차별화 등이 진행되는 성장기에 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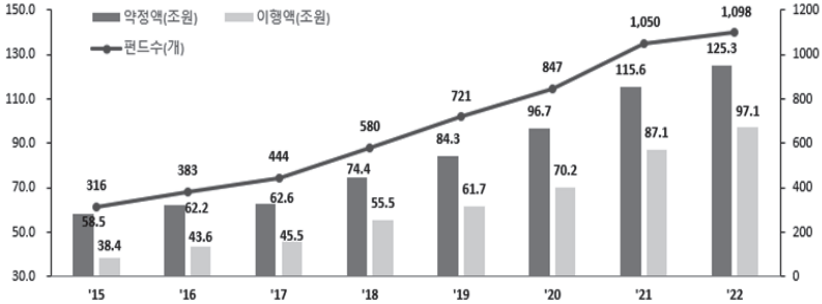
1 | 개황

■ '22.12월말 현재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총 1,098개, 약정액 125.3조원, 이행액 97.1조원

제도 도입 초기 대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성장 현황

구분	'04년말(A)	'22년말(B)	증감(B-A)
펀드수(개)	2	1,098	1,096 (548배 ↑)
약정액(조원)	0.4	125.3	124.9 (312.3배 ↑)
이행액(조원)	0.3	97.1	96.8 (322.7배 ↑)

'15년 이후 국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주요 현황



2 | 업무집행사원 (GP) 현황

■ '22.12월말 현재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운용 중인 업무집행사원 (GP)은 총 415사

- (준비기) 외국에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舊 사모투자전문회사) 운용 경험이 있는 전문인력이 설립한 전문운용사 및 정책 금융기관 등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설립을 주도
- (도약기) 기관투자자의 투자확대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설립이 용이해지자 모험자본 성격의 투자경험이 부족한 신규 운용자 진입이 급증
 - 경영권 참여 투자능력이 부족한 운용자 증가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규제에 대한 완화요구가 상층
- (성장기) 투자실적 가시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자간 운용 능력 차별화가 진행되면서 전문운용사 위주의 산업으로 재편 중

유형별 업무집행사원 현황

(단위: 개, %)

GP	준비기		도약기		성장기	
	'05말	'07말	'08말	'11말	'12말	'22말
전문운용사 (비중)	7 (50.0)	17 (48.6)	23 (47.9)	58 (46.8)	69 (48.9)	312 (75.2)
금융회사 (비중)	7 (50.0)	13 (37.1)	17 (35.4)	44 (35.5)	46 (32.6)	46 (11.1)
창투계 회사 (비중)	-	5 (14.3)	8 (16.7)	22 (17.7)	26 (18.4)	57 (13.7)
총 계	14	35	48	124	141	4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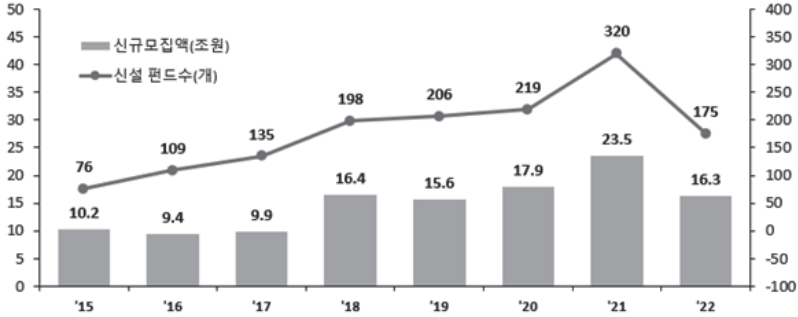
3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현황

가. 자금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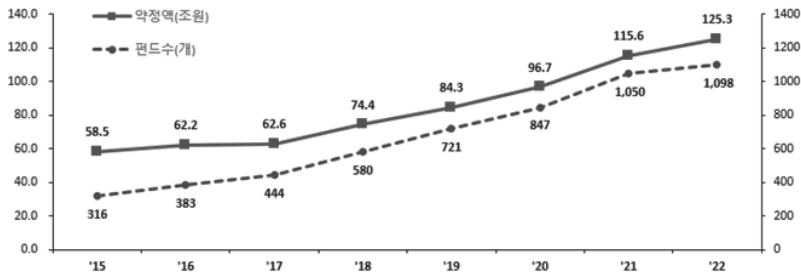
■ '22.12월말 현재 총 약정액(잔액)은 125.3조원

- (준비기) 금융회사와 외국법인이 국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출자를 주도
- (도약기)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로 투자저변이 확대되면서 기관전용 사모 집합투자기구 산업의 자금모집 규모 급증
- (성장기) '21년 중 누적 자금모집 규모가 100조원을 돌파하는 등 기관 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산업의 양적 성장 지속

최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지구 신규 자금모집 현황



[참 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지구 출자약정액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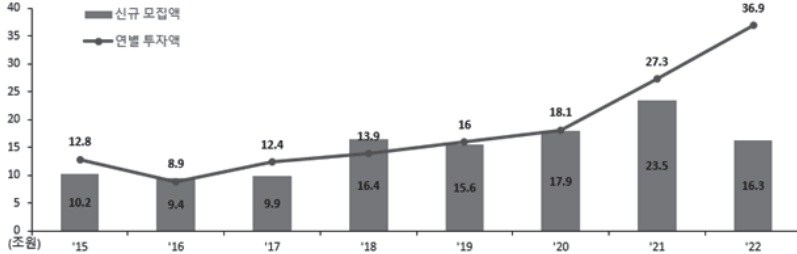
나. 투자

■ '22.12월말 현재까지 총 투자규모(누적)는 192.4조원

- (준비기) 외국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지구 운용경험이 있는 전문인력을 보유한 펀드는 전략적 투자에, 금융회사 등이 운용하는 펀드는 재무적 투자 주력
- (도약기) 중소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상생 협력목적을 갖거나 공동 투자를 통해 시너지를 제고하는 등 다양한 전략을 추구

- (성장기)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대기업 인수 및 구조조정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투자자로 부상

최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투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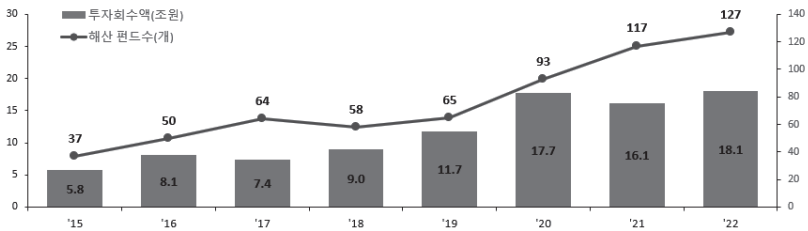


다. 회수

■ '22.12월말 현재까지 총 투자회수 금액(누적)은 108.5조원*

* 일부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투자금 미회수 상태에서 만기 도래로 해산하기도 하는 반면, 일부 프로젝트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deal(타당성)이 성사되지 않는 경우 미투자 상태에서 해산하기도 함

최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회수 현황



제4절 연혁

1 |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및 시행령

가. 사모투자전문회사 (PEF) 제도 도입 ('04.12월)

(구 간투법 §144의2~§144의8)

■ 합자회사 (Limited Partnership) 형태의 사모투자전문회사 제도 도입

	사모투자전문회사 (PEF)	비고 (사모M&A펀드)
Limited Partnership 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imited Partnership 형태의 사모 투자전문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조합원간 구체적인 계약내용에 대하여 최대한 자율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식회사 형태만 인정 - 주식회사 형태의 복잡한 지배구조는 투자 제약요인 - 무한책임사원이 없어 펀드를 책임지고 운영할 주체가 없음
손익 분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익분배 등에 대하여 투자자간 자유로운 계약을 허용함으로써 투자자의 다양한 투자욕구 및 위험 선호를 충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주 평등원칙을 적용하여 투자자간 동등한 손익분배 원칙
업무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A, 경영권 참여, SOC 투자 등을 위한 모든 유가증권 취득 - 다만, 포트폴리오 투자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인수 목적에 한정
펀드운용 규제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익자총회 등 소집의무 면제 • 자산보관회사 감시기능 면제 • 일반사무관리회사 선정의무 폐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립주체 및 의결권 제한
대기업 집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업집단이 지배하는 사모투자 전문회사에 대해 계열사 주식 취득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업집단이 지배하는 사모 M&A펀드에 대해 계열사 주식 취득 금지
지주회사 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주회사 관련 규정 적용배제 	-

나. PEF 투자제한 완화('06.4월)

(1) 유한책임사원의 최소 출자가액 완화(구 간투법 시행령 §131의4 ②)

- PEF에 대한 최소 출자금액이 높아 일반법인 및 개인투자자의 투자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어 출자한도를 낮춤으로써 투자 확대 유도

유한책임사원	개정 전	개정 후
법인(기금·펀드 포함)	50억원	20억원
개인	20억원	10억원

(2) PEF의 재산운용 범위 확대(구 간투법 시행령 §131의6 ⑤)

- PEF가 경영권 참여 투자를 목적으로 부실채권(Non Performing Loan) 이나 채권금융기관이 부실징후기업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금전채권에 투자 하는 것을 허용

(3) PEF의 의무투자비율 완화(구 간투법 시행령 §131의6 ⑦)

개정 전	개정 후
출자한 날부터 1년 이내에 60% 이상의 출자 된 금액을 경영권 참여 목적으로 투자	출자한 날부터 2년 이내에 50% 이상의 출자 된 금액을 경영권 참여 목적으로 투자

다. PEF의 해외투자 제한 완화('07.12월)

(1) PEF의 해외투자 관련 자산운용 규제 완화(구 간투법 시행령 §131의6 ②)

- 국내 PEF가 역외에 설립된 SPC 등을 통해 해외 자산에 대한 투자를 확대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마련⁶⁾

6)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07.9.13, 재정경제부 보도자료) 참고

- 국내 PEF가 역외 회사(SPC 포함)에 투자한 자금을 다시 국내로 환류하지 않는 조건하에서 그 역외 회사(SPC 등)에 대해서는 PEF의 자산 운용규제*를 면제

* 타회사 지분 10%이상 투자 등 경영권 지배목적 투자 의무, 차입규제 등

(2) PEF의 해외 부실채권 투자 허용 (구 간투법 시행령 §131의6 ⑤)

- 국내 금융기관 등이 채권자인 부실채권*으로 제한된 PEF 투자대상부실채권을 해외 부실채권(외국 금융기관 등이 채권자인 부실채권)으로 확대하여 국내 PEF의 해외자산 투자를 활성화

* 출자전환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 한함

2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가. 투자목적회사 주주 및 사원의 범위 확대 ('09.2월)

(1) 투자목적회사 주주 및 사원 범위 확대 (개정전 법 §271 ①)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자본시장법
주주 또는 사원 자격	- 사모투자전문회사	- 사모투자전문회사 - 투자목적회사가 투자하는 회사의 임원 또는 대주주 - 투자목적회사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한 금융기관으로서 출자전환 등을 한 자

(2) PEF 등록 공고 의무 (개정전 법 §268 ⑨)

- 금융위원회는 사모투자전문회사 등록을 결정한 경우 등록한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함

나. PEF의 여유자금 투자규제 완화 등 ('09.2월)

(1)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투자목적회사의 여유자금 운용방법 확대

(개정전 영 §293 ④)

구분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자본시장법
여유자금 운용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기대출 - 금융기관 예치 - 사모투자전문회사 재산 5% 범위에서의 증권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기대출 - 금융기관 예치 - 사모투자전문회사 재산 5% 범위에서의 증권투자 - 원화표시 CD 투자 - 어음 투자

(2) 동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회사의 출자한도 확대

(개정전 영 §291 ③)

- 같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기관의 출자한도를 사모투자 전문회사 전체 지분의 10%에서 30%로 확대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PEF 등에 대한 제한 완화 ('09.2월)

- 외국기업의 계열회사 편입시 처분의무 배제 (개정전 법 §274 ①)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인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이 외국 기업을 계열회사로 편입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 처분 의무를 적용하지 아니함⁷⁾

7)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인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은 다른 회사를 계열회사로 편입한 경우 편입일부터 5년 이내에 그 다른 회사의 지분증권을 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아닌 자에게 처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의 해외진출이 제한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

라. 비금융주력자의 은행주식 보유제한 관련 규정 삭제('09.2월)

(개정전 법 §275)

- 은행법(은행법 제2조제1항, 제16조의5 등)에서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에 대한 비금융주력자 판단기준 등을 규정함에 따라 자본시장법상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주식의 소유 제한 규정은 삭제

마. PEF 투자운용 규제 완화('09.12월)

(1) 구조조정 관련 PEF 운용규제 완화(개정전 영 §292 ③)

-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회사 재산의 50% 이상을 투자하는 외국회사(SPC 포함)에 대해 사모투자전문회사가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
(단, '10.12.31.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2) PEF 재산운용방법 확대(개정전 영 §292 ⑤)

-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운용방법으로 사회기반시설, 에너지절약시설, 환경보전시설, 의약품 품질관리개선시설 등에 대한 투자 추가

바. 특수목적 PEF 제도 도입 등

(1) 기업재무안정 PEF

■ 제도 도입('10.6월)

- (도입 취지) 자본시장을 활용한 기업구조조정 활성화 차원에서 민간 자금이 보다 쉽게 모집될 수 있도록 기업재무구조 개선 목적에 전문화된 기업재무안정 PEF를 한시적으로 도입⁸⁾

(개정전 법 §278의2)

일반PEF와 기업재무안정PEF 비교

구분	일반 PEF	기업재무안정 PEF
투자대상	제한없음	재무구조개선기업
투자 제한	원칙적으로 투자대상기업의 경영권 참여 목적으로 투자하여야 함 : 투자대상기업의 발행주식 총수의 10% 이상 투자 사모투자전문회사 재산의 50%이상을 주식에 투자	투자대상기업의 경영권에 참여하지 않고 투자 가능 : 해당 기업의 주식 이외에 부실채권, 고정자산(부동산, 영업권) 등에 투자 사모투자전문회사 재산의 50% 이상을 구조개선기업 관련 자산에 투자
대여	원칙적으로 불가능	순자산 내에서 재무구조개선기업에 대한 대여가 가능
차입 및 채무보증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순자산의 10% 범위내 에서 가능	가능 (순자산의200% 범위)

○ 주요 내용 (개정전 영 §300의2 ①~③)

- 경영권 박탈이나 개입을 원하지 않는 기업도 기업재무안정PEF에 대한 자산 매각을 통해 재무구조개선이나 구조조정 가능

(i) (투자대상기업 : 재무구조개선기업) 부실징후기업, 채권금융기관과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체결한 기업 등

(ii) (투자방법 등) 재무구조개선기업 발행 증권, 고정자산, 부실채권 등에 펀드재산의 50%이상*을 투자하여야 함

* 의무투자비용 산정시 투자목적회사를 통해 운용한 금액은 기업재무안정PEF가 운용한 금액으로 간주

8) 자본시장법 <제 10063호, 2010.3.12.> 부칙 제3조 (기업재무안정투자회사와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에 관한 유효기간 등) ① 제234조의2 및 제27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34조의2 및 제278조의2의 개정규정의 효력이 상실될 당시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기업재무안정투자회사 및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와 그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가 제278조의2 제3항에 따라 주주 또는 사원으로 출자한 투자목적회사에 대하여는 해당 회사의 존속기간까지 이 법을 적용한다.

③제2항에 따라 이 법이 적용되는 기업재무안정투자회사,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 및 투자목적회사는 제234조의2 및 제278조의2의 개정규정의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는 추가로 출자를 받을 수 없다.

[☞ 기업재무안정PEF의 유효기간 : '10.6.13.~'13.6.12.]

- (iii) (투자이행기간) 투자자로부터 출자 받은 날부터 2년 이내
- (iv) (차입한도 등) 기업재무안정PEF가 50%이상 출자한 투자목적 회사와 합산하여 200%까지 차입(채무보증 포함) 가능
- (v) (연기금 등의 출자한도)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경우 해당 기금 여유 운용액의 10% 이내에서 기업재무안정PEF에 출자 가능

■ 재도입 ('13.8월)

- 불확실한 국내의 경기여건 및 부동산 시장 부진 지속 등에 따른 부동산 PF 추가 부실 발생 등에 대비하여, '13.6.12. 운용시한이 기만료된 기업 재무안정PEF를 3년간 한시적으로 재도입)
(개정전 법 §278의3)

■ 상시화 ('16.12월)

-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한 기업에 PEF를 통한 민간의 자금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자본시장을 통한 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해 기업재무안정 PEF의 상시화를 추진 (개정전 법 §249의22)

(2) 창업·벤처전문 PEF 제도 도입 ('16.12월)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벤처기업 등*(중소기업 한정)에 일정비율(50%) 이상 투자·운용이 의무화된 창업·벤처전문 PEF 제도 도입

* 창업·벤처기업, 기술·경영혁신형 기업, 신기술사업자, 소재·부품전문기업

9) 자본시장법 (제12102호, 2013.8.13) 부칙 제2조(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에 관한 유효기간 등) ① 제27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
[☞ 기업재무안정PEF의 유효기간 : '13.11.14.~'16.11.13.]

사. PEF 규제체계 선진화('13.8월)

(1) 투자 가능한 주권 관련 사채권의 범위 확대 (개정전 법 §270 ①, 영 §292 ④)

■ PEF의 경영권 참여가 전제되는 범위내 주권 관련 사채권 투자 허용

PEF가 투자 가능한 주권 관련 사채권의 범위

- ① 주식과 주권관련사채권의 권리행사(전환권 행사 등)로 취득 가능한 주식을 합산하여 대상 기업의 주식을 10% 이상 취득할 수 있는 투자
- ② 투자계약 등에 의해 임원 임면 등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력 행사가 가능한 주권 관련 사채권 투자

(2) 업무집행사원 (GP) 등록제 도입 (개정전 법 §272의2, 영 §297의2)

■ PEF 운용자 (GP)에 대한 등록제도 도입

- 자기자본 (1억원), 운용인력 (1인), 내부통제기준 등을 등록요건으로 규정

(3) 유한책임사원의 재산운용 관여 금지 명확화 (개정전 영 §291 ②)

■ 투자자(유한책임사원)의 재산운용* 관여 금지를 명확화

* 투자기업 선정, 지분증권 매매의 가격·시기·방법 결정, 의결권 행사 등

(4) PEF 관련 보고의무 신설 (개정전 법 §270 ⑨, 영 §290 ⑥)

■ 차입·파생상품 투자 관련 PEF 보고의무 (정기보고서) 신설

- 다만, GP의 주소변경 등 경미한 변경사항*은 매분기 일괄하여 금융위 (금감원)에 변경 등록 가능

* GP 소재지, GP의 업무위탁 사항,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 등

3 | 사모펀드 제도개편 주요 내용 (15.10월)

기본방향¹⁰⁾

- 복잡다기화된 사모펀드 규율체계를 단순·명료화함으로써 “한국형 사모펀드 규율체계”를 확립
 - 4개 유형으로 구분된 사모펀드를 2개 유형으로 통합, 규율
- 외국에 비해 과도한 사모펀드 진입·운용·판매규제를 대폭 완화
 - 사모펀드 운용업자 진입규제를 등록제로 전환
 - 사모펀드 설립은 사후보고제로 운영
 - 자산운용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폐지
 - 운용사의 사모펀드 직접 판매 허용 및 광고규제 완화
- 사모펀드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강구
 - 과도한 차입을 억제할 수 있는 장치 강구
 - 사모펀드 운용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사모펀드를 이용한 대기업의 기업 확장 및 자금지원 차단장치 마련

가. 사모펀드 규율체계 정비 및 적격투자자 범위 설정

(개정전 법 §9 ⑩, §249의11 ⑥)

- 사모펀드를 “전문투자형(헤지펀드)”과 “경영참여형(PEF)”으로 단순화
 - 사모펀드의 적격투자자(전문투자자+일정요건을 갖춘 일반투자자)를 펀드의 투자위험도 및 환매 용이성 등을 감안하여 차등적으로 설정

	현 행	→	개 선
PEF (기업재무 안정 PEF)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투자자(일부 제외) • 개인 : 10억원 이상 투자자 • 법인 : 20억원 이상 투자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전문투자자* • 3억원 이상 투자자 * GP임원·운용역은 1억원 이상 투자자

* 모든 금융회사(외국 포함), 금융공공기관, 주권상장법인 등 (최소 출자금액 없음)

10) “사모펀드 제도개편 방안”(13.12.4,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참고

나.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감독 강화

(1) 업무집행사원 등록요건 강화 (개정전 법 §249의15, 영 §271의21)

- 운용인력 요건 (1인 → 2인)을 강화하고,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요건 추가

	개정 전	개정 후
자기자본	• 1억원 이상	
임원	• 법 제24조*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할 것	
운용인력	• 1인 이상	• 2인 이상
이해상충 방지체계	•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다음의 체계를 갖출 것	
건전한 재무상태	-	•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사회적 신용요건	-	• 최근 3년간 금융관련법령 등을 위반하여 5억원의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등

* '16.8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로 변경

(2) PEF의 자산보관관리 위탁의무 부과 (법 §249의20 ①)

- 모든 사모펀드는 신탁업자에게 자산보관관리를 위탁하도록 의무화

다. PEF 설립규제 완화

(1) 사후보고제로 변경 (법 §249의10 ④, 영 §271의13 ⑤)

- PEF 설립등기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금융위(금감원)에 보고

-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함

※ PEF 설립(변경)보고 항목 축소 (총 11항목 → 총 9항목)

PEF 정기보고서 보고주기 대폭 완화 (분기 → 반기 또는 연간)

(2) 보고의무 위반자 등에 대한 제재장치 마련 (법 §249의21, §446)

■ 요건 미충족 펀드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및 운용업자에 대해 업무 정지·경고·주의(보완요구 미수용시) 등 조치 가능

○ 보고의무 위반자에 대해서는 벌칙 부과

라. 금융전업그룹에 대한 규제 합리화

◆ 금융전업그룹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사 전체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을 제외한 금융·보험회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75%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 다만, 금융·보험 계열사는 Max[자본금, 자본총액]을 적용

** 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②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투자목적회사

③ ②에 해당하는 자가 투자한 투자목적회사

④ ① ~ ③에 해당하는 자가 투자한 투자대상기업

⑤ ④에 해당하는 자가 지배하는 회사

(1) 금융전업그룹 등에 대한 PEF 운용 규제 완화 (법 §249의18 ②, §249의20 ③, ④)

■ 금융전업그룹이 PEF를 통해 투자하는 경우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됨에 따라 발생하는 PEF 운영과 관련 불합리한 일부 규제*를 완화

* ① PEF 투자대상 회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 금지 → 허용

②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현황 공시 등 → PEF의 LP에 대해서는 면제

③ PEF가 투자한 기업에 대한 5년내 처분의무 등 → 원칙 7년 + 3년 추가 가능

(2) 금융전업그룹 등에 대한 행위제한 (법 §249의18 ④)

■ 금융전업그룹 해당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회사는 다음 행위 금지

① PEF등*이 PEF등이 아닌 계열회사의 지분증권을 취득·소유하는 행위

* PEF, 투자목적회사, 투자대상기업 및 투자대상기업이 지배하는 회사

② PEF등이 아닌 계열회사가 투자대상기업 및 투자대상기업이 지배하는 회사의 지분증권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행위 금지

마. PEF 운용규제 완화

(1) PEF가 설립한 SPC 주주로 전략적 투자자(SI) 참여 허용 (영 §271의19 ②)

■ PEF가 설립한 SPC* 주주로 전략적 투자자 참여를 허용하여 M&A 또는 기업가치 제고 등의 효과를 극대화

* PEF 회수가능성 제고, 투자대상기업의 빠른 경영 정상화 및 전문 경영진과의 협업 등을 추구 하는 최근 PEF투자 경향을 감안하여 전략적 투자자(SI)를 허용
(다만, 재무적 투자자가 규제회피 등을 목적으로 전략적 투자자로 우회하여 SPC에 투자하는 행위 등 부작용 방지 장치를 마련)

(2) M&A를 통한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PEF LP 출자 관련 계열사 참여 제한 규제 완화 (영 §271의14 ⑨)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PEF라도 해외투자를 목적으로 설립·운영하는 경우에는 소속 금융회사의 출자 한도 규제를 면제

(3) PEF의 복층형 SPC 설립 허용 (법 §249의13 ①, 영 §271의19 ③)

■ 복층 SPC를 통해 기업 인수시 인수 금융 확대* 등 다양한 투자구조 설계와 SPC·투자대상기업간 합병** 등을 용이하게 진행 가능

- * 은행은 통상 SPC 자기자본의 50% 정도로 인수금융 제공 → 복층형 SPC는 SPC별 차입이 가능해 인수금융 규모 확대 가능(단, 총 차입한도 300%는 동일하게 유지)
- ** 복층형 SPC를 사용할 경우 SPC와 투자기업간 합병이 용이하고 잔존 SPC를 통해 추가자금 조달 등이 가능한 측면

(4) 기타 운용규제 합리화

■ 바이아웃(Buy-out)투자라는 주목적 투자 규제는 유지하되, 여타 운용규제는 주목적 투자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선

개선 전	개선 후
① 파생상품을 활용한 헤지 방법 제한 - 투자대상기업이 발행한 주권기초파생 상품만을 활용해야 함	- 위험 헤지를 위한 목적이면 제한 없이 허용
② 투자대상기업이 보유한 부동산·금전채권 투자 제한 - 구조조정 목적인 경우에만 허용	- 구조조정 여부와 관계 없이 허용
③ 외국회사에 대한 투자 제한 - 국내자산에 5% 이상 투자한 외국회사에 대한 PEF의 투자 금지	- 국내자산에 30% 이상 투자한 외국회사에 대한 PEF의 투자 금지
④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의 6개월 이내 투자 개시 의무	- 폐지 (사적계약의 성격이 강한 사모펀드 특성 감안)
⑤ 여유자금 운용방법으로 증권에 대한 투자는 집합 투자재산의 5%이내 가능	-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30% 이내에서 증권에 대한 투자 가능

바.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제한 도입 (법 §249의16, 영 §271의22)

■ PEF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계열회사와의 거래를 금지

- GP는 PEF 재산을 운용할 때 이해관계인과 거래행위를 할 수 없음
- GP는 PEF 재산을 운용할 때 집합투자재산의 5%를 초과하여 그 GP의 계열회사, 그 PEF에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는 LP로서 30%이상의 출자 지분을 보유한 LP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할 수 없음

4 | 사모펀드 투자자보호·체계개편 주요 내용¹¹⁾ ('21.10월)

- ◆ (배경) 사모펀드 시장이 신뢰받고 건전한 시장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본연의 모험자본 공급 역할 제고, 투자자 보호 강화 등 제도적 기반 마련
- ◆ (주요 내용) 사모펀드 분류체계 개편·운용규제 일원화 및 일반투자자 대상 일반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

제도개편 개요

구분	개편 전		개편 후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일반 사모펀드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 주체	전문사모운용사	업무집행사인	일반사모운용사	업무집행사인
투자자	①전문투자자 ②최소투자금액* 이상 일반투자자 * 3억원(단, 레버리지200% 초과시 5억원)		좌동	기관투자자 및 이에 준하는자
설정·설립 보고	사후보고 (2주내)	사후보고 (2주내) ※ 단, 일정한 경우 즉시보고	사후보고 (2주내) ※ 단, '경영참여목적 펀드'가 일정 요건 갖춘 경우 즉시 보고	
투자자 보호	공모펀드 대비 완화된 투자자 보호 장치		① 일반투자자 대상 - 투자자 보호 강화 ② 전문투자자 대상 - '개편전' 수준 유지	'개편 전' 수준 유지
운용	목적	경영참여 목적외	경영참여 목적	모두 가능
	차입	400% 이내	10% 이내 (단, SPC는 300% 이내)	400% 이내
	대출	가능 (단, 개인대출 금지)	불가	가능 (단, 개인대출 금지)
	의결권	10% 초과시 의결권 제한	해당없음	의결권 행사 제한 폐지
	지분 투자	해당없음	- 50% 이상 지분투자 - 의결권주식 10%이상, 6개월 이상 보유	지분투자 의무 폐지
감독·검사	금융투자업자로서 감독·검사	검사권한 불명확 (PEF 검사권만 명시)	금융투자업자로서 감독·검사	업무집행사인 검사권한 명확화

11) "사모펀드 투자자보호·체계개편을 위한 「자본시장법 및 하위규정 개정안」이 10.21일부터 시행됩니다" ('21.10.19,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참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관련 제도개편 주요 사항]

가. 사모펀드 분류체계 개편 및 투자자 범위 조정 (법 §9 ⑬, §249의11 ⑥)

- 사모펀드 분류기준을 펀드 운용목적에서 투자자 범위로 변경하여, 전문 투자형·경영참여형 사모펀드에서 일반·기관전용 사모펀드로 재편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 범위는 전문성과 위험감수능력을 갖춘 전문투자자(기관투자자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제한
 - ※ (기존)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에는 개인투자자 (3억원 이상)도 출자 가능 (현행) 기관전용 사모펀드에는 개인투자자의 출자 제한 (단, 외국인, 업무집행사원의 임원, 운용역은 허용)
 - 일반투자자가 투자 가능한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는 강화된 투자자 보호규제*를 적용
 - * 핵심상품설명서 교부, 자산운용보고서 교부, 외부감사, 판매사·수탁사 운용감시 등

사모펀드별 운용주체 및 투자자 범위

구분	일반 사모펀드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주체	일반 사모운용사 (금융투자업자)	업무집행사원 (非 금융투자업자)
투자자	일반투자자+전문투자자	전문투자자 중 일부 등

나. 사모펀드 운용규제 일원화(법 §249의7, §249의12)

-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해 사모집합투자기구간 이원화 되어 있었던 운용 규제를 “일원화·완화”
 - 이에 따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경영참여 목적으로만 운용해야 하는 의무가 폐지되고 일반 사모펀드와 동일한 운용규제(경영

참여목적 투자 또는 非경영참여목적 투자 모두 가능) 적용*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규제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규제(법 §249의7)를 준용하도록 규정(법 §249의12①)

(1) 레버리지 한도 일원화 및 산정방식 개선

(법 §249의7 ①, 영§271의10 ①, ②, §271의19 ⑥)

■ (한도 일원화) 일반 및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집합투자기구의 순자산 대비 400%까지 차입 허용

- 투자목적회사를 활용하는 경우, 사모집합투자기구와 투자목적회사를 합산하여 400%까지 차입 허용

※ (기존)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만 400%까지 차입이 허용되었고, 경영 참여형 (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는 10% 이내(투자목적회사는 자기자본 대비 300%)로 허용

■ (산정방식 개선) 차입금액 계산시 거래의 실질이 차입에 해당하는 금액 (RP 매도, 공매도)을 포함

(2) 금전대여 운용방법 명확화 (법 §249의7 ②, 영 §271의10 ⑦~⑩)

■ 모든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대출 방식의 자산운용 허용

- 다만, 개인대출 및 사행성 업종*에 대한 대출 금지

* 일반유희주점업, 무도유희주점업 또는 사행시설 관리·운영업

- 이를 회피하기 위해 대부업자 또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와의 연계 거래를 이용하는 행위 금지

※ (기존)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만 대출이 허용(단, 개인 대출 제한은 별도 가이드라인을 통해 규율)되었고, 경영참여형 (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대출 방식의 운용은 불허

- 대출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전문성 및 위험관리능력이 있는 투자자*만 투자 가능

* 국가, 한국은행, 전문투자자 중 시행령(영 §271의10⑨)으로 정하는 자

(3) 경영참여목적 투자요건 구체화 (법 §249의7⑤, 영 §271의10 ⑬, ⑰)

- 모든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경영참여 목적의 투자를 허용하되, 경영참여목적 투자*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15년내 지분 처분의무 부과

* ①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 보유

② 임원의 임면 등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투자로서 시행령(영 §271의10 ⑰)으로 정하는 투자

※ (기존) 경영참여형(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만 경영참여 목적의 운용이 허용되었고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불가했음(10% 초과지분에 대한 의결권 행사 제한)

- 이에 따라, 기존에 경영참여형(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적용된 투자목적 제한*, 의무 투자기간** 관련 규정 폐지

* 사원이 출자한 날로부터 2년내 출자금액의 50% 이상을 경영참여(의결권 있는 주식 10% 이상 취득,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 행사가 가능토록 투자 등) 목적으로 투자

** 경영참여 목적 투자 이후 6개월 이상 지분 보유

- 다만, 금융회사 등(영 §271의20① 1호~ 14호)이 업무집행사원인 경우, 기존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규제를 동일하게 적용

다.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1) 업무집행사원 투자운용전문인력 요건 강화 (법 §249의15①, 영 §271의21③)

- 업무집행사원 등록 요건으로 투자운용전문인력*(2인 이상)을 도입

* 증권운용전문인력, 부동산운용전문인력 또는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전문인력 (규정 별표2의3)

※ (기존) 보유 해야 하는 운용인력 수준(2인 이상)에 대해서만 규정되어 있었고, 해당 인력에 대한 구체적 요건은 없었음

(2)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감독·검사 강화

■ 업무집행사원 변경보고·재무제표 제출 의무 신설 (법 §249의15⑧, ⑨)

- 업무집행사원 등록사항이 변경될 경우, 2주내 변경된 사항을 금융위(금감원)에 보고 필요
- 업무집행사원은 각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경과 후 45일내 금융위(금감원)에 제출 필요

■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감독·검사권 강화(법 §249의14 ⑩, ⑫, ⑬)

- 금융위의 승인이 없더라도 투자자(LP)가 업무집행사원의 위반행위 등을 감시·견제할 수 있도록 허용
- 금융위는 금융시장 안정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집행사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 금감원장은 금융시장의 안정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해 필요한 경우, 업무집행사원을 검사할 수 있음

■ 운용규제 완화에 따른 영업행위 준칙 강화(영 §271의20 ④ 7호, 8호)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 업무와 해당 운용에 관한 의사를 집행(자산 취득·매각 실행)하는 직원간 겸직 금지*

* (예외) 경영참여목적의 운용, 펀드 계좌별 매매거래 분리, 장내 프로그램매매, 장내 파생상품거래

- 투자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행위 금지

라. 사모집합투자기구 투자자수 확대 (법 §9 ⑬)

-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원활한 자금조달 등을 위해 투자자 수를 기존 49인에서 최대 100인까지 확대
 - 다만, 일반투자자 수는 기존과 같이 49인으로 유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제1절 설립 및 보고

제2절 사원 및 출자

제3절 재산 운용

제4절 내부 운영

제5절 재산 평가 등

제6절 해산 및 청산

제7절 감독 및 검사

제8절 특례 규정

제 2 장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개요〉

투자자
모집

- ▶ 사원 수 제한 : 100인 이하 (법 §249의11①,②,③)
 - 다른 집합투자기구가 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지분을 10% 이상 취득하는 경우 그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 수를 합산하여 계산
- ▶ 유한책임사원의 자격 (법 §249의11⑥)
 - (i) 전문투자자로서 시행령 (영 §271의14④)으로 정하는 투자자
 - (ii) 그 외 전문성 또는 위험감수능력 등을 갖춘 자로서 시행령 (영 §271의14⑤)으로 정하는 자
- ▶ 부당권유행위 금지 (법 §249의14⑥)
 - 원금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약속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원이 될 것을 부당하게 권유하는 행위 금지
- ▶ 동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회사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출자 제한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출자총액의 30% 초과 출자 금지 (영 §271의14⑨)
 - 다만, 투자대상기업이 오로지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회사인 경우 출자 가능 (영 §271의14⑩)

↓

설립

- ▶ 정관 작성 (법 §249의10①)
- ▶ 업무집행사원이 금융회사인 경우 금산법상 출자승인 (금산법 §24)

↓

등기

-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등기 (법 §249의10②)



해산

- ▶ 해산사유 발생 및 해산보고 (법 §202①, 법 §216)
 - 해산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청산인은 해산일부터 30일 이내 해산사유, 연월일, 청산인 등을 금융위(금감원)에 보고하여야 함
- ※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없이 재산상태를 조사한 후 15일 이내 재산목록과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 청산인회에 제출 및 승인을 받은 후, 그 등본을 지체없이 금융위(금감원)에 제출하여야 함 (법 §203①, §216)
- ▶ 청산인 선임 및 해산등기 (법 §202②, 법 §216)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해산한 경우 업무집행사원이 청산인이 되는 때에는 해산일부터 2주 이내, 청산인이 선임된 때에는 그 선임일부터 2주 이내에 등기하여야 함
- ▶ 채권자 최고절차 (법 §203③, 법 §216)
 - 청산인은 취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2회 이상의 채권자 최고절차(1개월 이상)를 이행하여야 함

청산

- ▶ 결산보고서 공고 및 보고 (법 §203⑤, 법 §216)
 - 청산인은 청산사무가 종결된 경우 지체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원 총회 승인을 받은 후 공고하고, 이를 금융위(금감원)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함

제1절 설립 및 보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설립 및 보고 개요

정관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관 기재사항 (법 §249의10①) ▶ 상호 (명칭) (법 §183②)
등 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관 기재사항 중 등기사항 (법 §249의10②)
요 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요건 (법 §249의10③)
설립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립 보고기한 (법 §249의10④, 영 §271의13⑤) ▶ 설립보고서 기재사항 (영 §271의13①, 규정 §7-41의9①) ▶ 설립보고서 첨부서류 (영 §271의13②, 규정 §7-41의9②) ※ 설립 및 변경 보고절차 (법 §249의10⑦)
변경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경보고 기한 등 (법 §249의10⑥, 영 §271의13⑥,⑦)
보고내용 확인 및 보완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고내용의 확인 (영 §271의13④) ▶ 금융위의 보완요구 (법 §249의10⑤)
LP 정보 등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한책임사원 정보 및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투자구조 등 보고 (법 §249의11⑧, 영 §271의14⑥~⑧)

1 | 정관 작성

가. 정관 기재사항 (법 §249의10 ①)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총 사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함
 - 정관에는 ① 목적, ② 상호, ③ 회사의 소재지, ④ 각 사원의 출자의 목적과 가격 또는 평가의 기준, ⑤ 회사의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 ⑥ 사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법인인 경우 명칭·사업자등록번호) 및 주소, ⑦ 무한책임사원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구분, ⑧ 정관의 작성연월일을 반드시 기재해야 함

◆ 정관과 다른 이면계약 체결 관련 규제 (규정 §7-41의 10⑥)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사원은 자본시장법 제249조의14제6항제2호^① 및 영 제271조의14제9항^②, 지배구조법 제31조제1항^③ 등에 따른 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사원간에 출자한 지분을 장래에 양수 또는 양도하기로 하거나(양수 또는 양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경우를 포함) 투자에 따른 손실을 보전해 주기로 하는 이면계약 등에 따라 출자비용, 출자방법 및 손익의 분배 등을 정관과 달리 정하여서는 아니 됨

- ① 업무집행사원(임직원 포함)이 원금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약속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원이 될 것을 부당하게 권유하는 행위 금지
- ② 같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회사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하는 경우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출자총액의 30% 초과 출자 금지
- ③ 금융회사의 주식 등을 취득, 양수하여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추어 미리 금융위 승인을 받아야 함

[참 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와 투자합자회사 정관 비교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투자합자회사
① 목적	- 목적
② 상호	- 상호
③ 회사의 소재지	- 회사의 소재지
④ 각 사원의 출자의 목적과 가격 또는 평가의 기준	-
⑤ 회사의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	- 존속기간이나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 그 내용
⑥ 사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법인인 경우 명칭·사업자등록 번호) 및 주소	- 업무집행사원의 상호·사업자등록번호
⑦ 무한책임사원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구분	-
⑧ 정관의 작성연월일	- 정관 작성연월일 - 투자합자회사재산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이익분배 및 환매에 관한 사항 - 공시 및 보고서에 관한 사항 - 투자합자회사의 종류 - 투자대상자산(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하고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을 따로 기재) - 지분증권의 발행과 소각에 관한 사항 - 투자합자회사재산의 평가와 기준가격의 계산에 관한 사항 - 이익 외의 자산등의 분배에 관한 사항 -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 회사와 체결할 업무위탁계약의 개요(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시기에 관한 사항 포함) -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투자합자회사의 회계기간

나. 상호(명칭) (법 §183 ②)

- (개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이외의 자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¹²⁾하고 있으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명칭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는 없음
 - 참고로 사모펀드 제도개편(15.10월) 이전에는 “사모투자전문”이라는 문자 사용이 의무화되었음
 - 반면, 상법상 상호 규제¹³⁾는 배제되어 있지 않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법적 형태인 ‘합자회사’를 상호에 사용하여야 함
 - ☞ 다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이미 사용하고 있는 명칭은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¹⁴⁾ 일반적으로 “○○사모투자합자회사”라는 상호(명칭)를 사용하고 있음
- (상호(명칭) 변경)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상호(명칭)는 정관 기재사항으로 정관변경 절차를 거쳐 변경 가능
 - 다만, 상호(명칭)가 변경된 경우 사유 발생일부터 2주일 이내에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변경보고를 하여야 함

12) 자본시장법 제183조(집합투자기구의 명칭) ② 이 법에 따른 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자는 “집합투자”, “간접투자”, “투자신탁”, “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투자유한책임회사”, “투자합자조합”, “투자익명조합”,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 및 제6조제5항제1호에 규정된 것의 경우에는 이를 사용할 수 있다.

13) 상법 제19조(회사의 상호) 회사의 상호에는 그 종류에 따라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14) 상법 제22조(상호등기의 효력)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

2 | 등기 (법 §249의10 ②)

- (등기사항)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설립시 다음 사항을 등기하여야 함
 - (정관 기재사항 중 등기사항) ① 목적, ② 상호, ③ 회사의 소재지, ④ 회사의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
 - (기 타) 무한책임사원의 상호 또는 명칭·사업자등록번호 및 주소
 - ☞ 유한책임사원의 성명 등에 관한 사항은 등기사항이 아님

3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요건 (법 §249의10 ③)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자본시장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었을 것
 - ②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정관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투자자의 이익을 명백히 침해하지 아니할 것

4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립보고¹⁵⁾

가. 설립 보고기한 (법 §249의10 ④, 영 §271의13 ⑤, 규정 §7-41의9③)

(1) 원 칙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설립등기일부터 2주 이내에 금융위(금감원)에 보고하여야 함

(2) 예 외

- 금융시장의 안정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¹⁶⁾에는 설립등기 후 지체없이 금융위(금감원)에 보고하여야 함

- ① 같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가 출자한 지분의 합계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출자총액의 30% 이상인 경우
- ②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업무집행사원인 경우
- ③ 업무집행사원의 특수관계인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출자 총액의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
- ④ (i) 투자신탁,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ii) 투자회사 등, (iii) 신탁 재산을 운용하는 신탁업자에 해당하는 자가 사원으로서 출자한 지분의 합계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출자총액의 30% 이상인 경우로서

15) 위반시 조치

-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법 §446 43호)

16) 법 §249의7⑤ 각호의 방법으로 펀드재산을 운용하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한경

-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 보유
- 임원의 임면 등 투자하는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력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투자 (영§271의10¹⁷⁾)

- ①~③의 자가 (i)~(iii)의 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재산 또는 신탁재산에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으로 투자한 경우

나. 설립보고서 기재사항 (영 §271의13 ①, 규정 §7-41의9 ①)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설립보고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함

- ① 자본시장법 제249조의10 제2항¹⁷⁾에 따른 등기사항
- ② 업무집행사원에 관한 사항
- ③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
- ④ 종합금융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그 종합 금융투자사업자로부터 전담증개업무를 제공받은 경우로 한정)
- ⑤ 출자에 관한 사항
- ⑥ 업무집행사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
- ⑦ 시행령 제271조의19 제2항 제2호의 자(전략적 투자자)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설립한 투자목적회사의 주주 또는 사원인 경우 그 주주 또는 사원에 관한 사항
- ⑧ 자본시장법 제249조의7제5항 각 호의 방법으로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경우 그 사실

다. 설립보고서 첨부서류 (영 §271의13 ②, 규정 §7-41의9 ②)

(1) 정 관*

* 다만, 각 사원의 출자의 목적과 가격 또는 평가의 기준, 사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또는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및 주소, 무한책임사원 또는 유한책임사원 구분은 제외

17) 목적, 상호, 회사의 소재지, 회사의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 무한책임사원의 상호 또는 명칭·사업자 등록번호 및 주소

- (2) 업무집행사원에 관한 다음의 각 서류
- ① 최근 사업연도말 재무제표
 - ② 대주주의 성명·주민등록번호(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또는 명칭,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및 소유주식수 등 대주주의 내역
- (3) 제3자에게 업무를 위탁한 경우 업무위탁계약서의 사본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재산의 보관·관리업무를 신탁업자에게 위탁한 경우 동 업무위탁계약서를 설립보고서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함
- (4) 업무집행사원의 행위준칙
- (5)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재산의 운용업무를 직접 담당할 임직원 내역 및 경력증명서
- (6) 시행령 제271조의19제2항제2호의 자(전략적 투자자)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설립한 투자목적회사의 주주 또는 사원인 경우 그 주주 또는 사원의 개황
- 기업의 연혁·목적·영업실태, 대표자 및 임원에 관한 사항 및 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의 경우 연결재무제표 포함)

[참 고] 설립보고서 작성방법**※ 보고서 서식 : 시행세칙 별책서식1 (제46의7호)****◆ 업무집행사원의 확인서**

- 확인서 란에는 업무집행사원의 인감을 날인
- 업무집행사원이 2인 이상인 경우 업무집행사원 전원이 날인

※ 날인을 확인할 수 있는 인감증명서를 함께 제출**◆ 회사의 개요에 관한 사항**

- 설립일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지구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일자를 기재
-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상의 해산사유를 일치시킬 것

◆ 사원 및 출자에 관한 사항

- 사원의 구분을 명확히 할 것 (기재상의 주의사항을 따를 것)
 - ※ 특히, 연기금은 ①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②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③ 「국가재정법」 제5조에 따라 법률로서 설치된 기금(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 제외) 및 그 기금을 관리운영하는 법인으로 한정됨
- 금액을 기재하는 경우 금액 단위를 명확히 기재
- 유한책임사원의 최소출자가액 작성시 유한책임사원에 대한 인적사항은 기재하지 아니할 것
- 동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회사가 사원으로 참여하는 경우 동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별 출자비율을 기재하며, 유한책임사원이 소속 금융회사인 경우 상호는 기재하지 아니함
- ‘Ⅲ-7. 투자목적회사에 출자하는 사원 또는 주주에 관한 사항’은 투자목적회사에 출자하는 “전략적 투자자”에 관한 사항(상호, 업종, 대주주 등)을 기재

◆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

- 업무위탁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간략히 기재
- 신탁업자와의 자산보관업무 관련 업무위탁계약은 반드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지구 설립 보고서 제출시 함께 제출할 것

5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변경보고¹⁸⁾

(법 §249의10 ⑥, 영 §271의13 ⑥, ⑦, 규정 §7-41의9④)

(1) 원 칙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보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2주일 이내에 금융위(금감원)에 변경보고하여야 함

(2) 예 외

- 경미한 사항은 분기별 또는 연간 단위로 변경보고 가능

① 분기 보고 : 변경이 있었던 분기의 다음달 10일 이내

- 회사의 소재지, 업무집행사원에 관한 사항(최근 사업연도말 재무제표 제외), 제3자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서 사본, 그 밖에 업무집행사원에 관한 사항 등으로서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i) 자본시장법령, 금융투자업규정 또는 다른 법령의 개정이나 금융위의 명령에 따라 보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ii) 보고한 사항의 단순한 자구수정

(iii)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탁업자 또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전담중개업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해당)등의 개요 및 기본정보의 변경

(iv) (i)~(iii) 외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

② 연간 보고 : 변경이 있었던 해당 사업연도말일부터 1개월 이내

- 업무집행사원의 최근 사업연도말 재무제표

18) 위반시 조치

-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법 §446 43호)

[참 고] 변경보고서 작성방법

- ※ 보고서 서식 : 시행세칙 별책서식1 (제46의7호)
-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변경보고서 작성시 변경 이후 설립보고서와 함께 “변경 대비표”를 첨부하여 제출할 것
- ◆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할 것
- ◆ 유한책임사원의 명칭은 기재하지 아니할 것
- ◆ 업무집행사원이 다수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운영하는 경우 하나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다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보고사항도 함께 변경될 수 있음
- ◆ 정관상 내용이 변경되더라도 설립보고서상에 변경사항이 없으면 변경보고를 하지 않아도 됨

6 | 설립 및 변경 보고 내용의 확인 및 보완요구 등

(법 §249의10 ⑤, 영 §271의13 ④)

(1) 보고내용의 확인

- 금융위(금감원)는 설립 및 변경보고 내용에 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금융위는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와 그 업무집행사원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함
(영 §271의13 ③)

(2) 금융위의 보완요구

- 금융위(금감원)는 보고 내용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7 | 유한책임사원 정보 및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금의 투자구조 등 보고

(법 §249의11 ⑧, 영 §271의14 ⑥ ~ ⑧)

■ 업무집행사원의 특수관계인인 유한책임사원의 출자지분이 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금의 전체 출자지분 중 30% 이상인 경우

- 해당 유한책임사원 관련 정보 및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금의 투자구조 등을 비율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금융위(금감원)에 보고하여야 함

◆ 유한책임사원 정보 및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금 투자구조 관련 보고사항

- ① 사원의 연혁·목적·영업실태 등 사원의 개황, 대표자 및 임원에 관한 사항(사원이 법인인 경우로 한정) 및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의 경우 연결재무제표 포함)
- ② 사원별 출자 금액
- ③ 시행령 제271조의2제4항제6호 각 목의 업무¹⁹⁾에 따른 투자 구조
- ④ 투자대상기업 개황[기업의 연혁·목적·영업실태, 대표자 및 임원에 관한 사항 및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의 경우 연결재무제표 포함)]

- 통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금 설립시 업무집행사원의 특수관계인인 유한책임사원의 출자 지분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금 전체 출자지분 중 30% 이상인 경우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금 설립보고서와 LP 정보 및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금 투자구조 등에 대한 보고를 3영업일 이내에 동시 진행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금 설립 후 동 사유 발생시 사유 발생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 보고

19) 가. 투자대상기업의 선정이나 투자목적회사의 설립 또는 선정 업무

나. 투자대상기업이나 투자목적회사의 지분증권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그 가격·시기·방법 등을 결정하는 업무
 다.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금 재산이나 투자목적회사 재산에 속하는 지분증권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 업무
 라. 증권, 장내·외파생상품 및 부동산 등 자산을 매매하는 경우 그 가격·시기·방법 등의 결정 업무
 마. 투자대상기업 또는 투자목적회사에 파견 또는 선임할 임원의 선정 업무

제2절 **사원 및 출자****사원 및 출자 개요****사원**

- ▶ 사원의 구성 (법 §249의11①)
 - 사원 수 계산방법 (법 §249의11②,③)
- ▶ 무한책임사원 (법 §249의11①, 국가재정법 §63③)
- ▶ 업무집행사원 (법 §249의14, §249의15)
- ▶ 유한책임사원 (법 §249의11④,⑥)

**업무
집행
사원**

- ▶ 업무집행사원 선임 등 (법 §249의14①)
- ▶ 업무집행사원의 권리·의무 (법 §249의14①,⑤)
- ▶ 업무집행사원의 등록 (법 §249의15, 영 §271의21)
- ▶ 업무집행사원의 자격 등 (법 §249의14②, 영 §271의20①)
- ▶ 업무집행사원의 금융투자업 인가 특례 (법 §249의14④)

**유한
책임
사원**

- ▶ 유한책임사원의 자격
(법 §249의11⑥, 영 §271의14④,⑤, 규정 §7-41의10③)
- ▶ 유한책임사원 의사결정 관여 금지
(법 §249의11④, 영 §271의14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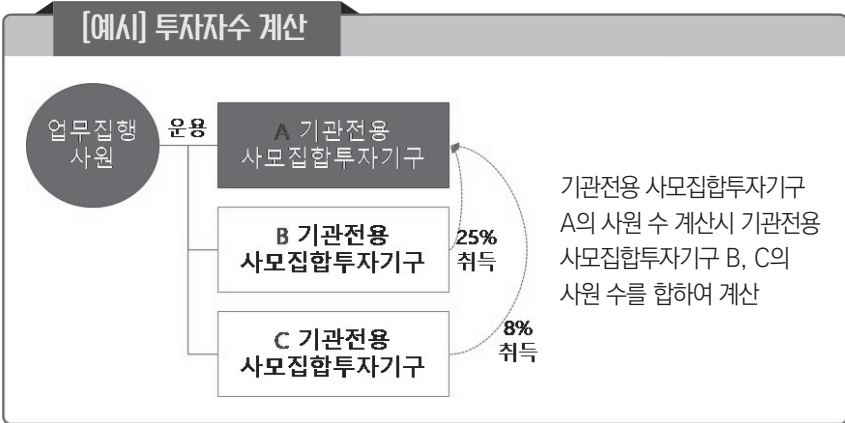
출자

- ▶ 사원의 출자방법 (법 §249의11⑥)
- ▶ 출자이행 요구(capital call) 방식의 출자 (영 §271의14①)
- ▶ 출자 특례 (법 §249의11⑦, 영 §271의11⑨,⑩)
 - 한국산업은행 및 중소기업은행의 출자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회사의 출자
- ▶ 사원의 지분 양도 (법 §249의17)

1 | 사원

가. 사원의 구성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사원은 1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과 1인 이상의 유한책임사원으로 하되, 사원의 총수는 100인 이하로 함
(법 §249의11 ①)
- 사원 총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다른 집합투자기구가 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지분을 10% 이상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의 수를 합하여 계산
(법 §249의11 ②, ③, 영 §271의14①)
 - 이 경우,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이 2개 이상의 다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경우로서 해당 2개 이상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지분 30% 이상을 취득(여유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취득으로서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의 취득은 제외, 규정 §7-41의10①)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지분 10% 미만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



○ 전문투자자 중 시행령으로 정하는 자는 100인 계산에서 제외

◆ 100인에서 제외되는 자의 범위 (영 §271의14②)

- ① 국가, 외국정부
- ② 한국은행, 외국 중앙은행
- ③ 조약에 따라 설립된 국제기구
- ④ 금융회사
 - 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보험회사, 금융투자업자(경영금융투자업자 제외),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자금중개회사, 금융지주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연합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 ⑤ 기타 기관
 -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회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금융투자협회, 한국예탁결제원, 전자등록기관, 한국거래소, 금융감독원, 집합투자기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 ⑥ ④ 및 ⑤에 준하는 외국인
- ⑦ 연금회 및 공제회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 및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나. 무한책임사원

- 「국가재정법」 제63조제3항에 따라 기금관리주체*는 기관전용 사모집합 투자기구의 무한책임사원이 될 수 없음

* 각 중앙관서의 장과 법률에 따라 기금을 관리·운영하는 자
(다만, 기금의 관리 또는 운용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외) (국가재정법 §9④)

다. 업무집행사원

(1) 업무집행사원 선임 (법 §249의14 ①)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정관으로 무한책임사원 중 1인 이상을 업무 집행사원으로 정하여야 하며, 업무집행사원은 2인 이상 둘 수 있음

(2) 업무집행사원의 권리·의무 (법 §249의14 ①, ⑤)

- 업무집행사원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를 가짐

○ (업무집행사원의 충실의무)

- 업무집행사원은 법령과 정관에 따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함

○ (업무집행사원의 출자의무)

- 무한책임사원인 업무집행사원도 금전으로 출자하여야 함
- 무한책임사원에 대한 출자방법을 제한하지 않는 상법*과 달리 자본 시장법은 유한·무한책임사원의 출자방법**을 동일하게 규제

* 상법은 유한책임사원의 경우 신용·노무 출자를 제한 (상법 제272조)

** 금전 출자를 원칙으로 하되, 객관적인 가치 평가가 가능하고, 사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른 모든 사원의 동기가 있는 경우 증권 출자 가능 (법 §249의11⑤)

(3) 업무집행사원의 등록 (법 §249의15)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으로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업무를 영위하려는 자는 금융위(금감원)에 등록하여야 함

☞ 업무집행사원 관련 주요 내용 및 등록 매뉴얼 등은 <제3장> 참고

(4) 업무집행사원의 자격 등 (법 §249의14②, 영 §271의20 ①)

- 금융관련법령 중 시행령으로 정하는 법령²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는 자(금융회사)는 그 법령에 불구하고 업무집행사원이 될 수 있음

- 금융회사가 경영참여 목적*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이 되고자 하는 경우 금산법 제24조에 의한 출자승인 등을 받아야 함

* 자본시장법 제249조의7제5항 각 호에 따른 방법(의결권 있는 주식에 10% 이상 투자, 임원의 임면 등 주요 경영사항에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는 투자)으로 운용

20) 법 제249조의14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이란 법, 이 영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법령을 말함(영 §271의20①)

1. 「은행법」
2. 「한국산업은행법」
3. 「중소기업은행법」
4. 「한국수출입은행법」
5. 「보험업법」
6. 「상호저축은행법」
7. 「여신전문금융업법」
8. 「신용보증기금법」
9. 「기술보증기금법」
10. 「신용협동조합법」
11. 「새마을금고법」
1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3.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14. 「한국주택금융공사법」
15. 「부동산투자회사법」
16. 「선박투자회사법」
17. 「산업발전법」
18.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참고) 「금산법」 제24조 규제 운용 개선방안('10.9.1, 금융위 의결)

- 금융회사가 사모투자전문회사(現 경영참여 목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유한 책임사원(LP)으로 투자하는 경우 금산법상 승인대상에서 제외
- 금융회사가 사모투자전문회사(現 경영참여 목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업무 집행사원(GP)으로 참여하는 경우 소유지분과 관계없이 금산법상 승인 대상

- 업무집행사원은 금융관련 법령에서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업무를 집행할 수 있음

(5)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금융투자업 인가 특례 (법 §249의14 ④)

- 업무집행사원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및 보관·관리,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지분의 판매 및 환매 등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제11조(무인가 영업행위 금지)를 적용하지 아니함

라. 유한책임사원

(1) 유한책임사원의 자격 (법 §249의11 ⑥, 영 §271의14 ④,⑤, 규정 §7-41의10③)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은 개인(외국인, 업무집행사원의 임원·운용인력 제외)이 아닌 자로서 전문성과 위험감수능력 등을 갖춘 기관투자자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제한

① 전문투자자로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투자자

- 국가, 한국은행
- 일정요건*을 갖춘 주권상장법인(코넥스상장 제외)

*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100억원(외부감사대상 주식회사는 50억원) 이상인 증명서를 금융위에 제출하고(증명서는 제출일 전일 기준, 제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을 것

- 금융기관(영 §10②) :
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보험회사, 금융투자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 제외),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자금중개회사, 금융지주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연합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위 금융기관에 준하는 외국 금융기관
- 영 §10③ 제1호부터 제6호, 제6호의2, 제7호부터 제14호, 제18호 :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회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금융투자협회, 한국예탁결제원, 거래소, 금융감독원, 집합투자기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운영하는 법인, 법률에 따라 공제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지방자치단체, 외국정부, 조약에 따라 설립된 국제기구, 외국 중앙은행 등

* 단,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이 집합투자증권 전부를 보유한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정

- ②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 관련자
(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1억원 이상 투자하는 경우로 한정)
 - 업무집행사원의 임원 또는 투자운용전문인력
 - 업무집행사원의 모회사
 - 업무집행사원의 임원 또는 투자운용전문인력이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 전부를 보유하고 각 1억원 이상을 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
- ③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이 출자지분 전부를 보유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④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재단법인

- 금융위원회에 아래의 사항을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 제출
- 자료 제출일 직전일 기준으로 영 제10조제2항 각호의 자 또는 제3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제7호, 제8호, 제10호 또는 제11호의 자가 90% 이상을 출연한 재단법인
- 자료제출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을 것

⑤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 금융위원회에 아래의 사항을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 제출
- 업무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적·물적 요건을 갖출 것
- 자료제출일 직전일 기준 최근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계속해서 금융투자 상품을 월말 평잔 기준 500억원 이상 보유
- 자료제출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을 것

⑥ 내국인의 출자지분이 없는 외국법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100억원 이상을 투자하는 경우로 한정)

⑦ 다음의 기관 또는 단체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
-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 따른 한국해양진흥공사
- 「농림수산물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림수산물투자모태조합

(2) 유한책임사원의 의사결정 관여 금지(법 §249의11 ④, 영 §271의14 ③)

- 유한책임사원은 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인 주식 또는 지분의 의결권 행사 및 ② 제3자 업무 위탁이 금지된 업무집행사원의 업무에 관여해서는 아니 됨

◆ 제3자에게 위탁이 금지된 업무집행사원의 업무 (영 §271의20④6호, 규정 §7-41의14⑩)

- ① 투자대상기업의 선정이나 투자목적회사의 설립 또는 선정 업무
- ② 투자대상기업이나 투자목적회사의 지분증권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그 가격·시기·방법 등을 결정하는 업무
- ③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이나 투자목적회사 재산에 속하는 지분증권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 업무
- ④ 증권, 장내·장외파생상품 및 부동산 등 자산을 매매하는 경우 그 가격·시기·방법 등의 결정 업무
- ⑤ 투자대상기업 또는 투자목적회사에 파견 또는 선임할 임원의 선정업무

2 | 출자

가. 사원의 출자 방법 (법 §249의11 ⑤)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사원의 출자의 방법은 금전에 한정

- 다만, 객관적인 가치평가가 가능하고 사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른 모든 사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증권으로 출자할 수 있음

☞ 독립적인 평가기관의 평가를 거친 경우에는 비상장 주식 출자를 통한 유한책임사원 참여 가능 (‘15.2월, 금융위 유권해석)

나. 출자이행 요구 (Capital call) 방식의 출자 (영 §271의14 ①)

■ 사원은 업무집행사원이 출자의 이행을 요구하는 때에 출자하기로 약정하는 방식으로 출자할 수 있음*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설립시 출자약정액을 미리 정관에 정해 놓고 실제 출자는 투자대상 기업에 투자할 때 업무집행사원이 사원에게 출자를 요구하여 투자함으로써 유희자금(idle money)을 최소화

다. 출자 특례

(1) 한국산업은행 및 중소기업은행의 출자 (법 §249의11 ⑦)

- 한국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은 그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기관 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할 수 있음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회사의 출자 (영 §271의14 ⑨,⑩)

- 같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회사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 기구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출자 총액의 30%를 초과해서는 아니 됨

- 다만,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기업이 오로지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회사(설립 중인 회사 포함)인 경우에는 30% 초과 출자 가능

◆ 출자총액의 30% 산정방법

- 같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무한책임사원(업무집행사원 포함) 및 유한책임사원의 출자 지분을 합산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별로 각각 30% 초과 여부를 판단

☞ 예 시

- (i) 기업집단에 속하는 a증권회사의 지분 20%, a' 캐피탈 지분 15%인 경우 : 출자 불가(합계가 30% 이하가 되도록 출자하여야 함)
- (ii) A 기업집단에 속하는 a증권회사의 지분 20%, B 기업집단에 속하는 b캐피탈의 지분 15%인 경우 : 출자 가능

[참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개념 등

- ◆ (개념) 일정 규모이상의 자산총액 등 일정 기준에 해당되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
-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적용 기준(공정거래법 § 31①, 영§ 38)
 -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기업집단) 중 자산총액이 국내총생산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인 기업집단
 - * 지정 직전사업연도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하되,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자본총액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 새로 설립된 회사로서 직전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가 없는 경우에는 지정일 현재의 납입자본금 기준
 - '기업집단'에서 제외되는 자의 범위
 - ① 금융업 또는 보험업만을 영위하는 기업집단
 - ②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공정거래법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동일인인 경우의 기업집단
 - ③ 해당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기업집단 전체 자산총액 50% 이상인 기업집단.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제외한 회사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제외
 - (i)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의 개시가 결정되어 그 절차가 진행중인 회사
 - (ii)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관리절차의 개시가 결정되어 그 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
 - ④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동일인인 기업집단
 - ⑤ 해당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모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집단
 - (i)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법 §9⑩1호)
 - (ii) (i)에 해당하는 자가 투자한 투자목적회사(자본시장법 §249의13①)
 - (iii) (ii)에 해당하는 자가 투자한 투자목적회사
 - (iv) (i)~(iii)에 해당하는 자가 투자한 투자대상기업(자본시장법 §249의18②4호)
 - (v) (iv)에 해당하는 자가 지배하는 회사
 - (vi) 자본시장법(§249의15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 기구의 업무집행사원

- ⑥ 해당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모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집단 (단, (i) 또는 (ii)에 해당하는 회사가 각각 하나 이상 포함되어 있어야 함)
- (i)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
 - (ii) ⑤의 (i)-(vi)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

라. 사원의 지분양도 (법 §249의17)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무한책임사원은 출자한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음²¹⁾

- 다만,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사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 지분을 분할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음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은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 출자한 지분을 분할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음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은 그 지분을 자본시장법 제249조의11 제6항에 해당하는 전문성과 위험관리능력을 갖춘 기관 투자자 및 이에 준하는 자 외의 자에게 양도할 수 없음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무한책임사원 및 유한책임사원은 양도의 결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사원 총수가 100인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는 지분을 분할하여 양도할 수 있음

- ☞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의 지위 변경 허용 여부 ('15.2월, 금융위 유권해석)
 : 자본시장법에서 PEF의 정관에 무한책임사원 또는 유한책임사원을 구분하여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총사원의 동 등 적절한 정관 변경절차를 거쳐 정관에 기재된 사원의 책임을 변경하는 경우 지위 변경 가능

21) 위반시 조치

- 법 제249조의17 제1항을 위반하여 출자한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법 §446 48호)

제3절 재산 운용

재산 운용 개요

재산운용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권 참여 목적 투자 (법 §249의7⑤ · §249의12①, 영 §271의10⑮~⑰) ▶ 차입한도 (법 §249의7① · §249의12①, 영 §271의10①, ②) ▶ 금전대여 (법 §249의7② · §249의12①, 영 §271의10⑦~⑩) ▶ 취득한 부동산의 처분 제한 (법 §249의7② · §249의12①, 영 §271의10③~⑥)
금융회사 GP시 운용규제	▶ 금융회사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인 경우, 운용규제 (영 §271의20 ②, ③, 규정 §7-41의 14)
상호출자 규제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투자제한 (법 §249의18)
투자목적 회사 투자·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목적회사의 요건 (법 §249의13①, 영 §271의19①, ②) ▶ 투자목적회사의 업무위탁 제한 (영 §271의19⑤) ▶ 투자목적회사의 재산운용 목적 및 제한 등 (법 §249의13④, 영 §271의19⑥)
이해관계인 거래	▶ 이해관계인 거래 제한 등 (법 §249의16)
자료의 기록 유지	▶ 업무관련 자료의 기록·유지 의무 (법 §187, 영 §214)
정기보고서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차입 또는 채무보증 현황 등에 대한 보고 의무 등 (법 §249의12②, 영 §271의16③, 규정 §7-41의11)
특정사유 발생보고	▶ 차입한도 초과, 부실자산 발생, 환매연기·재개 결정 등 (법 §249의7 ④ · §249의12 ①, 영 §271의10 ⑭)
경영권 참여보고	▶ 경영권 참여 투자 보고의무 (법 §249의19②, 영 §271의24①, 규정 §7-41의17①)

1 | 재산운용 방법

가. 재산운용의 개요 (법 §249의12 ①)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재산운용 방법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 방법 준용*

* 자본시장법 제249조의7(제3항 및 제6항 제외)을 준용

- 이에 따라 과거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적용되던 투자목적 제한²²⁾, 지분취득 의무²³⁾ 및 지분보유 의무²⁴⁾가 폐지되었으며, 레버리지 한도가 400%까지 확대되고, 금전대여(대출) 방식의 재산 운용이 가능하게 되었음

나. 경영권 참여 목적 투자 (법 §249의7 ⑤, 영 §271의10 ⑬~⑰)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다른 회사(다만, 일부 회사 제외)에 대한 경영권 참여, 사업구조 개선 또는 지배구조 개선 등을 위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집합투자 재산을 운용(공동투자 포함²⁵⁾)하는 경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15년 이내에 제3자에게 이를 처분해야 함

22) 출자금의 50% 이상을 2년내 경영참여목적으로 투자

23)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 투자

24) 지분증권등의 취득 후 6개월 이상 보유

25) 다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와 다음과 같이 공동으로 재산을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

(법 §249의7⑤, 영 §271의10⑬)

- 지분증권 또는 주권 관련 사채권의 공동 취득·처분

- 지분증권 또는 주권 관련 사채권의 상호 양도·양수

-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대한 의결권(의결권의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 포함)의 공동 행사

- ①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하게 된 날
- ② 투자하는 회사의 임원 임면 등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력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투자를 한 날
 - 투자계약을 통해 임원의 임면, 조직변경 또는 신규투자 등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투자
 - 투자를 통해 투자대상회사의 최대주주가 되는 투자
(단,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미만을 보유하는 경우에 한정)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영권 참여 목적의 투자에서 제외되는 '회사' 범위
(법 §249의7 ⑤, 영 §271의10 ⑬, 규정 §7-41의7 ⑩)

- ① 투자목적회사, 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투자유한책임회사
- ②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 ③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 ④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
- 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
- ⑥ 외국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을 목적으로 설립된 외국법인(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종속회사에 상당하는 외국회사를 포함한다)으로서 국내에 투자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자산을 합한 금액이 총자산의 30% 미만인 외국법인
- ⑦ 외국집합투자기구
- ⑧ ②~⑤까지의 회사와 유사한 외국회사
- ⑨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법인
- ⑩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한 특수목적법인(「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제1항에 따른 투자회사에 한정)

다. 차입(레버리지) 한도 (법 §249의7 ①, 영 §271의 10 ①,②, 규정 §7-41의7⑤)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법 제249조의13에 따른 투자 목적회사 재산 포함) 운용시, 다음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기관전용 사모 집합투자기구 순자산총액(자산총액 - 부채총액)*의 400%를 초과하면 안됨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의 차입금, 채무보증액 및 실질적인 차입금의 합계액을 산정할 때,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의 자기자본은 각 차입금, 채무보증 및 실질적인 차입을 하기 전날을 기준으로 산정(규정 §7-41의7⑤)

① 파생상품 투자시 그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

* 총수익스왑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를 통해 사실상의 차입과 같은 효과가 있는 경우 준거자산의 취득가액을 위험평가액에 포함(규정 §4-54 ①6호)

② 집합투자재산으로 해당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외의 자를 위하여 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시 채무보증액 또는 담보목적물 가액

③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금전 차입시 그 차입금 총액

④ 거래의 실질이 차입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차입금 금액

- 증권을 환매조건부매도하는 경우 그 매도금액

- 증권을 차입하여 매도하는 경우 그 매도금액

라. 금전대여 (법 §249의7 ②, 영 §271의10 ⑦ ~ ⑩, 규정 §7-41의7 ⑥, ⑦)

■ (투자자)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집합투자재산을 금전 대여로 운용 하는 경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만 사원으로 참여 가능

① 국가, 한국은행 및 전문투자자 중 시행령으로 정하는 자

◆ 대출형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할 수 있는 전문투자자 범위
(영 §271의10 ⑨)

① 금융기관(영 §10②)

- 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보험회사, 금융투자업자(경영금융투자업자 제외),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자금증개회사, 금융지주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연합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위 금융기관에 준하는 외국 금융기관

②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회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금융투자협회, 한국예탁결제원, 전자등록기관, 한국거래소, 금융감독원, 집합투자기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 운영하는 법인, 법률에 따라 공제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지방자치단체
- 외국정부, 조약에 따라 설립된 국제기구, 외국 중앙은행 등

③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주관상장법인(코넥스 상장법인 제외)

-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100억원(외부감사대상 주식회사는 50억원) 이상인 증명자료를 금융위에 제출하고(증명자료는 제출일 전일 기준, 제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② 다만, 금전을 대여한 차주의 목적이 다음과 같은 경우, ①외의 투자자도 해당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 가능

- 국내외 부동산 취득·개발·임대·운영·관리·개량 및 이에 준하는 사업을 하거나 해당 사업에 투자하는 경우
- 특정 특별자산(영 §80①5호다목, 이와 유사한 외국자산 포함*)의 취득·신설·증설·개량·운영 및 이에 준하는 사업을 하거나 해당 사업에 투자하는 경우

*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

2) 선박, 항공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특별 자산

■ (대여제한) 집합투자재산을 개인 및 유흥·사행 업종(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4*)을 영위하는 자에게 대여 금지

*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

1) 일반유흥주점업, 2) 무도유흥주점업, 3)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4) 그 밖에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이를 회피하기 위해 대부업자 또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와의 연계 거래를 이용하는 행위 금지

■ (준수사항)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금전의 대여로 운용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함

① 내부적인 투자판단 과정에 따라 금전 대여의 최종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금전 대여의 타당성 분석 체계를 구축할 것

② 금전 대여 업무의 본질적 업무*를 제삼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본질적 업무를 위탁받는 자는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일 것

* 1) 대출의 심사 및 승인, 2) 대출계약의 체결 및 해지 또는 3) 대출의 실행

마. 취득한 부동산의 처분 관련 (법 §249의7 ②, 영 §271의10 ③~⑥)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부동산 취득 등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경우, 다음의 행위 금지

① 국내 부동산의 단기 매매 금지

- 국내에 있는 부동산(국내 부동산을 취득한 투자목적회사 지분 포함) 취득 후 1년내(미분양주택의 경우 정관에서 정한 기간내) 처분 금지

- 다만, 부동산개발사업에 따라 조성하거나 설치한 토지·건축물 등을 분양하거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해지 또는 해산되는 경우에는 적용 제외

② 토지개발사업 시행 전 토지 처분 금지

-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이 없는 토지로서 그 토지에 대한 부동산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동 토지를 처분하는 행위는 금지
-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 제외

- * 1)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지구의 해지 또는 해산
- 2) 부동산개발사업을 위해 토지를 취득한 이후 관련 법령의 제개정 또는 폐지 등으로 인해 사업성이 뚜렷하게 떨어져서 부동산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객관적으로 증명되어 그 토지 처분이 불가피한 경우

2 | 금융회사가 업무집행사원인 경우 운용규제

가. 운용방법의 제한 (영 §271의20 ②, 규정 §7-41의14 ①~③)

■ 금융회사²⁶⁾가 업무집행사원*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지구는 집합투자 재산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운용해야 함**

-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는 제외
- ** 다만, 규정 제7-41조의14 제5항에서 정하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 미리 금융위에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규정 제7-41조의14 제5항 각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운용 가능

26) 다음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 (영§271의20① 1~14호)

1. 「은행법」
2. 「한국산업은행법」
3. 「중소기업은행법」
4. 「한국수출입은행법」
5. 「보험업법」
6. 「상호저축은행법」
7. 「여신전문금융업법」
8. 「신용보증기금법」
9. 「기술보증기금법」
10. 「신용협동조합법」
11. 「새마을금고법」
1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3.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14. 「한국주택금융공사법」

- 사원의 출자일로부터 2년 이내에 출자금액의 50% 이상을 다음 ①, ②, ④ 또는 ⑤*의 방법으로 운용해야 하며, ①, ②의 방법으로 투자한 경우에는 지분증권 또는 주권 관련 사채권을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소유해야 함

* 투자목적회사가 ①, ② 또는 ④에 따른 투자를 목적으로 한 경우 한정

- 다른 회사의 지분증권등 최초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①, ②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기 취득한 지분증권 등을 전부 다른 자*에게 6개월내 처분할 필요 (처분 이후에는 지체없이 관련사항 금융위 보고 필요)

* 해당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금과 출자 관계를 가지고 있거나 같은 자로부터 출자에 의해 지배를 받는 자는 제외

◆ 금융회사가 업무집행사원인 경우,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금 운용 방법

(영 §271의20 ②1호)

- ① 경영권 참여 투자 (법 §249의7 ⑤ 각 호의 방법으로 하는 투자)
- ②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과 주식 관련 사채권의 전환권·신주인수권 등의 행사로 취득할 수 있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합계가 그 회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 이상이 되는 투자
- ③ 경영 참여 목적으로 '①' 또는 '②'의 방법으로 투자한 기업이 발행한 증권(투자목적 회사를 통해 투자한 경우 포함)에 대한 위험 또는 환율 변동 위험을 회피할 목적의 장내·외 파생상품 투자
- ④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가 발행한 증권에 대한 투자
- ⑤ 투자목적회사의 지분에 대한 투자
- ⑥ 투자대상기업의 금전채권에 대한 투자(법 §249의7 ⑤ 각 호의 방법으로 투자하는 경우만 해당)
- ⑦ 투자대상기업이 보유하는 부동산(지상권·지역권·전세권·임차권·분양권 등 포함) 또는 금전채권 등에 대한 투자
- ⑧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
- ⑨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에 대한 투자

나. 여유자금의 운용 (영 §271의20 ②)

■ 금융회사가 업무집행사원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시행령 제271조의 20 제2항제1호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남은 집합투자재산을 다음 방법으로 운용해야 함

- ① 금융기관 등에 대한 30일 이내의 단기대출 (법 §83④)
- ② 시행령(영 §79②5호)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이에 준하는 외국 금융회사 포함)* 또는 채신관서**에의 예치
 - * 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또는 상호저축은행
 - **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신관서
- ③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순자산총액(자산-부채)의 30%이내에서 증권(자본시장법 제4조제1항 각호의 증권 외의 증권)에 투자
- ④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 ⑤ 금융기관이 발행·할인·매매·중개·인수 또는 보증하는 어음 (기업어음증권은 제외)
- ⑥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금전 대여

다. 운용 특례 (영 §271의20 ③, 규정 §7-41의14 ⑧, ⑨)

■ 다음의 업무집행사원은 재산운용 제한 규정(영 §271의20②)에도 불구하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를 법 제249조의12제1항*의 방법으로 운용 가능

*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방법 준용(법 §249의7, 단 ③, ⑥제외)

- ① 「한국산업은행법」, 「중소기업은행법」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를 영위하는 경우로서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업무집행사원

- 집합투자재산을 경영권 참여 방법(법 §249의7⑤ 각 호 방법)*으로

운용할 것

* 금융위 확인을 받은 경우,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경영권 참여 이외의 방법(사모집합투자 기구, 벤처투자조합, 신기술투자조합에 출자, 출자 이후 잔여재산은 시행령 제271조의20 제2항제2호 각 목 방법으로 운용)으로 운용 가능

- 투자목적, 투자전략, 운용방법 및 투자대상자산의 종류에 관하여 규정 (규정 §7-41⑨*)상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 1) (투자목적·투자전략 및 운용방법) 정부의 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고, 「한국 산업은행법」, 「중소기업은행법」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설립목적에 부합할 것

2) (주요 투자대상자산) 1)의 목적 달성에 적합할 것

3) 1), 2) 및 시행령 (§271의20③1호)상의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금융위에 미리 제출할 것

②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③ 「부동산투자회사법」, 「선박투자회사법」, 「산업발전법」 또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를 영위하는 업무집행사원

3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투자 제한²⁷⁾

가. 계열사로 편입된 회사의 지분증권 처분 의무 (법 §249의18 ①)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상호 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무한책임사원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 기구가 다른 회사(외국기업* 제외)를 계열사로 편입시,

*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기업 (법 §9⑩4호)

27) 위반시 조치

- 법 제249조의18제1항을 위반하여 지분증권을 처분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지분증권을 취득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법 §446 49호)

- 편입일부터 5년 이내에 그 다른 회사의 지분증권을 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아닌 자에게 처분해야 함

나. 금융전업그룹에 대한 지분증권 처분 의무 완화

(법 §249의18 ②, 영 §271의23)

■ 다만, 금융전업그룹의 계열회사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금융전업그룹의 계열회사가 무한책임사원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지분증권 처분 의무가 일부 완화

- 다른 회사를 계열회사(외국기업 제외)로 편입시, 처분기한이 7년으로 완화
-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금융위(금감원)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처분기한을 3년 이내에서 추가 연장 가능

* 1) 지분증권 가격의 급격한 변동 등 경제여건의 변화

2) 투자대상기업이 하는 사업의 현저한 손실

3) 1), 2)에 준하는 사유로서 해당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대상기업의 지분을 처분하는 것이 곤란한 사유

☞ PEF제도 도입 당시에는 외국 기업까지 계열회사로 편입하는 것을 규제하였으나,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편입 규제대상 회사에서 외국기업을 명시적으로 제외('08.6.23. 금융위 보도자료)

◆ 금융전업그룹 (법 §249의18 ②)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사 전체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을 제외한 금융·보험회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75%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 다만, 금융·보험 계열사는 Max[자본금, 자본총액]을 적용

** 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②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투자목적회사

③ ②에 해당하는 자가 투자한 투자목적회사

④ ① ~ ③에 해당하는 자가 투자한 투자대상기업

⑤ ④에 해당하는 자가 지배하는 회사

다. 계열회사 지분증권 취득 제한 (법 §249의18 ③)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무한책임사원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그 계열회사 (단, 투자목적회사 및 투자대상기업은 제외)가 발행한 지분증권 취득 금지

☞ 외국 기업에 대한 명시적인 배제가 없으므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외국 계열회사의 지분증권을 취득할 수 없음

라. 금융전업그룹에 대한 계열회사 지분증권 교차 취득·소유 제한

(법 §249의18 ④)

- 금융전업그룹의 계열회사는 다음의 행위가 금지됨

- 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 아닌 계열회사의 지분증권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행위

* 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②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투자목적회사

③ ②에 해당하는 자가 투자한 투자목적회사

④ ① ~ ③에 해당하는 자가 투자한 투자대상기업

⑤ ④에 해당하는 자가 지배하는 회사

- ②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 아닌 계열회사가 투자대상회사 또는 투자대상기업이 지배하는 회사의 지분증권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행위

4 | 투자목적회사를 통한 투자

가. 요건 (법 §249의13 ①)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투자목적회사의 지분증권에 투자할 수 있음

① 회사 요건 :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

* 투자목적회사에 관하여는 자본시장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상법」의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 (법 §249의13 ②)

② 투자 목적 : 특정 법인 또는 특정 자산 등에 대한 효율적인 투자를 목적으로 할 것

③ 주주 또는 사원 요건 및 비율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되, (i)에 해당하는 주주 또는 사원의 출자비율이 50% 이상일 것

(i)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그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투자목적회사

(ii) 투자목적회사가 투자하는 회사의 임원 또는 대주주

(iii) 투자목적회사에 대하여 신용공여(법 §34②)를 한 금융기관*으로서 출자전환 등을 한 자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

(iv)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전략적 투자자)

㉠ 시행령 제271조의19제2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아닐 것

* ① 국가, ② 한국은행, ③ 영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④ 영 제10조제3항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⑤ 영 제10조제3항제1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⑥ ③ 및 ④에 따른 자에 준하는 외국인, ⑦ ①~⑥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같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회사가 설립하였거나 사실상 지배하는 회사 또는 법인

- ㉓ 국내에서 직접 임직원, 영업소, 그 밖에 사업을 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필요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제조업 등의 사업을 하는 자일 것
 - ☞ 외국법인은 불가
 - ㉔ 투자목적회사에 투자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 사원과의 합의 또는 계약 등에 따라 해당 투자목적회사가 투자하는 기업의 경영에 공동으로 참여할 것
 - ㉕ 그 밖에 사원의 이익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
- ④ 사원수 요건 : 그 주주 또는 사원인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 수와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주주 또는 사원의 수를 합산한 수가 100명 이내일 것
- ⑤ 서류상 회사(paper company) 요건 : 상근임원을 두거나 직원을 고용하지 아니하고, 본점 외에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나. 투자목적회사의 업무위탁 제한 (영 §271의19 ⑤)

- 투자목적회사는 그 회사의 주주나 사원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에게 그 회사의 재산 운용을 위탁하여야 함

다. 투자목적회사의 재산운용 (법 §249의13 ④, 영 §271의19 ⑥)

- 투자목적회사는 자본시장법 제249조의7 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방법*(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주주 또는 사원인 투자목적회사의 경우, 제6항의 방법은 제외)으로 투자목적회사의 재산을 운용해야 함

* 1) 차입(레버리지) 한도 관련 (법 §249의7①)

- 2) 취득한 부동산의 처분 제한 및 금전 대여 관련 (법 §249의7②)
- 3) 특정사유 발생보고 관련 (법 §249의7④)
- 4) 경영권 참여 투자 관련 (법 §249의7⑤)

라. 투자목적회사의 재산 평가 (영 §271의19 ⑦)

- 투자목적회사는 그 재산을 자본시장법 제238조제1항28)에 따라 평가해야 함
 - 다만,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주주 또는 사원인 투자목적회사가 경영권 참여 방법 (법 §249의7⑤ 각 호 방법)으로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그 지분증권에 대한 평가는 그 지분증권의 취득가격 (영 §260①1호)으로 할 수 있음

마. 이익금의 분배 관련 규정 준용 (법 §249의13 ⑤, §242)

- 집합투자기구의 이익금 분배 관련 규정(법 §242²⁹⁾) 준용

바. 전문투자자 사원 총수 계산 관련 준용 (법 §249의13 ⑤, §249의11 ③)

- 전문투자자 중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사원의 총수 계산시 제외되는 대상 관련 규정(법 §249의11 ③) 준용

28) 자본시장법 제238조(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기준가격의 산정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을 시기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적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29) 자본시장법 제242조(이익금의 분배) ①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자에게 금전 또는 새로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분배하여야 한다. 다만, 집합투자기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집합투자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익금의 분배를 집합투자기구에 유보할 수 있다.

②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집합투자기구의 특성에 따라 이익금을 초과하여 분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익금을 초과하여 금전으로 분배할 수 있다. 다만,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순자산액에서 최저순자산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여 분배할 수 없다.

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투자 제한 준용 (법 §249의13 ⑥, §249의 18)

- 투자목적회사에 대하여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한 투자 제한 규제 (법 §249의18)가 동일하게 적용

아. 투자목적회사에 대한 상법상 특례

(법 §249조의13 ⑦, 상법 §317②, 상법 §549 ②)

- 주식회사 설립등기 특례 (상법 §317②2호, 3호)
 - 등기사항 중 자본금의 액, 발행주식의 총수·그 종류와 각종 주식의 내용과 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
- 유한회사 설립등기 특례 (상법 §549②2호)
 - 등기사항 중 자본금의 총액, 출자 1좌의 금액에 관한 사항은 제외

5 |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등³⁰⁾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법 §249의16 ①, ②, 영 §271의22 ①, ②)

- (원칙) 업무집행사원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자재산을 운용할 때 이해관계인과의 거래행위가 금지됨

30) 위반시 조치

- 법 제249조의16제1항을 위반하여 거래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법 §444 19의5호)

◆ ‘이해관계인’ 범위 (영 §271의22 ①)

- ① 업무집행사원의 임직원과 그 배우자
- ② 업무집행사원의 대주주와 그 배우자
- ③ 업무집행사원의 계열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제외한 계열 회사
 - (i) 해당 업무집행사원이 그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투자대상기업 또는 투자목적회사
 - (ii) (i)의 투자대상기업이나 투자목적회사에 대하여 시행령 제271조의10제16항³¹⁾에 따른 방법으로 공동 운용함으로써 그 투자대상기업이나 투자목적회사에 투자한 다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그 업무집행사원
 - (iii) 그 밖에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사원의 이익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회사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회사

■ (예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와 이해가 상충될 우려가 없는 거래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거래는 가능

- ① 증권시장 등 불특정다수인이 참여하는 공개시장을 통한 거래
- ②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유리한 거래
- ③ 시행령 제8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

◆ 시행령 제85조의 거래

1. 이해관계인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를 통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이해관계인이 아닌 자와 행하는 투자대상자산의 매매
2. 이해관계인의 매매중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매매형식의 중개)를 통하여 그 이해관계인과 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대상자산의 매매
 - 가. 채무증권
 - 나.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 다. 어음(기업어음증권은 제외한다)

31) 1. 지분증권 또는 주권 관련 사채권의 공동 취득·처분
 2. 지분증권 또는 주권 관련 사채권의 상호 양도·양수
 3.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대한 의견권(의결권의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의 공동 행사

3. 각 집합투자기부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이해관계인(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는 제외한다)과 집합투자자산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거래
 - 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4. 이해관계인인 금융기관(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과 이에 준하는 외국 금융기관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의 예치.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자산 중 이해관계인인 금융기관에 예치한 금액은 전체 금융기관에 예치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됨
5. 이해관계인인 신탁업자와의 거래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
 - 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통화의 매매(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선물환거래를 포함한다)
 - 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장외파생상품의 매매로서 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계약의 체결(그 기초자산이 외국통화인 경우로 한정한다)
 - 다. 법 제8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금전차입의 거래. 이 경우 신탁업자의 고유재산과의 거래로 한정한다.
- 5의2. 이해관계인(전담중개업무를 제공하는 제8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이해관계인인 경우만 해당한다)과 전담중개업무로서 하는 거래
- 5의3. 환매기간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으로 하여 이해관계인(제7조제4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거래상대방 또는 각 당사자로 하는 환매조건부매매의 수요·공급을 조성하는 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과 환매조건부매매를 하거나 그 이해관계인이 환매조건부매매를 중개·주선 또는 대리하는 거래
6. 그 밖에 거래의 형태, 조건, 방법 등을 고려하여 집합투자기부와 이해가 상충될 염려가 없다고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받은 거래

④ 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부 사원 전원이 동의한 거래

⑤ 그 밖에 금융시장의 안정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거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

- (신탁업자 통보) 업무집행사원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이해관계인과의 거래가 있는 경우 또는 이해관계인의 변경이 있는 경우,
 - 그 내용을 해당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자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함

나. 업무집행사원의 증권 취득 제한 (법 §249의16 ③, ④, 영 §271의22 ③~⑥)

☞ 자본시장법 제249조의16 제4항은 업무집행사원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해 업무집행사원 또는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는 유한책임사원의 대주주 등 계열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회사를 지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으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지배하는 투자목적회사 및 투자대상기업과 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이 운영하는 다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회사 및 투자대상기업의 경우 이해관계인 거래 제한 규제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움

- (증권취득 제한) 업무집행사원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자산을 운용할 때,

- 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그 업무집행사원이 발행한 증권을 '취득'해서는 아니 됨
- ② 집합투자재산의 5%를 초과하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해서는 아니 됨

* 그 계열회사가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한 증권예탁증권 및 ①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 증서, ②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③ ① 및 ② 외에 대출채권, 예금, 그 밖에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 포함

- (i) 그 업무집행사원의 계열회사
- (ii) 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는 유한책임사원으로서 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출자총액의 30% 이상의 출자지분을 보유한 유한책임사원의 계열회사

- (평가방법) 위 ②에 따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하는 증권은 시가로 평가
 - 이 경우 평가방법 등은 시행령 제26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름

6 | 자료의 기록 및 유지³²⁾

(법 §249의20 ①, §187, 영 §214, 규정 §7-7, [별표17])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회사의 업무와 관련한 자료를 일정기간 동안 기록·유지하여야 함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기록·유지하여야 하는 자료가 멸실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자료의 최소 보존기간 (영 §214, 규정 [별표17])

자료의 종류	최소 보존기간
집합투자재산 명세서	10년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대장	10년
집합투자재산 운용내역서	10년
집합투자자총회 의사록 및 이사회 의사록	10년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10년
업무위탁 등에 관한 자료 : 업무위탁 등의 계약서 및 관련 자료	3년
감독기관 관련 자료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세청 등 감독기관에 제출하거나 감독기관으로부터 접수한 자료	5년
그밖에 법령에서 작성·비치하도록 되어 있는 장부·서류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기간

32) 위반시 조치

- 법 제187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기록·유지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법 §445 11호)

7 | 정기보고서³³⁾ (법 §249의12 ②, 영 §271의16, 규정 §7-41의11)

(1) 보고내용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재산 운용현황 등 다음의 사항을 정기적으로 금융위(금감원)에 보고하여야 함
 - 파생상품 매매 및 그에 따른 위험평가액 현황, 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 현황, 금전차입 현황
 - 시행령 제271조의10제2항에 따른 증권 환매조건부 매도금액, 증권 차입 매도금액 등 실질적인 차입금 현황
 - 법 제249조의7제1항에 따라 산정한 레버리지비율
 - 금전대여 현황
 - 집합투자재산 운용 현황, 차입 또는 채무보증 현황(투자목적회사의 차입 또는 채무보증 현황 포함)
 - ☞ (보고서식) 시행세칙 별책서식1 <제46의8호>

(2) 보고주기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재산규모에 따라 보고주기가 상이하며, 보고 기준일로부터 1개월내 금융위(금감원)에 보고
 - 집합투자재산 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기준일 : 매년 6월 30일 및 12월 31일
 - 집합투자재산 총액이 100억원 미만인 경우 기준일 : 매년 12월 31일

33) 위반시 조치

-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법 §449① 41의3호)

8 | 특정사유발생보고 (법 §249의7 ④ · §249의12 ①, 영 §271의10 ⑭)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투자자 보호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발행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금융위(금감원)에 보고해야 함

- ① 법 제249조의7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본문(레버리지) 한도를 초과한 경우
- ②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 ③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이 있는 경우
- ④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만기결정이나 만기상환 거부 결정이 있는 경우

9 | 경영권 참여 보고³⁴⁾

(법 §249의19②, 영 §271의24①, 규정 §7-41의17①)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가 자본시장법 제249조의7 제5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그 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그 사실을 금융위(금감원)에 보고 하여야 함
- 금융위(금감원)는 그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함

34) 위반시 조치

- 법 제249조의19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법 §446 51호)

◆ 경영권 참여투자 보고 방법 (규정 §7-41의17)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는 경영권 참여보고시 아래의 증빙서류를
금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i)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출자내역 및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ii) 임원의 파견 또는 선임과 관련한 합의 또는 계약 등을 한 경우 관련 서류

※ 보고서식 (시행세칙 별책서식1 제46의11호)

제4절 내부 운영

내부 운영 개요

업무집행사원의 의무 등

- ▶ 업무집행사원의 불건전행위 금지
(법 §249의14⑥, 영 §271의20, 규정§7-41의14⑩,⑪)
- ▶ 업무집행사원의 업무위탁 제한
(영 §271의20④, 규정 §7-41의14⑩)
- ▶ 업무집행사원의 행위준칙 (법 §249의14⑦)
- ▶ 업무집행사원의 정보제공 및 설명의무
(법 §294의14⑥, 영§271의20⑤)
- ▶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손익분배 및 보수지급 방법
(법 §249의14③,⑪)

업무집행사원이 아닌 사원의 감시권

- ▶ 장부서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법 §249의14⑨)
- ▶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한 검사권 (법 §249의14⑩)

조직 변경

-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합병 금지
(법 §249의17④)

1 | 업무집행사원의 불건전행위 금지³⁵⁾

(법 §249의14 ⑥, 영 §271의20 ④, 규정 §7-41의14 ⑩, ⑪)

■ 업무집행사원*은 다음 행위를 할 수 없음

* 법인이 업무집행사원인 경우, ②, ③에 대해서는 업무집행사원의 임직원 포함

- 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와 거래하는 행위
(사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가능)
- ② 원금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약속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원이 될 것을 부당하게 권유하는 행위*
* 동 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사원간에 출자한 지분을 장래에 양수 또는 양도하기로 하거나 (양수 또는 양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경우 포함) 투자에 따른 손실을 보전해 주기로 하는 이면계약 등에 따라 출자비용, 출자방법 및 손익의 분배 등을 정관과 달리 정하여서는 아니 됨(규정 §7-41의10 ⑥)
- ③ 사원 전원의 동의 없이 사원의 일부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위하여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소유한 자산의 명세를 사원이 아닌 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 ④ 정관을 위반하여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재산을 운용하는 행위
- ⑤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재산을 운용할 때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반적인 거래조건을 벗어나는 불공정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 ⑥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재산에 관한 정보를 업무집행사원의 고유 재산 운용에 이용하는 행위

35) 위반시 조치

- 제249조의14제6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법 §446 47호)

- ⑦ 특정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나 투자목적회사의 이익을 해치면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⑧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규정(법 §249의 11 ~ §249의18)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외파생상품거래, 신탁계약, 연계거래 등을 이용하는 행위
- ⑨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행위

◆ 제3자에게 위탁이 금지된 업무집행사원의 업무

(영 §271의20④6호, 규정 §7-41의14⑩)

- ① 투자대상기업의 선정이나 투자목적회사의 설립 또는 선정 업무
- ② 투자대상기업이나 투자목적회사의 지분증권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그 가격·시기·방법 등을 결정하는 업무
- ③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이나 투자목적회사 재산에 속하는 지분증권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 업무
- ④ 증권, 장내·장외파생상품 및 부동산 등 자산을 매매하는 경우 그 가격·시기·방법 등의 결정 업무
- ⑤ 투자대상기업 또는 투자목적회사에 파견 또는 선임할 임원의 선정업무

- ⑩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담당직원과 해당 운용에 관한 의사를 집행하는 직원을 구분하지 않는 행위.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가능

- (i) 자본시장법 제249조의7제5항 각호의 방법*으로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경우

* 다른 회사에 대한 경영권 참여, 사업구조 또는 지배구조의 개선 등을 위해 집합투자 재산을 운용하는 경우(지분 10% 이상 취득 또는 사실상 지배력 행사가 가능하도록 투자)

- (ii)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별로 계좌를 개설하고, 계좌별로 이루어지는 매매거래의 경우

- (iii) 장내파생상품 거래의 경우
 - (iv) 거래소의 증권시장업무규정에서 정하는 프로그램매매에 해당하는 경우
- ⑪ 투자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업무를 하도록 하는 행위

2 | 업무집행사원의 행위준칙³⁶⁾ (법 §249의14⑦)

- (제정의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업무집행사원이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행위준칙을 제정하여야 함
 - 행위준칙에는 업무집행사원의 충실의무, 업무집행사원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함
- (보고의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업무집행사원의 행위준칙을 제정·변경시 지체없이 금융위(금감원)에 보고해야 함
- (변경·보완명령) 금융위(금감원)는 보고받은 행위준칙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금융시장의 안정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완할 것을 명할 수 있음
 -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행위준칙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설립보고시 필수 첨부 서류임 (규정 §7-41의9②)

36) 위반시 조치

- 행위준칙을 제정하지 아니하거나 미보고 또는 허위 보고하는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법 §449③ 10호)

3 | 업무집행사원의 정보제공 및 설명의무

(법 §294의14 ⑧, 영 §271의20 ⑤)

- 업무집행사원은 6개월마다 1회 이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출자한 투자목적회사의 재무제표 등을 사원에게 제공하고,
 - 그 운영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하며 그 제공 및 설명 사실에 관한 내용을 기록·유지하여야 함

4 |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손익배분 및 보수지급 방법

(법 §249의14 ③, ⑪)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정관으로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손익의 분배 또는 손익의 순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음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업무집행사원에게 보수(운용실적에 따른 성과보수 포함)를 지급할 수 있음

[참고] 업무집행사원의 일반적인 보수 체계

-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운영하는 업무집행사원은 유한책임사원과의 약정에 따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재산 운용에 따른 보수를 수취
 - 업무집행사원은 보수를 수취하여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리서치비용, 자문비용, 기업관리비용 등) 등을 충당
-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보수는 통상 관리보수(management fee) 및 성과보수(carried interest)로 구성
 - 관리보수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기간에 발생하는 고정보수로 통상 투자금액의 일정비율로 수취
 - 성과보수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실적에 연동하여 통상 운영성과가 기준 수익률을 초과할 경우 수취
- ◆ 보수 예시
 - ▷ 관리보수(management fee)
 - ① 출자가 약정된 금액의 일정비율로 산정 :
 - ☞ 예 : 출자약정액×연 1.5%에 해당하는 금액
 - ② 실제 투자가 이행된 금액의 일정비율로 산정 :
 - ☞ 예 : 투자금액×연 1.2%에 해당하는 금액
 - ③ 기간별로 구분하여 출자약정액 및 출자이행액(또는 투자금액)의 일정비율로 산정
 - ☞ 예 : 설립 후 2년간은 출자약정액×연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2년 이후에는 투자금액×1.65%에 해당하는 금액 지급
 - ④ 정액 지급
 - ☞ 예 : 연 5억원
 - ▷ 성과보수(carried interest)
 - ☞ 예 : 투자수익률이 내부기준수익률(IRR기준 8%)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수익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5 | 업무집행사원이 아닌 사원의 감시권

(법 §249의14 ⑨, ⑩)

■ 장부·서류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청구권

- 업무집행사원이 아닌 사원은 영업시간 내에만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출자한 투자목적회사의 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음

■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한 검사권

- 업무집행사원이 아닌 사원은 업무집행사원이 업무를 집행할 때, 현저하게 부적합하거나 업무수행에 중대한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출자한 투자목적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검사할 수 있음

6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합병 금지

(법 §249의17 ④)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다른 회사(다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와 합병할 수 없음

제5절 재산 평가 등

재산 평가 등 개요

재산평가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합투자기구 재산 평가방법 (법 §238①, 영 §260①) ▶ 기준가격 산정방법 (법 §238⑥, 영 §262①) ▶ 부실자산 평가방법 (규정 §7-35)
회계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계처리기준 (법 §240①, ②) ▶ 기업회계기준서 제5003호
이익금의 분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익금 분배 방법 (법 §242)

1 | 집합투자기구 재산 평가방법

(법 §249의20 ①, §238 ①, 영§260 ①)

- (원칙)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재산평가는 시가평가가 원칙
- (예외) 다만,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공정가액 평가 가능

2 | 기준가격 산정방법 (법 §249의20 ①, §238 ⑥, 영 §262 ①)

- 펀드재산 평가결과에 따라 시행령 제262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기준가격을 산정해야 함

재산 평가 순서

시가 평가 방법	원칙	▶ 증권시장 (해외 증권시장 포함)에서 거래된 최종 시가(해외 증권은 전날 최종시가) 또는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상품시장 (해외 파생상품시장 포함)에서 공표하는 가격(해외 파생상품은 전날 가격)
	예외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법 제249조의12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49조의7제5항에 따라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증권의 취득가격 2.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간 계속하여 매일 10일 이상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무증권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둘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3. 해외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무증권의 경우에는 둘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		[시가가 없는 경우]
공정 가액 평가 방법	원칙	<p>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재산에 속한 자산의 종류별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업무집행사원이 충실의무를 준수하고 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평가한 가격</p> <p><공정가액 평가시 고려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대상자산의 취득가격 • 투자대상자산의 거래가격 • 투자대상자산에 대하여 평가회사 등*이 제공한 가격 <p>* 채권평가회사·회계법인·신용평가회사·감정평가업자·인수업 영위 투자매매업자·이에 준하는 자 (외국인 포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율 •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부실 자산 평가	<p>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규정 §7-35②³⁷)에 대하여는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함</p> <p><부실자산 평가 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을 원리금회수 가능성을 감안하여 부실 우려단계, 발생단계, 개선단계, 악화단계 등 4단계로 분류하고 적정하게 평가하여야 함 (규정 §7-35 및 별표 18)

3 | 회계 처리 (법 §249의20 ①, §240 ①, ②)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재산에 관하여 회계처리를 하는 경우, 금융위가 증선위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야 함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회계처리와 공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5003호를 적절히 수정하여 적용

※ 한국회계기준원 홈페이지 (www.kasb.or.kr) → 회계기준 → 특수분야회계기준 → 제5003호 집합투자기구

4 | 이익금의 배분 (법 §249의20 ①, §242)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은 투자자에게 금전으로 분배하여야 함

- 다만,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익금의 분배를 기관전용 사모집합 투자기구에 유보할 수 있음

- 이익금을 초과하여 분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익금을 초과하여 금전으로 분배할 수 있음

- 이익금을 초과하여 금전으로 분배하려는 경우에는 정관에 그 뜻을 기재하고 이익금의 분배방법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정하여야 함

- 이익금의 분배방법 및 시기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37) 발행인 또는 거래상대방의 부도, 회생절차개시신청 또는 파산절차의 진행 등으로 인하여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회수가 곤란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자산

제6절 해산 및 청산

해산 및 청산 개요

해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산 보고 (법 §202①) ▶ 해산 등기 (법 §202②) ※ 해산 등기시 필요서류 (영 §232①)
청산인 선임 및 해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산인 선임 (법 §202⑤) ▶ 청산인 해임 등 (법 §202⑥~⑧)
청산인의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산목록 및 재무상태표 작성 (법 §203①) ▶ 채권자에 대한 최고 (법 §203③) ▶ 채권자에 대한 최고절차 생략 등 (법 §203④, 영 §233①, ②) ▶ 결산보고서 작성 (법 §203⑥) ▶ 재산목록 및 재무상태표 비치 (법 §203⑦)
청산인의 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원총회에 의한 청산인의 보수 지급 (법 §203⑥) ▶ 금융위가 선임한 청산인에 대한 보수 지급 (법 §203⑥)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해산 및 청산 절차 개요

※ 투자회사형 공모펀드의 해산·청산 제도를 그대로 준용

- ① (해산사유) 정관에서 정한 존속기간 만료, 해산결의, 피합병, 법원의 명령·판결, 등록취소, 투자자가 1인인 경우
 ※ 해산사유 발생일로부터 2주 이내 본점소재지에 해산등기(상법 §228)
- ② (청산인 선임) 존속기간 만료, 해산결의, 1인 투자자로 해산하는 경우 정관 및 총회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GP가 청산인이 됨
 ※ 법원 명령, 등록 취소 등의 경우 금융위(금감원)가 청산인을 직접 선임
- ③ (재산목록 작성 및 제출) 청산인은 취임 후 15일 이내 재산목록과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 그 등본을 지체없이 금융위(금감원)에 제출하여야 함
- ④ (해산보고) 청산인은 해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산사유, 연월일, 청산인 성명을 금융위(금감원)에 보고하여야 함
- ⑤ (채권자 최고절차) 청산인 취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2회 이상의 채권자 최고절차(신고 기간 : 1개월 이상)를 이행하여야 함
 ※ 자금차입 등이 제한되는 경우 채권자 최고절차 생략 가능
 (관련 내용 등을 일간 신문에 2회 이상 공고 후 금융위(금감원) 보고 필요)
- ⑥ (결산보고서 공고 및 보고) 청산인은 청산사무 종결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원총회 승인을 받은 후 공고하고, 이를 금융위(금감원)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함

단계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해산·청산 절차



* 일반적인 절차 소요시간, ** 금융감독원 위탁

1 | 해산 (법 §249의20 ①, §216, §202)

■ 청산인은 해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산의 사유 및 연월일, 청산인에 관한 사항을 금융위(금감원)에 보고하여야 함

■ 해산사유

- ① 정관에서 정한 존속기간의 만료, 그 밖의 해산사유의 발생
- ② 사원총회의 해산 결의
- ③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금의 파산
- ④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 ⑤ 금융위(금감원)의 해산 명령
- ⑥ 업무집행사원을 제외한 사원의 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의무해산이 면제되는 사유를 별도 규정)

◆ 의무 해산이 면제되는 사유 (영 §231의2)

1. 사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

- 가. 「국가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른 기금관리주체 (이에 준하는 자로서 시행령 제13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포함)
- 나.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라.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 마.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
- 바.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 사.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
- 아.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 자.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행령 제6조제6항에서 정하는 자*
 - 1) 공제조합
 - 2) 공제회

3)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법인 또는 단체로서 같은 직장·직종에 종사하거나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구성원의 상호부조, 복리증진 등을 목적으로 구성되어 공제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

※ 시행령 제6조제6항에서 정하는 자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제회 또는 공제조합
 - 가. 「경찰공제회법」에 따른 경찰공제회
 - 나.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과학기술인공제회
 - 다. 「교정공제회법」에 따른 교정공제회
 - 라. 「군인공제회법」에 따른 군인공제회
 - 마. 「대한소방공제회법」에 따른 대한소방공제회
 - 사.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 따른 대한지방행정공제회
 - 아. 「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 따른 한국교직원공제회
 - 자.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차.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2.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운용자산이 2조원 이상이거나 가입자가 10만명 이상인 공제회 또는 공제조합

1의2. 사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자금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용을 위하여 투자구조, 관리주체 등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설립된 투자회사에 투자하는 경우

* 규정 제7-11조의2제2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

- 가. 「사립학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
- 나.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 다. 「근로복지기본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 라. 시행령 제10조제3항제13호에 해당하는 자
- 마. 그 밖에 자금 운용의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규정§7-11의2③*)하는 자

* 증권금융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 한국예탁결제원, 전자등록기관, 한국거래소(영 §10②9호, ③5호~7호)

※ 규정 제7-11조의2제2항 각호의 요건

1. 금융투자업자 또는 법 제324조에 따른 증권금융회사가 영 제224조의2제1호의2 각 목에 해당하는 수익자(이하 이 항에서 "수익자"라 한다)의 효율적인 자금운용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금융위원회로부터 자금의 통합운용에 대한 별도의 승인을 받아 직접 또는 다른 집합투자업자를 선임하여 설정한 투자신탁일 것
2. 수익자로부터 모은 금전 등을 다른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용할 것

- 1의3. 사원이 제1호의2에 따른 투자회사인 경우
- 1의4. 사원이 시행령 제224조의2제1호의2에 따라 설정된 투자신탁인 경우
- 2. (삭제)
- 3.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최초 설립일부터 1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 4. 업무집행사원을 제외한 사원 총수가 1인이 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해산등기

- 업무집행사원이 청산인이 되는 때에는 해산일로부터 2주 이내, 청산인이 선임된 때에는 그 선임일로부터 2주 이내에 시행령 (§232①)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기하여야 함

■ 해산 등기사항

- ① 청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청산인이 업무집행사원인 경우에는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 ② 청산인 중에서 대표청산인을 정하도록 하거나 2인 이상의 청산인이 공동으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를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

■ 해산등기시 필요 첨부서류 (영 §232①)

- ① 업무집행사원 또는 정관에서 정한 자가 청산인이 된 경우 : 정관
- ② 사원총회에서 청산인을 선임한 경우 : 사원총회 의사록 사본과 취임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 ③ 금융위(금감원)가 청산인을 선임한 경우 : 그 선임을 증명하는 서면

2 | 청산인 선임 및 해임 (법 §249의20 ①, §216, §202)

- 사원간 불필요한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청산인 해임 및 사원총회 결의 요건 등은 정관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

(1) 청산인 선임

- (청산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다음의 사유로 해산시, 정관 또는 사원총회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 외에는 업무집행사원이 청산인이 됨
 - ☞ 현행 법령상 청산인 자격에 제한은 없음
 - ① 정관에서 정한 존속 기간의 만료, 그 밖의 해산사유 발생
 - ② 사원총회의 해산결의
 - ③ 업무집행사원을 제외한 사원의 수가 1인이 된 경우
- (금융위 선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다음의 사유로 해산시, 금융위 (금감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해 청산인 선임
 - ①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로 해산한 경우
 - ② 청산인이 없는 경우
 - ③ 「상법」 제193조제1항에 따라 설립무효의 판결 또는 설립취소의 판결이 확정되어 청산하는 경우
- (금융위 직권 선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해산명령에 따라 해산하는 경우, 금융위(금감원)가 직권으로 청산인 선임

(2) 청산인의 해임 등

- (금융위 직권 해임) 금융위(금감원)는 청산인이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현저하게 부적합하거나 중대한 법령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 금융위(금감원)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권으로 새로운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음
- (금융위의 등기촉탁의무) 금융위(금감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해당 등기를 촉탁하여야 함
 - ① 금융위(금감원)의 해산명령에 따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부가 해산한 경우
 - ② 금융위(금감원)가 직권으로 청산인을 해임한 경우

3 | 청산인 업무 (법 §249의20 ①, §216, §203)

- 청산인의 재산목록·재무상태표 작성 및 제출
 -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부의 재산상황을 조사하여 청산인으로 취임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산목록과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 금융위(금감원)에 제출하여야 함
- 채권자에 대한 최고(催告)
 - 청산인은 취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부의 채권자에 대하여 일정 기간 이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과 그 기간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된다는 뜻을 2회 이상 공고함으로써

최고하여야 함 (신고기간은 1개월 이상이어야 함)

- 다만, 청산인은 자금차입·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이 제한되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시행령 (영§233①)*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채권자에 대한 최고절차 생략 가능

* 1) 최고절차 생략의 뜻과 채무내용·채무이행방법 등 채무 관련 사항을 2회 이상 전국을 보급 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

2) 이를 금융위(금감원)에 지체 없이 보고

- 다만, 다음의 경우는 채권자에 대한 최고 절차 생략 불가
 - (i) 장내파생상품 또는 장외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계약이행책임이 있는 경우
 - (ii)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 (iii) 금전차입 등으로 인하여 잔존채무가 있는 경우

■ 결산보고서 작성

- 청산인은 청산사무가 종결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원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상법³⁸⁾과 동일하게 승인 간주 규정을 정관에 반영할 경우 결산보고서의 사원총회 승인 지연을 방지할 수 있음

- 이 경우 청산인은 그 결산보고서를 공고하고, 이를 금융위(금감원) 및 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함

■ 재산목록 및 재무상태표 비치

- 청산인은 재산목록과 재무상태표를 청산 종결시까지 기관전용 사모집합 투자기구에 비치하여야 함

38) 상법은 사원총회 승인을 원칙으로 하되, 사원이 1월내에 이의를 하지 않는 때에는 승인 간주 (상법 제263조)

4 | 청산인 보수 (법 §249의20 ①, §216, §203)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다음의 사유로 해산한 경우, 청산인은 정관 또는 사원총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음
 - ① 정관에서 정한 존속 기간의 만료, 그 밖의 해산사유 발생
 - ② 사원총회의 해산결의
 - ③ 업무집행사원을 제외한 사원의 수가 1인이 된 경우
- 금융위(금감원)의 청산인 직권 선임시, 청산인은 금융위(금감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보수 지급방법은 금감원장이 결정

◆ 금감원장의 청산인 보수 지급방법 결정시 고려사항 (규정 §7-13)

- ① 당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의 보수 수준
- ② 당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재산규모
- ③ 청산업무의 난이도
- ④ 선임된 청산인의 주요경력

제7절 감독 및 검사

감독 및 검사 개요

감독검사 권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위의 조치권한 (법 §249의14②) ▶ 금감원장의 검사 (법 §249의14③)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금융위의 해산명령 (법 §249의21①)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치 (법 §249의21②) ▶ 업무집행사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조치 (법 §249의21③) ▶ 관리·감독자에 대한 조치 (법 §249의21④, 법 §422③)
권리 구제장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문절차 (법 §423) ▶ 이의신청 절차 (법 §425) ▶ 처분 등의 기록 및 공시 등 (법 §424)

1 | 금융위원회 등의 감독·검사 권한

가. 금융위원회의 조치권한 (법 §249의14 ⑫)

- 금융위는 금융시장의 안정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에 대하여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나. 금융감독원장의 검사 (법 §249의14 ⑬)

-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시장의 안정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관하여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그 업무집행사원을 검사할 수 있음
 - ☞ 이 경우, 법 제419조제5항부터 제7항 및 제9항³⁹⁾ 준용

39) 자본시장법 제419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검사) ⑤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의 검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자에게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증인의 출석, 증언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⑦ 금융감독원장이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한 경우에는 그 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처리에 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⑨ 금융위원회는 검사의 방법·절차, 검사결과에 대한 조치기준, 그 밖의 검사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조치

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금융위의 해산명령⁴⁰⁾

(법 §249의21 ①)

- 금융위(금감위)는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해산을 명할 수 있음

◆ 해산명령 사유 (법 §249의21①, 영 §271의26)

- 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립보고, 변경보고 또는 업무집행사원의 특수관계인 유한책임사원 관련 정보 및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구조 등을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 ②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립보고, 변경보고 또는 업무집행사원의 특수관계인 유한책임사원 관련 정보 및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구조 등을 보고한 경우
- ③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법 제249조의10제3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 1)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자본시장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었을 것
 - 2)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정관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투자자의 이익을 명백히 침해하지 아니할 것
- ④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 ⑤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 ⑥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 ⑦ 「금융실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형법」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로서, 사회적 신용을 훼손하는 등 시행령 제373조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⑧ 금융위원회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⑨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으로부터 금전 등을 받거나 타인에게 줄 금전 등을 취득한 경우

40) 위반시 조치

- 법 제249조의21제1항에 따라 해산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법 §446 52호)

- ⑩ 업무정지의 조치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업무정지의 조치를 하면서 1개월을 초과하는 보정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해당 조건을 보정하지 아니하거나, 업무정지의 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 ⑪ 같거나 비슷한 위법행위를 계속하거나 반복하는 경우
- ⑫ 업무집행사원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치 (법 §249의21 ②)

- 금융위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해산명령 사유에 해당하거나, 자본시장법 <별표 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음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치사항

- ①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 ② 계약의 인계명령
- ③ 위법행위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
- ④ 위법행위로 인한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명령 또는 게시명령
- ⑤ 기관경고
- ⑥ 기관주의
- ⑦ 업무방법의 개선요구나 개선권고
- ⑧ 변상 요구
- ⑨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 ⑩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이나 수사기관에의 통보
- ⑪ 금융위가 법 및 영,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조치

다. 업무집행사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조치 (법 §249의21 ③)

- 금융위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이 해산명령 사유에 해당하거나, 자본시장법 <별표 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음

◆ 업무집행사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조치사항

(1) 그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조치

- ① 해임요구
- ②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 ③ 기관경고
- ④ 기관주의
- ⑤ 업무방법의 개선요구나 개선권고
- ⑥ 변상 요구
- ⑦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 ⑧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이나 수사기관에의 통보
- ⑨ 금융위가 법 및 영,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조치

(2) 그 업무집행사원의 임원에 대한 조치

- ① 해임요구
- ②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 ③ 문책경고
- ④ 주의적 경고
- ⑤ 주의
- ⑥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 ⑦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이나 수사기관에의 통보
- ⑧ 금융위가 법 및 영,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조치

(3) 그 업무집행사원의 직원에 대한 조치요구

- ① 면직
- ② 6개월 이내의 정직
- ③ 감봉
- ④ 견책
- ⑤ 주의
- ⑥ 경고
- ⑦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 ⑧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이나 수사기관에의 통보
- ⑨ 금융위가 법 및 영,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조치

라. 관리·감독자에 대한 조치 (법 §249의21 ④, §422 ③)

- 금융위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업무집행사원의 임직원에 대하여 조치를 하거나 이를 요구하는 경우 그 임직원에 대하여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한 조치를 함께 하거나 이를 요구할 수 있음
 - 다만,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자가 그 임직원의 관리·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에는 조치를 감면할 수 있음

3 | 청문·이의신청 등 (법 §249의21 ④, §423~425)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 사원에 대한 조치 등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업자의 청문·이의신청 등에 관한 조항 준용

◆ 권리구제장치

① 청문 (법 §423)

- 금융위원회는 업무집행사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해임요구 또는 면직요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함

② 이의신청 (법 §425)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업무집행사원 및 업무집행사원의 임직원에 대한 조치 등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 또는 조치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금융위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 금융위는 이의신청에 대하여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함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이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③ 처분 등의 기록 및 공시 등 (법 §424)

- 금융위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업무집행사원 및 업무집행사원의 임직원에 대하여 처분 또는 조치한 경우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함
- 금융위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하여 처분 또는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함

제8절 특례 규정

특례 규정 개요

지주회사 규제 특례	▶ 지주회사 규제 적용 배제 (법 §249의19①)
금융지주회사 규제 특례	▶ 금융지주회사 규제 적용 배제 (법 §249의19③) ▶ 업무집행사원의 금융지주회사 관련 일부 규제 적용 (법 §249의19④) ▶ 금융지주회사 자회사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지분 취득 특례 (법 §249의19⑤)
자본시장법상 특례	▶ 집합투자기구 등록 적용 배제 ▶ 투자합자회사 규정 적용 배제 ▶ 집합투자기구 종류 적용 배제 ▶ 집합투자증권 환매규정 적용 배제 ▶ 평가 및 회계 규정 최소 적용 ▶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규정 적용 배제 등
상법상 특례	▶ 무한책임사원 자격제한 적용 배제 ▶ 경업금지의무 적용 배제 ▶ 사원의 퇴사권 적용 배제 ▶ 지분압류채권자에 의한 퇴사청구권 적용 배제 ▶ 지배인의 선임·해임권 적용 배제 ▶ 합자회사의 조직 변경 적용 배제
공정거래법상 특례	▶ 금융전업그룹에 대한 의결권 행사 특례 ▶ 금융전업그룹에 대한 공시의무 특례

1 | 지주회사 규제 특례 (법 §249의19 ①)

- (지주회사 규제 적용 배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가 자본시장법 제249조의7제5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 보유

** 임원의 임면 등 투자하는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력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투자로서 시행령 제271조의10제17항에서 정하는 투자

- 그 요건을 충족한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에 관한 규정 적용 배제

[참 고] 지주회사 관련 주요 규제

- ◆ 공정거래법 : 제2조(정의), 제17조(설립·전환 신고), 제18조(행위제한), 제19조(상호 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 제한), 제36조(탈법행위의 금지), 제37조(시정조치 등), 제38조(과징금)
- ◆ 공정거래법 시행령 : 제3조(지주회사 기준), 제26조(지주회사의 설립·전환 신고), 제27조(벤처지주회사의 기준), 제28조(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제37조(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
- ◆ 고시 및 지침
 -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 등의 사업내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
 - 지주회사 관련 규정에 관한 해석지침

1.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자회사 및 증손회사의 개념

가. 지주회사 (공정거래법 §2 7호)

- 다른 회사의 주식이나 지분의 소유를 통할 것
 - 지주회사는 다른 회사의 주식이나 지분을 소유하여야 함
-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할 것

-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 자산총액 산정 기준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이 1,000억원 이상 (공정거래법 시행령 §3①)
 - * 1) 해당 사업연도 설립, 합병 또는 분할·분할합병·물적분할을 한 회사의 경우, 각 설립 등기일·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 2) 1) 이외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사업연도 종료일 전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지주회사 전환신고를 한 경우, 해당 전환신고 사유 발생일)
- 다른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할 것
 - “주된 사업의 기준”은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의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당해 회사 자산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 (공정거래법 시행령 §3②)
 - * 자산총액 산정 기준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에 표시된 가액의 합계액

나. 자회사 (공정거래법 §2 8호)

- 지주회사에 의하여 아래의 기준에 따라 그 사업내용을 지배받는 국내회사
 - 지주회사의 계열회사일 것
 - 지주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이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14조(특수관계인의 범위)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자 중 최대출자자가 소유하는 주식수와 같거나 그 보다 많을 것

다. 손자회사 (공정거래법 §2 9호)

- 자회사에 의하여 아래의 기준에 따라 사업내용을 지배받는 국내회사
 - 자회사의 계열회사일 것
 - 자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이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14조(특수관계인의 범위)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자 중 최대출자자가 소유하는 주식수와 같거나 그 보다 많을 것

2. 지주회사 및 그 소속회사의 행위제한 (공정거래법 §18의2②~⑥)

지주회사 대상별 규정 요약

규제대상	규제 내용	관련 조항
지주	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유지	제2항제1호
	비계열사의 주식 5% 초과 보유 금지 (비계열 주식가액 합계액이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의 15% 미만인 경우 미적용)	제2항제3호
	금융·보험회사 주식소유 금지	제2항제5호
공통 규제 (지주·자·손자)	자기가 지배하는 회사외 계열회사 주식소유 금지 (수직적 출자구조 유지의무)	제2항제3호 제3항제2호 제4항

규제대상	규제 내용	관련 조항
	지분율 규제(상장 등 30%, 비상장 50% 이상)	제2항제2호 제3항제1호
	지주회사 체제내 금융·보험회사 지배 금지	제2항제5호 제3항제3호 제4항제4호
손자	국내 계열사 주식소유 금지	제4항

가. 지주회사에 대한 행위제한 의무

- 지주회사 부채비율을 200% 이내로 제한
- 비계열사 주식을 당해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행위 금지
 - 다만, 비계열사 주식이액 합계액이 자회사 주식이액 합계액의 15% 미만인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적용 제외
- 자회사 지분을 발행주식총수의 50%(상장·공동출자법인의 자회사는 30%,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는 20%) 미만으로 소유하는 행위 금지
- 자회사 이외의 다른 국내 계열회사 주식소유 금지
- 지주회사의 금융·보험업 영위 회사 주식소유 금지 및 금융지주회사의 비금융·보험업 영위 회사 주식소유 금지

나. 자회사에 대한 행위제한 의무

- 손자회사 지분을 50% (상장·공동출자법인인 손자회사는 30%, 벤처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20%) 미만으로 소유하는 행위 금지
- 손자회사 이외의 다른 국내 계열회사 주식소유 금지
-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손자회사로 지배하는 행위 금지

다. 손자회사에 대한 행위제한 의무

- 국내 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금지*
 - * 다만, 공정거래법 §18④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 적용

2 | 금융지주회사 규제 특례

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금융지주회사 규제 적용 배제

(법 §249의19 ③, 영 §271의24 ②)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투자목적회사에 대하여 자본시장법 제249조의7제5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무한책임사원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회사 또는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자 포함

○ 그 요건을 충족한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로 보지 아니함

○ 다만,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가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1호41)에 따른 1개 이상의 금융기관을 지배하는 경우, 「금융지주회사법」 제45조,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 및 제48조*를 준용

* 제45조 : 신용공여한도

제45조의2 :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제45조의3 : 주요출자자가 발행한 주식의 취득한도 등

제45조의4 : 주요출자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제48조 : 자회사등의 행위제한

41)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금융지주회사"라 함은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소유를 통하여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 또는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지배(이하 "지배"라 한다)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1 이상의 금융기관을 지배할 것

나.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기준일 현재의 재무상태표에 표시된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일 것

다. 제3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을 것

- 다만, 「금융지주회사법」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의 규정은 기관 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나 투자목적회사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아닌 금융기관만을 지배하는 경우에는 준용하지 아니함
 -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무한책임사원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회사 또는 금융 지주회사가 아닌 자 포함

[참고] 금융지주회사 관련 주요 (규제)

◆ 금융지주회사법 : 제45조(신용공여한도), 제45조의2(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제45조의3(주요출자자가 발행한 주식의 취득한도 등), 제45조의4(주요출자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제48조(자회사등의 행위제한)

1. 금융지주회사등의 신용공여한도 제한 등

-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금융지주회사등의 당해 금융지주회사의 동일 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는 자기자본 순합계액의 25% (금융지주회사법 §45①)
- (동일한 개인이나 법인 각각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금융지주회사등의 동일한 개인이나 법인 각각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는 자기자본 순합계액의 20% (금융지주회사법 §45②)
- (주요출자자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은행지주회사등의 당해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에 대한 개별 신용공여한도는 자기자본 순합계액 × min (25%, 주요출자자의 출자비율) (금융지주회사법 §45의2①)
 - 은행지주회사등의 당해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들 전체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는 자기자본 순합계액의 25% (금융지주회사법 §45의2②)
- (교차신용공여 금지) 은행지주회사등은 신용공여한도 규제 회피를 목적으로 다른 은행지주회사등 또는 은행과의 교차 신용공여가 금지됨 (금융지주회사법 §45의2③)
- (단일 거래금액 이상의 신용공여) 은행지주회사등의 당해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에 대하여 단일거래금액이 min(자기자본 순합계액의 0.1%, 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신용공여를 할 경우 미리 재적이사 전원이 찬성한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고(법 §45의2④), 그 사실을 금융위에 보고 및 공시하여야 함 (금융지주회사법 §45의2⑤)

2. 은행지주회사등의 주요출자자 발행 주식의 취득한도 (금융지주회사법 §45의3)
 - 은행지주회사등은 자기자본 순합계액의 1% 한도내에서만 그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가 발행한 주식(출자 지분 포함) 취득(신탁업무로 취득하는 것을 포함) 가능
3. 주요출자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금지 (금융지주회사법 §45의4)
 - 주요출자자는 당해 은행지주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자신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금융지주회사법 제45조의4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 금지됨
4. 자회사 등의 행위제한
 - 자회사등의 다른 자회사등 주식소유 금지 (금융지주회사법 §48①)
 - 자회사등은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소유가 금지됨 (금융지주회사법 §48⑤)

나. 업무집행사원의 금융지주회사 관련 일부 규제 적용

(법 §249의19 ④)

- 회사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인 경우에는 「금융지주회사법」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의 규정을 적용함
 - 이 경우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는 “업무집행사원” 또는 “업무집행사원의 대주주”로 봄

다. 금융지주회사 자회사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지분 취득 특례

(법 §249의19 ⑤)

-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는 같은 법 제19조42)에도 불구하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음

42) 금융지주회사법 제19조(손자회사 및 증손회사) ①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는 다음 각호의 회사를 제외한 다른 회사를 지배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자회사가 될 당시에 지배하고 있던 회사의 경우에는 당해 자회사가 된 날부터 2년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해 자회사의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금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2.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회사

3 | 자본시장법상 특례 (법 §249의20 ①)

가. 개요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기구의 한 종류이나, 경영권 참여 등의 투자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일반 집합투자기구에 비해 대폭 완화된 규제가 적용

나. 세부사항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적용 배제 조항

- 제182조, 제183조제1항, 제184조제1항·제2항·제5항·제6항, 제186조, 제213조부터 제215조까지, 제216조(같은 조 제3항 중 투자합자회사의 해산·청산에 관하여 준용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제217조, 제229조부터 제237조까지, 제23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7항·제8항, 제239조, 제240조제3항부터 제10항까지, 제241조, 제247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항 제6호·제7호, 같은 조 제6항·제7항, 제248조, 제249조, 제249조의2부터 제249조의6까지, 제249조의8, 제249조의9, 제250조, 제251조 및 제253조

■ 집합투자기구 등록규제 적용 배제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설립요건을 별도로 정하고 있으므로, 일반 집합투자기구 등록 규제 적용 배제

■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 선임의무 적용 배제

- 운용자 자격을 집합투자업자로 제한하고 판매회사의 선임을 의무화하는 것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영상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이를 적용하지 않음

- 다만,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자산을 보관하기 위한 신탁업자의 선임의무 규정은 적용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자산보관 업무 위탁 관련

(법 §184③④ 및 §246, §247⑤4호 ~ 5호)

- (신탁업자 위탁 의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재산의 신탁업자 보관·관리업무 위탁 의무화
- (신탁업자 위탁의무 관련 규제) 업무집행사원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재산 보관·관리가 금지되고, 신탁업자의 업무제한 및 운용행위 감시의무 등이 적용됨

■ 투자합자회사 규정 적용 배제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합자회사 형태로 규정하고 있으나 규제 목적에 차이가 있어 해산·청산 규정을 제외한 나머지 규정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는 적용 배제

■ 집합투자기구 종류 및 집합투자증권 환매 규정 적용 배제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영 특성상 집합투자기구 종류나 집합투자증권 환매 규정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는 적용 배제

■ 평가 및 회계 규정 등 최소 적용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재산 평가방법 및 회계기준 등에 대한 최소한의 규정만을 적용

[참 고] 자본시장법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관련 조항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제5편 집합투자기구	
제1장 총칙	
제181조(관련 법률의 적용)	적용
제182조(집합투자기구의 등록)	적용 배제
제183조(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적용 배제 (2항 적용)
제184조(집합투자기구의 업무수행 등)	적용 배제 (3항, 4항, 7항 적용)
제185조(연대책임)	적용
제186조(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	적용 배제
제187조(자료의 기록·유지)	적용
제2장 집합투자기구의 구성 등	
제3관 투자합자회사	
제213조(투자합자회사의 설립 등)	적용 배제
제214조(업무집행사원)	적용 배제
제215조(사원총회)	적용 배제
제216조(준용규정)	적용 배제 (해산·청산규정 적용)
제217조(「상법」과의 관계)	적용 배제
제3장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등	
제229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적용 배제
제230조(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	적용 배제
제231조(종류형집합투자기구)	적용 배제
제232조(전환형집합투자기구)	적용 배제
제233조(모자형집합투자기구)	적용 배제
제234조(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적용 배제
제4장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제235조(환매청구 및 방법 등)	적용 배제
제236조(환매가격 및 수수료)	적용 배제

관련 조항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제237조(환매의 연기)	적용 배제
제5장 평가 및 회계	
제238조(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기준가격의 산정 등)	적용 배제 (1항, 6항 적용)
제239조(결산서류의 작성 등)	적용 배제
제240조(집합투자재산의 회계처리 등)	적용 배제 (1항, 2항 적용)
제241조(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적용 배제
제242조(이익금의 분배)	적용
제6장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및 관리	
제244조(선관주의의무)	적용
제245조(적용배제)	적용
제246조(신탁업자의 업무제한 등)	적용
제247조(운용행위감시 등)	적용 배제 (5항 4호 및 5호 적용)
제248조(자산보관·관리보고서의 교부)	적용 배제
제7장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제249조(미등록영업행위의 금지)	적용 배제
제249조의2부터 제249조의6, 제249조의8부터 제249조의9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적용 배제
제249조의7(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방법 등)	적용 (3항, 6항 제외)
제250조(은행에 대한 특칙)	적용 배제
제251조(보험회사에 대한 특칙)	적용 배제
제8장 감독·검사	
제252조(투자회사등에 대한 감독·검사)	적용
제253조(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등)	적용 배제

4 | 상법상 특례 (법 §249의20 ②)

◆ 「상법」 제173조, 제198조, 제217조제2항, 제224조, 제274조 및 제286조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적용하지 아니함

■ 무한책임사원 자격제한 적용 배제

- 회사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되지 못하도록 규정(상법 §173)하고 있으나,
- 전문 운용자에 의한 업무집행을 위하여 회사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무한책임사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외 인정

■ 경업금지의무 적용 배제

- 무한책임사원은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상법 §198)하고 있으나,
- 업무집행사원이 2개 이상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

■ 사원의 퇴사권 적용 배제

- 사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도록 규정(상법 §217 ②)하고 있으나,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이 다른 사원의 동의 없이 임의로 퇴사할 경우,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재산 운용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다른 사원의 보호가 어려우므로 임의 퇴사를 인정하지 않음

- 지분압류채권자에 의한 퇴사청구권 적용 배제
 - 사원의 지분을 압류한 채권자는 영업년도말에 그 사원을 퇴사시킬 수 있도록 규정(상법 §224)하고 있으나,
 - 사원이 아닌 외부인에 의하여 사원이 변경될 경우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안정성이 저해되므로 이에 대한 예외를 둠
- 지배인의 선임·해임권 적용 배제
 - 지배인의 선임과 해임은 업무집행사원이 있는 경우에도 무한책임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도록 규정(상법 §274)하고 있으나,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는 동 조항의 적용 배제
- 합자회사의 조직변경 적용 배제
 - 합자회사는 사원전원의 동의 등이 있는 경우 그 조직을 합명회사로 변경하여 계속할 수 있도록 규정(상법 §286)하고 있으나,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합자회사만 인정되므로 합명회사로의 조직변경은 인정되지 않음

5 | 공정거래법상 특례 (법 §249의20 ③, ④)

- 금융전업그룹에 대한 의결권 행사 특례 (법 §249의20 ③)
 -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나(공정거래법 §25①),

- 금융전업그룹*에 속하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 회사가 소유하는 투자목적회사 또는 투자대상기업의 지분증권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함**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사 전체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을 제외한 금융·보험회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75%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법 §249의18②)

** 다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의 공정거래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에 한정)이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은 제외

■ 금융전업그룹에 대한 공시의무 특례 (법 §249의20 ④)

-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는 그 기업집단의 일반현황, 주식 소유현황, 순환출자 현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현황 등에 관하여 공시하여야 하고 (공정거래법 §28)

*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자산총액이 100억원 미만인 회사로서 청산 중이거나 1년 이상 휴업 중인 회사는 제외함

-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 상장법인이 아닌 회사*는 회사의 중요사항을 공시하여야 하나 (공정거래법 §27),

* 다만,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제외

- 금융전업그룹에 속하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유한책임사원(LP)의 현황과 관련된 것으로서 일부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함

* 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LP (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와 같은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LP로 한정)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구에 대한 출자지분 현황

② ①의 보유 출자지분비율이 해당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출자총액의 1% 이상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변동사항

③ ①의 LP 명칭, 사업내용, 재무현황,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일반현황

④ 그 밖에 LP 현황과 관련된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업무집행사원 (GP)

제1절 업무집행사원의 개요

제2절 업무집행사원 등록 제도

제 3 장 업무집행사원 (GP)

제 1 절 업무집행사원의 개요

1 | 선임 (법 §249의14 ①)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정관으로 무한책임사원 중 1인 이상을 업무집행사원으로 정하여야 함
 - ☞ 업무집행사원은 2인 이상 둘 수 있음
 - 업무집행사원은 정관 기재사항이며, 업무집행사원 변경은 정관 변경절차 필요
 - 업무집행사원은 무한책임사원임
 - ☞ 무한책임사원의 대부분은 업무집행사원이나, 예외적으로 업무집행사원이 아닌 무한책임사원이 있는 경우도 있음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으로서 업무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금감원)에 등록하여야 함

2 | 권리와 의무 (법 §249의14 ①, ⑤, §249의11 ⑤)

- 업무집행사원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
 - (업무집행사원의 충실의무)
 - 업무집행사원은 법령과 정관에 따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함
 - (업무집행사원의 출자의무)
 - 무한책임사원인 업무집행사원도 금전으로 출자하여야 함
 - 무한책임사원에 대한 출자방법을 제한하지 않는 상법*과 달리 자본시장법은 유한·무한책임사원의 출자방법**을 동일하게 규제
 - * 상법은 유한책임사원의 경우 신용·노무 출자를 제한 (상법 제272조)
 - ** 금전 출자를 원칙으로 하되, 객관적인 가치 평가가 가능하고, 사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른 모든 사원의 동의를 있는 경우 증권 출자 가능

3 | 상법상 경업금지의무 적용 배제 (법 §249의20 ②)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상법상 경업금지의무⁴³⁾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은 다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이 될 수 있음

43) 상법 제198조 (사원의 경업의 금지) ①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를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하지 못하며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이사가 되지 못한다.

4 |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금융투자업 인가 특례

(법 §249의14 ④)

- 업무집행사원이 해당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지분의 판매 및 환매 등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투자매매·중개업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됨
 - ☞ '15.10월 사모펀드 제도 개편 이전에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GP가 해당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재산을 보관·관리할 수 있었으나, 제도개편 이후 설립하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 GP 본인 및 계열회사가 아닌 신탁업자에게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재산·보관 관리업무를 위탁하여야 함

5 | 금융회사에 대한 특례 (법 §249의14 ②)

- 금융회사는 해당 법령⁴⁴⁾에도 불구하고 업무집행사원이 될 수 있음

44)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71조의20(업무집행사원 등) ① 법 제249조의14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이란 법, 이 영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법령을 말한다.

1. 「은행법」
2. 「한국산업은행법」
3. 「중소기업은행법」
4. 「한국수출입은행법」
5. 「보험업법」
6. 「상호저축은행법」
7. 「여신전문금융업법」
8. 「신용보증기금법」
9. 「기술보증기금법」
10. 「신용협동조합법」
11. 「새마을금고법」
1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3.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14. 「한국주택금융공사법」
15. 「부동산투자회사법」
16. 「선박투자회사법」
17. 「산업발전법」
18.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이 경우 그 법령에서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업무를 집행할 수 있으며, 시행령 제271조의20 제2항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해야 함

* '21.10월 사모펀드 제도개편 이전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 운용규제 방식

☞ 금융회사가 경영참여 목적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이 되고자 하는 경우 금산법 제24조에 의한 출자승인 등을 받아야 함

◆ 금융지주회사가 업무집행사원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의 경영관리에 관한 업무 및 그에 부수하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를 영위할 수 없음
(금융지주회사법 §15, 동법 시행령 §11)
- 또한, 시행령 (§271의20①)상 업무집행사원이 될 수 있는 법령에 「금융지주회사법」은 규정되어 있지 않음

[참고] 금산법 제24조에 의한 출자승인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제24조(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 ① 금융기관(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및 그 금융기관과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기관(이하 “동일계열 금융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그 금융기관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인가·승인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2.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고 동일계열 금융기관이나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속하는 기업집단이 그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고 동일계열 금융기관이나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속하는 기업집단이 그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소유하고 동일계열 금융기관이나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속하는 기업집단이 그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다른 회사’의 의미 (‘02.11월, 금융위 유권해석)

- 금산법 제24조는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지분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에 금산법상 승인을 요구하는데, 사모투자합자회사 (現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금, 이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금”) 등이 다른 회사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불분명
- “다른 회사”는 상법 제169조 및 제171조에 의하여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모른 형태의 사단법인을 의미

⇒ 합자회사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금은 금산법상 승인을 받아야 하나, 조합은 사전 승인을 받을 필요 없음

◆ 금융기관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금 출자시 출자승인 대상 여부

(‘10.9월, 금융위 유권해석)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금의 업무집행사원은 보유지분과 관계없이 다른 회사의 경영권 참여 결정 등에 있어 유일하게 의사 결정을 행사, 보유지분이 5% 미만이라 하더라도 금산법 제24조의 취지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금 업무집행사원은 항상 승인을 받도록 할 필요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금의 유한책임사원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금의 다른 회사 보유지분 의결권 행사 등 주요 의사결정에의 참여가 제한되므로 금산법상 승인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

⇒ 금융회사가 경영참여 목적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금 업무집행사원으로 참가할 경우 보유지분과 관계없이 금산법상 승인 대상인 반면, 유한책임사원으로 투자할 경우 금산법상 승인 대상 아님

◆ 「금융지주회사법」상 자회사 등의 편입

- 금융기관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인가·승인 등을 받은 경우에는 금산법 제24조의 승인을 요하지 아니함
- 「금융지주회사법」상 자회사등의 편입승인 (금융지주회사법 §16④) 또는 자회사등의 편입신고 (금융지주회사법 §18⑤)에 따라 자회사등을 편입하는 경우에는 금산법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제2절 업무집행사원 등록 제도

1 | 제도 연혁 및 도입배경

- '04.12월, 사모투자전문회사 제도 도입 초기 사모투자전문회사 운용자인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별도 인가·등록 의무 등은 없었음
- '13.8월, 업무집행사원 등록 제도 도입
 -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모투자전문회사 운용자인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등록 의무는 부과하되, 등록요건*은 정책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진입 규제로 설정
 - * ① 1억원 이상의 자기자본, ② 적격 임원, ③ 1인 이상의 운용인력, ④ 적절한 내부통제기준 등
 - (경과조치) 자본시장법 시행('13.8.28.) 당시 등록된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운용 업무에 한해 별도 등록 없이 가능하며, 이후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신규 설립·운용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위에 등록하여야 함⁴⁵⁾
- '15.10월, 사모펀드 제도 개편 시행
 - 사모펀드 규제 방향을 펀드에서 운용자 중심으로 전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자산운용규제 합리화 방안에 맞추어 업무집행사원의 진입 관련 등록요건을 강화
 - ① (운용인력)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 가능한 자산 및 그 범위가 확대되는 점을 감안, 운용인력 요건을 강화

45) 자본시장법 <법률 제11845호, 2013.5.28> 부칙 제12조(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등록된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은 제27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그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운용업무에 한정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것으로 본다.

- ② (재무상태·신용요건) 건전한 재무상태 및 일정 수준 이상의 사회적 신용요건을 갖춘 회사에 한해 신규 진입 허용

개정 전·후 업무집행사원 등록요건 비교

	개정 전	개정 후
자기자본	• 1억원 이상	좌 동
임원	• 법 제24조*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할 것	좌 동*
운용인력	• 1인 이상	• 2인 이상
이해상충 방지체계	• 법 제44조에 따라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 평가, 관리할 수 있는 적절한 내부통제기준을 갖출 것	좌 동
건전한 재무상태	-	•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사회적 신용요건	-	• 최근 3년간 금융관련법령 등을 위반하여 5억원의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등

* '16.8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로 변경

- (경과조치) 자본시장법 시행(15.10.25.) 당시 기등록 업무집행사원은 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업무에 한정하여 법 제249조의15 개정 규정에 따라 등록한 업무집행사원으로 간주
- 이에 기존에 등록한 업무집행사원도 법 시행 이후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최초 설립·운용하고자 하는 경우 다시 업무집행사원으로 등록하여야 함⁴⁶⁾

46) 자본시장법 <법률 제13448호, 2015.7.24> 부칙 제13조(업무집행사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72조의2에 따라 등록한 업무집행사원은 그 사모투자전문회사재산의 운용업무에 한정하여 제249조의15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한 업무집행사원으로 본다.

■ '21.10월,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체계 개편 시행

- 사모펀드 분류를 운용 목적에서 투자자 기준으로 변경하고, 운용규제는 일원화·완화함에 따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감독권 제고 목적으로 등록요건 일부 강화
- (인력요건) 운용인력에 대한 자격요건(투자운용전문인력)* 신설
 * 증권, 부동산 또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전문인력 (규정 별표2의3)

개정 전·후 업무집행사원 등록요건 비교

	개정 전	현행
자기자본	• 1억원 이상	좌 동
임 원	• 지배구조법 제5조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할 것	좌 동
운용인력	• 2인 이상 (자격요건 없음)	• 투자운용전문인력 2인 이상
이해상충 방지체계	• 법 제44조에 따라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 평가, 관리할 수 있는 적절한 내부통제 기준을 갖출 것	좌 동
건전한 재무상태	•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좌 동
사회적 신용요건	• 최근 3년간 금융관련법령 등을 위반하여 5억원의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등	좌 동

- (경과조치) 자본시장법 시행 ('21.10.21.) 당시 기등록 업무집행사원에 대해서는 시행일 이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종전 규정을 따르며⁴⁷⁾,

47) 자본시장법 <법률 제18128호, 2021.4.20.> 부칙 제9조(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경과조치) ② 이 법 시행 당시 등록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는 제249조의15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시행일 이후 업무집행사원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 이후 6개월이 경과한 날까지 신설된 규정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간주⁴⁸⁾

[참 고] 사모펀드 운용사 등록요건 비교

사모 펀드	일반사모 집합투자업자		업무집행사원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금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금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금
자기자본	10억원 이상		1억원 이상
운용 인력	인원	투자운용전문인력 3인 이상	투자운용전문인력 2인 이상
	자격	규정 [별표2]	규정 [별표2의3]
물적 설비	- 전산설비·통신수단, 업무공간·사무장비, 보안설비 등 구비		×
임원 자격	- 지배구조법 제5조에 적합할 것		좌 동
대주주 자격	- 사회적 신용(금융관련법령 위반여부 등) 구비 - 차입을 통한 출자 금지 등		×
재무상태· 사회적 신용	- 경영 건전성기준 등 건전한 재무상태 - 법령 위반사실이 없는 등 건전한 사회적 신용		좌 동*
이해상충 방지 등	- 법 제44조에 따라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 평가, 관리할 수 있는 적절한 내부 통제기준		좌 동
	- 정보교류 차단체계 구축		×

* 일부 세부요건은 차이가 있음

48) 금융투자업규정 부칙(제2021-42호, 2021.10.20.) 제3조(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금 투자운용전문인력에 대한 경과조치) ③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금의 업무집행사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이 규정 시행 후 6개월이 경과한 날까지는 별표 2의3 비교 제3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금 운용전문인력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2 | 업무집행사원 등록 관련 주요 내용 및 실무절차

가. 등록신청 준비 [신청회사]

(법 §249의15①, 영 §271의21 ① ~ ⑤, 지배구조법 §5)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 자본시장법령에서 정하는 등록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고 등록신청서 (규정 <별지 제3호의3>) 및 첨부서류 등을 준비

업무집행사원 등록 요건

등록요건	세부사항	근거법규
자기자본	○ 1억원 이상*일 것 * 자기자본 산정 기준일은 등록신청일	법 §249의15①1호 영 §271의21①
임원	○ 지배구조법 제5조에 적합할 것	법 §249의15①2호 영 §271의21②
운용인력	○ 투자운용전문인력 2인 이상일 것	법 §249의15①3호 영 §271의21③,④
이해상충 방지체계	○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을 파악·평가·관리할 수 있는 적절한 내부통제기준을 갖출 것	법 §249의15①4호
건전한 재무상태	○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금융기관인 경우만 해당)	법 §249의15①5호 영 §271의21⑤1호 규정 §7-41의15②
사회적 신용	○ 다음 각 목의 모든 요건에 적합할 것 (다만, 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 가. 최근 3년간 금융관련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하여 5억원의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다만,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 제외)	법 §249의15①5호 영 §271의21⑤2호

등록요건	세부사항	근거법규
	나. 최근 3년간 금산법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거나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이 취소된 자가 아닐 것	

나. 등록신청서 제출 [신청회사 → 금감원] (법 §249의15②)

- 등록요건을 갖추고 서류작업이 완료되면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신청공문과 함께 금감원에 직접 제출

☞ 작성방법 <3. 업무집행사원 등록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구비 요령> 참고

다. 등록심사 [금감원] (법 §249의15③)

- 금감원은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1개월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
 - 등록신청서, 첨부서류 및 관계기관 사실조회 등을 통해 등록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신청서에 흠결이 있을 경우, 보완 요구
 - 검토기간(1개월) 산정시 흠결 보완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제외

◆ 등록검토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 (자본시장법 시행규칙 §24의3)

1. 자본시장법 §249의15①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른 기관 등으로 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는 데에 걸리는 기간
2. 자본시장법 §249의15③ 후단에 따른 등록신청서 흠결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 기간
3. 업무집행사원으로 등록하려는 자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의 내용이 등록검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송의 절차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

라. 등록여부 통지 [금감원 → 신청회사] (법 §249의15 ③~⑤)

- 금감원은 등록 여부 결정 이후,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 등록여부 결정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면 그 등록을 거부 하여서는 아니 됨
 - ① 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 ② 등록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③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마. 등록요건의 유지 (법 §249의15 ⑥)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은 등록 이후 그 기관전용 사모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업무를 영위하는 경우 등록요건을 유지하여야 함
 - ☞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은 등록 취소 사유 (법 §249의15 ⑦2호)

바. 등록취소 (법 §249의15 ⑦, 영 §271의21 ⑥, ⑧)

- (직권취소) 금융위(금감원)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집행사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음
 - ①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업무집행사원의 등록을 한 경우
 - ② 등록요건의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 ③ 업무의 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 ④ 금융위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⑤ 직무정지(법 §249의21③1호나목)의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조건을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 * 직무정지의 조치를 하면서 1개월을 초과하는 보정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 ⑥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으로부터 금전등을 받거나 타인에게 줄 금전등을 취득한 경우
 - ⑦ 같거나 비슷한 위법행위를 계속하거나 반복하는 경우
- (자진취소) 업무집행사원은 운용 중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없는 경우 그 등록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음*
- * '업무집행사원 등록취소 신청서' 양식 : 시행세칙 별책서식 1 제46의4호

사. 등록사항 변경 보고 (법 §249의15 ⑧, 영 §271의21 ⑨, ⑩)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업무집행사원이 자본시장법(§249의15①)에 따라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 그 날로부터 2주 내에 금융위(금감원)에 변경된 사항(다만,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제외)을 보고하여야 함
 - * 투자운용전문인력의 소속, 직위 및 담당업무 변경사항(영 §271의21⑨)
 - 변경사항 보고서, 자본시장법 (§249의10⑥)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변경보고 사항 중 업무집행사원에 관한 것으로 시행령 (§271의21⑩)에서 정하는 사항은 금융위(금감원)에 변경보고한 것으로 봄

아. 업무집행사원의 재무제표 제출 (법 §249의15 ⑨, 영 §271의21 ⑩, ⑪)

■ 업무집행사원(지배구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제외)은 각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매 사업연도 경과 후 45일 내에 금융위(금감원)에 제출해야 함

- 재무제표 제출시, 자본시장법 (§249의10⑥)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 투자기구 변경보고 사항 중 업무집행사원에 관한 것으로 시행령 (§271의 21⑪)에서 정하는 사항은 금융위(금감원)에 변경보고한 것으로 봄

◆ 업무집행사원 변경보고시 또는 재무제표 제출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변경 보고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는 사항 (영 §271의21⑪)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설정·설립 보고서 사항 중 다음 사항
 - (i) 업무집행사원에 관한 사항
 - (ii) 다음 사항 중 업무집행사원에 관한 사항
 - 출자에 관한 사항
 - 업무집행사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
 - 전략적 투자자(영 §271의19②2호)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설립한 투자 목적회사의 주주 또는 사원인 경우 그 주주 또는 사원에 관한 사항
 - 경영권 참여방법(법§249의7⑤ 각 호)으로 집합투자자산을 운용하는 경우 그 사실
 - (iii) 업무집행사원의 최근 사업연도말 재무제표

3 | 업무집행사원 등록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구비 요령

(법 §249의15, 영 §271의21, 규정 §7-41의15)

가. 등록신청서·변경보고서 양식(규정 별지 제3의3호)

1. 상호 및 본점의 명칭·소재지

사원명 (상호·본점의 명칭)	본점 소재지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연락처	출자의 목적	출자가액

기재상의 주의

- 출자의 목적은 현금·수표 또는 증권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 첨부서류

- 1-1. 정관(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1부
- 1-2. 법인등기부등본(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 1부
- 1-3. 발기인총회, 창립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 등 설립 또는 등록신청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대표자 및 임원

임원수 : 명(상근: 명, 비상근: 명)

직위	성명	주민 등록 번호	소유주식수 (비율)	주요 경력	등기· 상근 여부	담당 업무	운용인력 여부	임원자격 적합여부	비고

기재상의 주의

1. 임원자격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자격을 말한다.
2. 등기 임원 및 집행 임원 모두 기재한다.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유한회사의 이사, 합병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등을 포함한다.
3. 등기·상근여부에는 등기 여부 및 상근 여부를 기재한다.
4. 다른 지위(타회사 포함)를 겸직하고 있는 경우 비고란에 기재한다.

■ 첨부서류

- 2-1. 대표자 및 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신원조회 관련서류 포함) 각 1부
- 2-2. 임원자격에 적합함에 관한 확인서 및 증빙서류 각 1부
※ 금융회사인 경우 등기 임원에 관한 사항만 제출한다.

3. 목적사업, 회사의 연혁 및 설립이후 주요변동사항에 관한 사항

4. 대주주 내역에 관한 사항

성명 (상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소유 주식수	지분율 (%)	회사와의 관계

기재상의 주의

1. 회사와의 관계는 최대주주, 주요주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 여부를 기재한다.

■ 첨부서류

4-1. 대주주의 성명·주민등록번호(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또는 명칭·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및 소유주식수 등 대주주의 내역 증빙서류 각 1부

5. 재무에 관한 사항

가. 자본금 내역

(단위 : 백만원)

일 자	원 인	증가(감소)한 자본금의 내용				증(감)자 후 자본금	신주의 배 정 방 법	증 자 비 율
		종 류	수량 (주)	주 당 액면가액(원)	주 당 발행가액(원)			

기재상의 주의

1. 원인에는 유상증자, 무상증자, 전환권 또는 신주인수권의 행사, 합병, 주식배당 및 감자 등 자본금 변동원인을 기재한다.

2. 종류에는 보통주, 우선주, 전환주 등 지분증권의 종류를 기재한다.

나. 요약재무정보(최근 사업연도)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연도

■ 첨부서류

5-1. 최근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설립 중인 법인은 제외,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가 없을 경우 설립일로부터 최근 사업연도까지의 재무제표) 1부

※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관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3-1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투자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	직위	담당업무	연락처	주요경력	비고

기재상의 주의

1. 다른 지위(타회사 포함)를 겸직하고 있는 경우 비고란에 기재한다.

■ 첨부서류

6-1. 운용인력의 경력증명서(상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포함) 1부

7. 보수에 관한 사항

기재상의 주의

1. 정관에 규정된 업무집행사원의 보수지급 기준 및 방법을 기재한다.

8.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사항

■ 첨부서류

8-1.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평가·관리할 수 있는 내부통제장치에 관한 서류 1부

8-2. 이해상충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었는지에 대한 확인 서류 1부

8-3. 그 밖의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서류

9. 그 밖의 기재사항

■ 첨부서류

9-1. 신청인이 법 제249조의15제1항제5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9-2. 등록신청일 현재 대주주의 성명이나 명칭과 그 소유주식수를 기재한 서류 1부

9-3. 합작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외국인과의 합작을 통하여 업무집행사원이 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사본 1부

9-4.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등 대리권 수여에 관한 증빙서류 1부

9-5. 그 밖에 신청사실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국문으로 번역된 요약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외국에서 작성된 서류는 현지의 공증을 받아야 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5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귀하

나. 등록신청서 작성방법

(1) 상호 및 본점의 명칭·소재지

사원명 (상호·본점의 명칭)	본점 소재지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연락처	출자의 목적	출자가액
①	①		①	②	

① 업무집행사원의 법인등기부등본상 상호명, 본점소재지, 주소, 대표번호 기재

② '현금', '수표' 또는 '증권'으로 구분하여 기재

첨부서류

- ① 정 관 : 회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공증 받은 정관
- ② 법인등기부등본 : 말소사항을 포함한 법인등기부등본
- ③ 발기인총회, 창립주주총회, 이사회 의사록 등 : 설립 또는 등록 신청의 의사결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기재상 주의사항

- ◆ 모든 첨부서류는 사본인 경우 “원본대조필” 하여야 하며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서류 및 기재내용이 누락되어서는 안됩니다.
- ◆ 아울러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국문으로 번역된 요약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외국에서 작성된 서류는 현지의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2) 대표자 및 임원

임원수 : 명(상근: 명, 비상근: 명)

직위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유주식수(비율)	주요경력	등기·상근여부	담당업무	운용인력여부	임원자격적합여부	비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① 임원의 범위

- 원칙적으로 대표이사, 이사, 감사, 비상무이사 등 법인등기부등본상 직위를 기준으로 기재하되, 집행임원을 포함하여 기재
- 금융기관인 경우 “등기” 임원만 기재

② 외국인인 경우, 국적, 여권번호, 생년월일을 기재

③ 임원인면서 출자자인 경우 그 소유주식수 및 출자비율을 기재

- 의결권 있는 주식 혹은 출자지분을 기준으로 기재

④ 대표 경력만을 간략히 기재하고, 자세한 내용은 예시의 양식을 참고하여 별도로 작성하되 신청일 기준으로 역산하여 5년간의 경력을 자세히 기재

(예시)

성명	기간	회사명	부서명	직위
홍길동	2019.9 ~ 현재	00주식회사	주식운용부	차장
	2017.3 ~ 2019.9	AA주식회사	채권운용팀	과장
진달래	2020.1 ~ 현재	BB주식회사	임원실	부사장

⑤ 등기임원인 경우 “등기”, 비등기임원인 경우 “비등기”

상근임원인 경우 “상근”, 비상근임원인 경우 “비상근”으로 기재

⑥ 임원인면서 운용인력에 해당되는 경우 “Y”, 운용인력이 아닌 경우 “N”으로 기재

⑦ 지배구조법 제5조 제1항 각 호의 임원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Y” 기재

⑧ 다른 지위(타회사 포함)를 겸직하고 있는 경우, 비고란에 기재

첨부서류

- ① 이력서 : 인감도장(개인)으로 날인한 이력서
- ②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간 前 직장의 경력증명서(원본) 및 現 직장의 재직증명서(원본)
- ③ 소속기관 확인서
: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간의 소속기관으로부터 처벌 사실이 확인 가능한 서류 (②에 관련 내용이 표시된 경우 제외)
☞ 경력 단절(1개월 이상), 소속기관의 해산 등으로 과거 5년간 경력증명서 또는 소속기관 확인서 등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미제출사유 등을 부기하여 대표이사 등 당해 법인이 이를 확인하는 서류로 제출 가능
- ④ 결격사유조회 요청서 (☞ 양식 : <붙임1> 참조)
: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본적지) 등을 기재한 '결격사유조회 요청서'

기재상 주의사항

◆ 등록기준지(舊본적) 소재 읍면동사무소 등에 의뢰하여 회신받은 결격사유조회 회보서(사본)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을 권함

- ⑤ 결격사유 없음 확인서 등 (가.~나. 모두 제출)
 - 가. 대표자 및 임원이 지배구조법 제5조제1항 각호의 임원 결격사유가 없음을 본인 스스로 확인하는 서류, 인감도장(개인) 날인
(☞ 양식 : <붙임2> 참조)
 - 나. 대표이사 확인서
: 당해 회사 임원이 지배구조법 제5조제1항제8호, 동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2조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서류, 인감도장(법인) 날인
(☞ 양식 : <붙임3> 참조)
- ⑥ 외국인인 경우 국내 거소 등록이 된 경우라도 “여권 사본” 제출
- ⑦ 개인 인감증명서(원본)

(3) 목적사업, 회사의 연혁 및 설립이후 주요변동사항에 관한 사항

(4) 대주주 내역에 관한 사항

성명 (상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소유주식수	지분율(%)	회사와의 관계
					①

① 최대주주, 주요주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주주 여부 기재

[참고] 최대주주 정의 등

- ◆ (최대주주)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특수관계인이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가장 많은 경우의 그 본인
- ◆ (주요주주) 발행주식총수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
- ◆ (특수관계인 범위) 지배구조법시행령 제3조 참고

(5) 재무에 관한 사항

가. 자본금 내역

일자	원인	증가(감소)한 자본금의 내용			증(감)자 후 자본금	신주의 배정방법	증자 비용
		종류	수량(주)	주당 액면가액(원)			
	①	②					

① 자본금 변동 원인 기재 (유상증자, 무상증자, 전환권 또는 신주인수권 행사, 합병, 주식배당, 자본 감소 등)

② 지분증권 종류 기재 (보통주, 우선주, 전환주 등)

나. 요약재무정보(최근 사업연도)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연도	제×1기
	①	

- ①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상 주요 항목 기재
 (예: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영업수익,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첨부서류

- ① 최근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또는 감사보고서)
- ② 설립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법인의 경우, 설립일부터 최근 사업연도까지의 재무제표 (또는 감사보고서)
- ③ 설립 후 사업연도가 지나지 않은 법인은 설립일부터 신청일까지의 재무제표로 같음

 기재상 주의사항

- ◆ 감사보고서가 아닌 재무제표를 제출하는 경우 객관적인 외부 평가기관에서 재무상태를 확인 받은 후 증빙서류(ex. 회계법인의 재무제표 확인원)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6) 투자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	직위	담당업무	연락처	주요경력	비고
							①

- ① 다른 지위(타회사 포함)를 겸직하고 있는 경우, 비고란에 기재

 첨부서류

- ① 경력증명서 :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간의 경력증명서
 - ☞ 과거 5년간 경력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미제출사유 등을 부기하여 대표이사 등 당해 법인이 이를 확인하는 서류로 제출

- ② 상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양식 : <붙임 4> 참조)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의료보험증 사본 등
- ③ 전문인력 자격확인서류
: 금융투자전문인력등록증 또는 등록 확인서, 시험합격증, 교육수료증 등 투자운용전문
인력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7) 보수에 관한 사항

- ① 정관에 규정된 업무집행사원의 보수지급 기준 및 방법 기재

(8)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사항

첨부서류

- ①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평가·관리할 수 있는 내부통제장치에 관한 서류:
내부통제기준 등
- ② 이해상충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방법 및 절차 등 이해상충방지체계 내용 작성
- ③ 이해상충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었는지를 대표이사가
확인한 서류, 인감(법인) 날인
(☞ 양식 : <붙임 5> 참조)

(9) 그 밖의 기재사항

첨부서류

- ① 신청인이 법 제249조의15제1항제5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양식 : ☞ <붙임 6> 참조)
* 대표이사가 확인한 서류, 인감(법인) 날인
 - 건전한 재무상태 관련 (금융기관인 경우만 해당)
: 시행령 제271조의21제5항제1호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
☞ 건전한 재무상태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도 함께 제출
(ex. BIS비율, 순자본비율 보고서 등)
 - 사회적 신용 관련
: 시행령 제271조의21제4항제2호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
- ② 등록신청일 현재 대주주의 성명, 명칭, 소유주식수 및 비율을 기재한 서류

[참 고] 대주주의 범위

- ◆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특수관계인이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가장 많은 경우의 그 본인 (최대주주)
- ◆ 발행주식총수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 (주요주주)
- ◆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
- ◆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최대주주의 최대주주 및 대표자

- ③ 합작계약서 등 : 외국인과의 합작을 통한 신청 시에 한함
- ④ 위임장 등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권 수여에 관한 증빙서류
- ⑤ 물적설비 구비 확인
 - 사무실 관련 :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 ⑥ 그 밖의 타당성 심사를 위해 필요한 서류

붙임 1 결격사유 조회 요청서(양식)

(기관명)

20 . . .

문서번호 :

수 신 :

제 목 : 결격사유조회 요청서

귀 시·구·읍·면에 등록기준지를 둔 아래자에 대하여 결격사유기록사항을 조회요청하오니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근거법령 및 조회사유

근거법령	조회사유	조회범위 선택 (해당란 체크, 중복가능)			
		파산선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수형사실

○ 인적사항

성 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비 고
		주소	

조회요청 기관명 (직인)

붙임 2

임원 확인서(양식)

임원 결격사유 없음 확인서

결격사유 내용	확인 서명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거나 지배구조법 또는 동법에 따른 금융관계법령*(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법령 포함)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이 취소,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금융회사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다만, 해당 조치의 원인에 대해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 한정)로서 해당 조치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지배구조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장, 그 소속기관 또는 그 외의 감독·검사기관으로부터 임직원 제재조치(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의 경우는 해당 조치에 상응하는 통보 포함) 또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받은 자로서 다음의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원(업무집행책임자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임일(해임요구 또는 해임권고 포함), 직무정지(직무정지 요구 포함) 또는 업무집행 정지 종료일, 문책경고일로부터 각각 5년, 4년, 3년 • 직원(업무집행책임자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직, 정직, 감봉 요구일로부터 각각 5년, 4년, 3년 	
임원으로 재직할 업무집행사원과 여신거래잔액이 10억원 이상인 기업과 특수관계가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업무집행사원의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특정 거래기업 등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자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금융관련법령

본인은 상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2020. 00. 00.

성 명 : (인)

붙임 3 임원요건 충족 관련 확인서 (예시)

임원요건 충족 확인서

당사의 임원으로 선임된 자 중 당사와 여신거래잔액이 10억원 이상인 기업과 특수 관계가 있는 사람으로서 당사의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특정 거래 기업 등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자는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회사명) 대표이사 ○○○ (인)

※ 신청인이 은행인 경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임원이 없음을 확인

붙임 4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등 (예시)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발급번호	NPS201501234567890	발급일자	2015. 10. 20.	검증번호	c2MT
------	--------------------	------	---------------	------	------

성 명 : 홍길동
 생년월일 : 1983-00-00

출력조건 :

가 입 이 력		
자격유지기간	가입자종별	사업장명칭
2008-05-19 ~ 현재	사업장	홍길동 자산운용 주식회사

가입자 자격 상세내역				
사업장명칭(지역)	가입자종별	변동사유	변동일	처리일
홍길동 자산운용 주식회사	사업장	취득	2008-05-19	2008-06-02

사업장 명칭 변경 내역				
변동일	변동항목	변경전 명칭	변경후 명칭	처리일
2008-08-29	사업장명칭	김길동 자산운용 주식회사	박길동 자산운용 주식회사	2008-09-09
2010-01-11	사업장명칭	박길동 자산운용 주식회사	홍길동 자산운용 주식회사	2010-01-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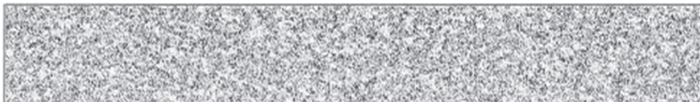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2015. 10. 20.

NPS 국민연금공단 이사



※ 본 증명서는 국민연금 EDI서비스(<https://edi.nps.or.kr>)에서 발급받은 문서입니다.
 ※ 향후, 신고인의 신고(신청)에 따라 증명서 내용이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본 증명서를 신청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증명서 원본은 스캐너(국민연금 EDI서비스에서 프로그램 다운로드)를 통해서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붙임 5 이해상충방지체계 관련 확인서 (예시)

이해상충방지체계 관련 확인서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5제1항 제4호에 따른 적절한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회사명) 대표이사 ○○○ (인)

붙임 6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 관련 확인서 (예시)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 구비 확인서

확인내용	확인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의 경우만 해당한다)	
최근 3년간 금융관련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하여 5억원의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448조, 그 밖에 해당 법률의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최근 3년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거나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이 취소된 자가 아닐 것	
현재 업무집행사원을 등록하려는 회사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하며, 업무집행사원 등록 관련하여 등록검토키간 중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고지할 것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금융관련법령

본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1조의21제5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며, 상기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20. 00. 00.

(회사명) 대표이사 000 (인)

특수목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제1절 기업재무안정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제2절 창업·벤처전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제 4 장 특수목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제 1 절 기업재무안정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1 | 도입배경

가. 기존 기업구조조정기구의 한계

- 구조조정에 이용이 가능한 일반 사모투자전문회사,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 전문회사 등 다양한 투자기구가 있으나 투자제한 등 각종 규제에 인하여 구조조정의 활용 유인이 낮았음

◆ 구조조정 활용 주요 제약요인

-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재산운용방법이 경영권 참여 목적 투자로 제한되어 부동산·NPL 등 부실자산 매입이 곤란하고 메자닌 투자 등 다양한 투자수단 이용이 불가
- 사모투자전문회사를 통한 직접 차입이 제한되어 레버리지 투자에 어려움이 있음

나. 도입 방안

- 자본시장을 활용한 기업구조조정 등의 활성화를 위해 국내 민간 자금이 보다 쉽게 모집될 수 있도록 기업재무구조 개선 목적에 전문화된 사모투자 전문회사(기업재무안정PEF)에 대한 자산운용 등의 특례를 신설

- 경영권 박탈이나 개입을 원하지 않는 기업도 기업재무안정PEF에 대한 자산 매각 등을 통해 재무구조 개선이나 구조조정 가능

다. 연혁

- (최초 도입) '10.3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3년 한시법으로 도입*

* 유효기간 : '10.6.13.~'13.6.12.

- (재연장) '13.8월 동 제도를 3년 한시법으로 재도입*

* 유효기간 : '13.11.14. ~ '16.11.13.

- 국내외 경기회복이 지연됨에 따라 기업의 재무구조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재무안정PEF의 기능이 여전히 필요한 점을 고려

- (상시화) '16.12월, 기업재무안정PEF 제도 상시화

- 기업재무안정 PEF를 상시화하여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한 기업에 PEF를 통한 민간의 자금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나아가 자본시장을 통한 구조조정이 가능해지도록 하기 위한 목적⁴⁹⁾

- (운용펀드 확대) '21.10월, 사모펀드 운용규제 일원화에 따라 설정 가능펀드 확대

- 기업재무안정 목적으로 설정·설립할 수 있는 사모집합투자기구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서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확대

49) 자본시장법 개정안 검토보고서(2016.11) 중 제안이유 발췌

2 | 기업재무안정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개요

가. 정의 (법 §249의22 ①)

- 재무구조개선기업(「금산법」에서 정하는 금융기관 제외)의 경영정상화 및 재무안정 등을 위하여 투자·운용하여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나. 재무구조개선기업 범위 (법 §249의22 ①)

- (1)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7호⁵⁰⁾에 따른 부실징후기업
-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 또는 제35조에 따라 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기업
-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 또는 제295조에 따라 법원에 파산을 신청한 기업
- (4) 채권금융기관*과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

* 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보험회사, 금융투자업자(경영금융투자업자 제외), 종합금융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연합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투자회사,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투자목적회사, 한국자산관리공사, 기술보증기금, 한국무역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회사, 유동화전문회사 및 위 기관에 준하는 외국 금융기관 (영 §271의27①)

50)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6. (생략)

7. “부실징후기업”이란 주채권은행이 신용위험평가를 통하여 통상적인 자금차입 외에 외부로부터의 추가적인 자금유입 없이는 금융채권자에 대한 차입금 상환 등 정상적인 채무이행이 어려운 상태(이하 “부실징후”라 한다)에 있다고 인정한 기업을 말한다.

** 채권금융기관의 총 채권액 중 50% 이상을 차지하는 채권금융기관이 개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해당기업에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체결한 약정 (영 §271의27②)

(5) 합병, 분할, 분할합병, 주식교환, 주식이전, 영업양수도 (일부양수도 포함), 자산매각, 지분양도 등의 방법으로 구조조정 또는 재무구조개선 등을 하려는 기업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무제표*상의 자본금의 총계가 납입자본금보다 적은 기업

*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에서 한정의견 이상의 감사의견을 받은 것만 해당

나. 재무제표상의 부채비율이 업종별 평균 부채비율*의 1.5배를 초과하는 기업

*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기업경영분석에 따른 해당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에 따른 업종)의 부채비율을 말하되, 기업경영분석에 해당 업종의 부채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전체 업종의 평균 부채비율

다. 다음 사유로 인한 손실액이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의 5% 이상인 기업

- ① 어음의 부도
- ② 외상매출금 또는 수출대금의 미회수
- ③ 보증채무의 이행

라. 6개월 이내에 둘 이상의 신용평가회사로부터 회사채 투자부적격 등급*을 받은 기업

* 신용평가회사로부터 받은 “본평가등급”을 말함

마. 사업연도 말 재무제표에 따른 영업손실이 최근 2년간 연속하여 발생한 기업

바. ‘가’~‘마’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계열회사

- (6) 그 밖에 기업의 재무구조개선 또는 경영정상화의 추진이 필요한 기업으로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다. 설립보고 등 (법 §249의10 ④, 영 §271의13 ⑤)

■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정·설립 및 변경보고 절차 등은 기관전용 또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보고 규제와 동일

- 즉, 기업재무안정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설정·운용하는 경우,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설정·설립 (법 §249의10 ④) 및 변경보고 (법 §249의10 ⑥) 관련 조문에 따라 관련 보고를 수행하면 됨
- 또한, 기업재무안정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업무를 영위하려는 자는 자본시장법 (§249의15①)에 따라 업무집행사원으로 등록해야 함
 - ☞ 기업재무안정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을 위한 “별도의” 업무집행사원 제도가 있는 것은 아님

라. 기금의 출자제한 등 (법 §249의22 ⑤)

■ 「국가재정법」 제13조제1항제2호~5호*의 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해당 기금 여유자금 운용액의 10% 이내의 자금을 해당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할 수 있음

* 국민연금기금, 공무원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군인연금기금

- 이 경우 기금이 출자한 금액은 투자목적회사에 출자한 금액을 합하여 산정

3 | 기업재무안정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재산의 운용

가. 집합투자기구 재산 운용방법

(1) 기업재무안정 목적에 의무 운용⁵¹⁾ (법 §249의22 ②,③, 영 §271의27 ④,⑤,⑦)

■ 기업재무안정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투자목적회사는 그 집합투자 재산을 운용할 때에는 사원이 출자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출자한 금액의 50% 이상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함

- ① 재무구조개선기업이 발행한 증권의 매매
- ② 재무구조개선기업이 채무자인 대출채권 등 채권, 이에 수반되는 담보권 및 그 밖의 권리의 매매
- ③ 재무구조개선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영업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의 매매
- ④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재무구조개선기업에 대한 자금의 대여 및 지급의 보증
- ⑤ 자본시장법 제249조의22제3항에 따른 투자목적회사*의 지분증권에 대한 투자

*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주주 또는 사원인 경우로서 주주 또는 사원의 출자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함

51) 위반시 조치

- 법 제249조의22 제2항을 위반하여 운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법 제446조 45호)

(2) 여유자금의 운용⁵²⁾ (법 §249의22 ②, 영 §271의27 ⑥)

■ 기업재무안정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투자목적회사는 기업재무안정 목적 등의 투자로 운용하고 남은 재산을 다음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음

- ① 증권에 대한 투자
- ② 증권에 대한 투자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장내파생상품 또는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
- ③ 재무구조개선기업의 인수·합병에 드는 자금의 대여 또는 지급의 보증
- ④ 금융기관 등에 대한 30일 이내의 단기대출
- ⑤ 금융회사*에의 예치

* 시행령 §79②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이에 상당하는 외국 금융회사 포함)

- ⑥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에 대한 투자
- ⑦ 어음*(기업어음증권은 제외)에 대한 투자

* 시행령 §79②5호에 따른 어음

나. 재산운용 제한 (법 §249의22 ⑥, 영 § 271의27 ⑩)

■ 기업재무안정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투자목적회사는 6개월 미만의 기간 중에는 취득한 지분증권을 처분해서는 아니 됨⁵³⁾

52) 위반시 조치

- 법 제249조의22 제2항을 위반하여 운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법 제446조 45호)

53) 위반시 조치

- 법 제249조의22제6항을 위반하여 지분증권 등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처분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법 제446조 45호)

- 다만, 그 지분증권을 계속 소유함으로써 사원의 이익을 명백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밖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미리 금융위(금감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6개월 미만의 기간 중에 이를 처분할 수 있음
 - ① 투자대상기업의 영업이 정지된 경우
 - ② 투자대상기업이 3개월 이상 조업을 중단한 경우
 - ③ 투자대상기업의 주식에 대한 공개매수에 응하는 경우
 - ④ 기업재무안정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존립기간 만료 등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⑤ 투자대상기업의 합병 등으로 인하여 투자자 보호, 금융시장의 안정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제2절 창업·벤처전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1 | 도입배경 및 연혁

가. 도입배경

- 창업·벤처기업의 성장기반 조성 및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창업·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여 원활한 자금 조달 및 투자 활성화를 유도⁵⁴⁾

나. 연혁

- (최초 도입) '16.12월, 자본시장법에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조항(법§249의23) 신설
- (운용펀드 확대) '21.10월, 사모펀드 운용규제 일원화에 따라 설정 가능 펀드 확대
 -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주된 목적으로 설정·설립할 수 있는 사모집합투자기구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서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확대

5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의안 원문 중 발체
(의안번호 2003977, 제안일자 2016.11.30.)

2 | 창업·벤처전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개요

가. 정의 (법 §249의23 ①)

■ 창업·벤처기업등의 성장기반 조성 및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투자·운용하여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전용 사모집합 투자기구

나. 창업·벤처기업의 범위 (법 §249의23 ①, 영 §271의28 ①)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창업기업*

* 다만, 해당 창업기업이 창업하거나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업종의 중소기업인 경우 제외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3)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또는 같은 법 제15조의3에 따른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4) 「기술보증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기술사업자

(5)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문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6)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다. 설립보고 등 (법 §249의10 ④, 영 §271의13 ⑤)

- 창업·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정·설립 및 변경보고 절차 등은 기관전용 또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보고 규제와 동일
 - 즉, 창업·벤처전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설정·운용하는 경우,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설정·설립 (법 §249의10 ④) 및 변경보고 (법 §249의10 ⑥) 관련 조문에 따라 관련 보고를 수행하면 됨
 - 또한, 창업·벤처전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업무를 영위하려는 자는 자본시장법 (§249의15①)에 따라 업무집행사원으로 등록해야 함
 - ☞ 창업·벤처전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을 위한 “별도의” 업무집행사원 제도가 있는 것은 아님

3 | 창업·벤처전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재산의 운용

가. 집합투자기구 재산 운용방법

(1) 창업·벤처기업 지원 목적에 의무 운용⁵⁵⁾ (법 §249의23 ②,③, 영 §271의28 ②~⑦)

- 창업·벤처전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투자목적회사는 그 집합투자 재산을 운용할 때에는 사원이 출자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출자한 금액의 50% 이상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함

* 다만, 투자회사 또는 투자대상기업 선정 곤란의 사유로 2년 내에 50% 이상의 비율 달성이 어려운 경우, 미리 금융위 승인을 받아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 연장 가능

55) 위반시 조치

- 법 제249조의23 제2항을 위반하여 운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법 제446조 45호)

- ① 창업·벤처기업등이 발행한 증권에 대한 투자
- ② 자본시장법 제249조의23제3항에 따른 투자목적회사*의 지분증권에 대한 투자
 - * 창업·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주주 또는 사원인 경우로서 주주 또는 사원의 출자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함
- ③ 창업·벤처기업등이 채무자인 대출채권 등 채권, 이에 수반되는 담보권 및 그 밖의 권리의 매매
- ④ 창업·벤처기업등이 개발 또는 제작하며, 다른 사업과 회계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업에 대한 투자
- ⑤ 창업·벤처기업등으로부터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지식재산권 및 이의 사용·실시를 위한 권리의 매입

(2) 여유자금의 운용⁵⁶⁾ (법 §249의23 ②,③, 영 §271의28 ⑤)

■ 창업·벤처전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투자목적회사는 창업·벤처기업등의 성장기반 조성 및 건전한 발전을 위한 투자로 운용하고 남은 재산을 다음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음

- ① 증권에 대한 투자
- ② 금융기관 등에 대한 30일 이내의 단기대출
- ③ 금융회사*에의 예치

* 시행령 §79②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이에 상당하는 외국 금융회사 포함)

56) 위반시 조치

- 법 제249조의23 제2항을 위반하여 운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법 제446조 45호)

- ④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에 대한 투자
- ⑤ 어음*(기업어음증권은 제외)에 대한 투자
* 시행령 §79②5호에 따른 어음
- ⑥ 투자대상인 창업·벤처기업등에 대한 금전의 대여

4

**창업·벤처전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 현황 등 보고**

(법 §249의23 ⑤, 영 §271의28 ⑧)

- 창업·벤처전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다음의 사항을 금융위(금감원)에 보고해야 함
 - ① 법 제249조의23제2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운용 현황
 - ② 창업·벤처전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 관련 사항
 - ③ 그 밖에 투자자 보호, 금융시장의 안정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FAQ

- 제1절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금 설립 관련
- 제2절 재산운용 관련
- 제3절 투자목적회사 관련
- 제4절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금 변경보고 관련
- 제5절 경영권 참여보고 관련
- 제6절 GP 등록 관련
- 제7절 2021.10월 사모펀드 제도 개편 이후 규정 관련
- 제8절 기 타

제 5 장 FAQ

제 1 절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설립 관련

1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설립보고서 유한책임사원(LP) 관련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는지?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설립(변경)보고서 첨부서류 중 LP 관련 사항은 제출대상이 아님
 - 정관 등에 기재된 LP 관련 사항은 모두 마스킹한 후 제출하여야 함
 - ※ 설립보고 뿐만 아니라 모든 기관전용 사모펀드 관련 보고(투자구조 등 보고 제외)시 LP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보고 및 제출 대상이 아님

2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설립한 이후 금융위(금감원) 설립 보고 이전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설립보고서 및 첨부서류 등은 어느 시점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는지?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설립보고 및 첨부서류는 “설립시” 기준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 설립 이후 변경사항은 설립보고 이후 별도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변경보고를 하여야 함

3

금융지주회사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GP)이 될 수 있는지?

- 금융지주회사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GP가 될 수 없음
 -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의 경영 관리업무 등을 제외하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를 영위할 수 없기 때문에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GP가 될 수 없음

4

금융회사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LP)으로 참여하는 경우 금산법*상 출자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금융회사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LP로 참여하는 경우 금산법상 출자승인대상이 아님
 - 다만, 금융회사가 “경영참여목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GP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금산법상 출자승인대상임

5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LP)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

-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LP (적격기관투자자) 요건을 갖춘 자만으로 구성된 경우, 참여 가능
 - 다만,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사원 총수를 계산할 때,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가 그 지분을 10% 이상 취득하는 경우, 당해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 수를 합하여 계산하여야 함

6

유한책임사원(LP)에 대한 손익의 분배 또는 순위 등을 정관에서 차등 적용할 수 있는지?

- 합자회사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사원의 손익 분배 또는 순위 등을 투자자 간 계약(정관)에 따라 자유롭게 정할 수 있음
 - 다만,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정관이 투자자의 이익을 명백히 침해할 경우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요건에 위배될 수는 있음

7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내 투자심의위원회에 유한책임사원(LP)이 직접 참여하거나 유한책임사원(LP)이 지정한 자가 참여할 수 있는지?

- LP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재산인 주식 또는 지분의 의결권 행사 등 업무집행 사원(GP)의 주요 업무에 관여할 수 없음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내 투자심의위원회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 의사결정 등을 수행하는 기구로서 LP 또는 LP가 지정한 자가 참여할 수 없음

8

업무집행사원(GP)의 대주주가 유한책임사원(LP)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

- 원칙적으로 자본시장법상 적격기관투자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LP로 참여할 수 있음
 - 다만, GP 관련 LP와 다른 LP간 적절한 이해상충방지장치를 마련하여야 하고, GP에 대한 업무관여 금지 등 자본시장법령상 행위규제를 준수하여야 함

9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LP)*이 집합투자증권을 모두 보유한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영 제271의14제4항)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영 제271의14제5항)의 의미?

- 법 제 249조의11제6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설정·설립된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의미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LP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LP의 요건을 갖춘 자를 뜻함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자)

10

재단법인의 경우, 전문투자자인 금융회사 및 금융공공기관이 출자한 재단법인만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할 수 있는지?

- 금융회사 및 금융공공기관이 출자한 재단법인이 아닌 경우라도 비상장법인의 LP 요건을 갖춘 경우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 가능

제2절 재산운용 관련

1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자본시장법 제249조의7제5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임원의 임면 등 투자하는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력 행사가 가능하도록 투자하는 경우 임원 선임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지?

- 임원 임면 등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 행사가 가능하도록 지분증권 또는 주권 관련 사채권(CB, BW 등)에 투자할 수 있음
 - 임원 선임 등을 조건으로 지분증권 또는 주권 관련 사채권에 투자하는 경우 임원 선임 등에 대한 내용이 계약상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동 증권 취득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임원을 선임하여야 함

2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71조의10제17항제1호의 방법으로 교환사채(EB)에 투자하는 경우 임원 선임권을 보유하여야 하는 대상 회사는?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EB 발행회사가 아닌 교환권 행사로 인해 지분을 취득하게 되는 회사에 대한 임원 선임권을 보유하여야 함

3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이외의 자가 공동으로 임원 선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71조의10제16항의 공동투자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는지?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자와의 공동투자는 인정되지 않음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71조의10제16항에서 예정하고 있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공동투자 요건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다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공동 운용하는 경우로 한정됨

4

투자목적회사(SPC) 설립시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인·허가·등록 등을 받아야 하는지?
투자목적회사(SPC) 설립 후 금융감독당국에 보고 등의 의무가 있는지?

- SPC는 자본시장법 제249조의13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면 되며, 금융감독당국의 인·허가·등록 등을 받을 필요는 없음
 - 다만,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SPC를 설립하는 경우 2주 이내에 SPC에 관한 사항을 금융위(금감원)에 변경보고하여야 함

5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30% 이상을 출자한 유한책임사원(LP)인 금융회사가 투자 이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경우 그 초과분을 처분하여야 하는지?

- 같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회사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출자 총액의 30%를 초과하여 출자할 수 없음
 - 따라서, 금융회사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 출자분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처분하여야 함

6

자본시장법 제249조의16제4항의 “계열회사” 범위에 외국 계열회사도 포함되는지?

- 외국 계열회사도 포함되기 때문에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외국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 등에도 5%이상 초과 취득할 수 없음

제3절 투자목적회사 관련

1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회사(SPC)가 또 다른 투자목적회사(SPC)를 설립하여 투자할 수 있는지? 즉, 복층형 투자목적회사(SPC) 설립이 가능한지?

- 사모펀드 제도개편('15.10.25) 이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복층형 SPc 설립은 허용
 - 다만, 사원 수는 복층형 SPc에 투자한 SPc의 투자자수도 모두 합산하여 그 합이 100인 이내여야 함
 - ※ (참고) 법령개정('21.10.21)에 따라 기업재무안정 및 창업벤처전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도 복층형 SPc 설립·투자 가능

2

투자목적회사(SPC)의 주주나 사원으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투자목적회사(SPC) 이외의 자가 참여할 수 있는지?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SPc 이외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만이 SPc의 주주나 사원으로 참여 가능
 - ① SPc가 투자하는 회사의 임원 또는 대주주
 - ② SPc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한 금융기관으로서 출자전환 등을 한 자
 - ③ 일정 요건을 갖춘 전략적 투자자(SI)*
 - * 다만, 자본시장법 시행령 §271의19 ② 2호 요건을 충족할 것

3

외국법인*도 자본시장법상 전략적 투자자(SI)가 될 수 있는지?

*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 국내 법인이 아닌 외국 법인은 SI가 될 수 없음
 - 자본시장법상 SI는 국내에서 제조업 등의 사업을 하는 법인으로 한정됨

4

전략적 투자자(SI) 요건 중 하나인 ‘제조업 등’의 범위는?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 등의 사업을 하는 자’ 라는 의미는 통상적인 사업을 위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함

5

다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설립한 투자목적회사(SPC)에 투자할 수 있는지?

- 원칙적으로는 펀드별로 각각 SPC 지분을 50%씩 취득하는 방식으로 다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설립한 SPC에 투자 가능
 - 다만, LP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투자구조를 안내하고 투자자금을 납부(이행)받은 경우 동의로 간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합산하여 해당 SPC에 50% 이상 투자 가능*
- * 금융위원회 행정지도(~'23.12.31, 연장될 시 연장된 일자까지)

6

다른 종류의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설립한 투자목적회사(SPC)에 투자할 수 있는지?

- 종류가 다른 사모집합투자기구가 SPC 공동투자 금지(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설립·투자한 SP에 투자하는 경우와 그 반대의 경우도 동일)

7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법인은 아니지만, 이와 유사한 사회기반시설사업 시행법인의 경우 15년 이내 지분처분 의무가 적용되는 것인지?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법인이 아닌 사회기반시설사업 시행법인(“시행법인”)은
 - 법 제249조의13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15년 이내 지분처분 의무가 배제
 - 다만,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성격·특징, 시행법인의 역할 및 동 시행법인에 대한 투자 기간 등을 고려할 때
 - 일정한 조건을 갖춘 시행법인에 대해서도 15년 이내 지분처분 의무 적용 예외 인정

8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투자목적회사(SPC)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레버리지 한도(법 제249조의7제1항) 및 투자목적회사(SPC) 관련 조문이 모두 적용되는지?

- 원칙적으로 다른 법률에 따른 SP의 경우에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설립·투자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 제249조의13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관리·감독을 받아야 함
-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한 법인*(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고, 해당 법률의 목적 달성을 위해 관리·감독되는 법인)은 예외적으로 해당 법률에서 정한 요건에 의해 설립·운영할 수 있음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법인(규정 §7-41의6⑩3.)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한 특수목적
 법인(조특세법 §104의31①의 투자회사에 한함)
 (규정 §7-41의6⑩4.)

- 이 경우, 법 제249조의13에 따른 SPC가 아니지만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할 수 있는 법인이며, 법 제249조의13의 요건 및 법 제249조의7에 따른 레버리지 한도가 적용되지 않음
 - 15년내 지분처분 의무도 적용 배제(영 §271의10⑮, 규정 §7-41의6⑩)

9

15년 이내 지분처분 의무를 부담한다면 법 제249조의13에 해당하지 않는 투자목적회사(SPC)에 투자할 수 있는 것인지?

- 15년내 지분처분 여부와 무관하게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법 제249조의13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SPC 및 이와 유사한 법인 설립·투자가 금지

10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목적회사(SPC)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금산법상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 법 제249조의13의 요건을 갖춘 SPC 등*은 경영참여 목적 투자에서 배제되므로, 금산법상 승인대상 아님
 - * 법 제249조의13 요건 갖춘 SPC, 타 법령의 요건을 갖추어 설립된 법인으로서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한 법인, 외국 투자대상자산 취득을 목적으로 설립된 외국법인(영 제271조의10)

11

외국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을 목적으로 설립된 외국법인은 자본시장법 제249조의13의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것인지?

- 법령의 요건을 갖춘 외국법인*은 법 제249조의13의 요건 및 법 제249조의7에 따른 레버리지 한도가 적용되지 않고, 15년 이내 지분처분 의무도 적용되지 않음

* 법 제249조의13에 따른 SPC와 유사한 목적 또는 형태를 가진 외국법인으로서 외국 투자대상 자산의 취득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국내자산이 총 자산의 30% 미만인 외국법인

12

외국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을 목적으로 설립된 외국법인은 실체를 갖춘 외국법인을 포함하는 것인지?

- 법 제249조의13에 따른 SPC와 유사한 목적 또는 형태로 설립된 외국법인을 의미하므로 실체를 갖춘 외국법인을 포함하는 것은 아님

제4절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변경보고 관련

1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정관이 변경되는 경우 반드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변경보고를 하여야 하는지?

- 정관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설립(변경) 보고서 첨부서류로 정관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기재출한 설립(변경) 보고서상 내용이 변경되지 않는다면 변경보고 의무는 없음
 - 다만, 정관 변경으로 설립(변경) 보고서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 일로부터 2주 이내*에 변경보고 하여야 함
 - * 다만, 변경 사유에 따라 변경보고 기한은 달라질 수 있음

2-1

업무집행사원(GP) 관련 사항이 변경된 경우 당해 업무집행사원(GP)이 운용 중인 모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변경보고 하여야 하는지?

- GP의 변경사항에 대한 GP변경보고를 이행한 경우 동일한 건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변경보고*는 이행하지 않아도 됨
 - * 추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변경보고시 GP의 변경사항도 변경대비표에 표시(GP변경보고 번호 기재)

2-2

무한책임사원(업무집행사원 포함)의 임원 변경 관련 변경보고시 제출서류는 무엇인지?

- 신규 임원이 선임된 경우 해당 임원의 이력서, 경력증명서(징계내역 포함), 결격사유 없음 확인서, 신원조회 관련 서류 등을 첨부서류로 함께 제출하여야 함*

* 다만, 무한책임사원(업무집행사원 포함)이 금융기관인 경우 제외

2-3

변경보고 대상이 되는 '사실상 임원'의 범위는?

- 등기 임원이 아니면서 명예회장,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행장, 부행장, 부행장보, 전무, 상무, 이사 등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는 자*

* 무한책임사원(업무집행사원 포함)이 금융기관인 경우 등기임원만 보고 대상

3

(일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기업재무안정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전환할 수 있는지?

- 일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기업재무안정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전환할 수 있음
 - 다만, 사원 전원 동의 등 정관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사업목적 등을 변경하여야 하며, 동 사항은 변경일로부터 2주 이내에 금융위(금감원)에 변경 보고하여야 함

4

변경보고서 제출시 보고서에 변경내역만 기재하면 되는지?

- 변경사항이 반영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보고서 일체”를 제출하여야 함
 - 아울러 변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변경대비표”를 첨부

5

변경보고 사항이 연속하여 발생한 경우 최종 변경사유 발생일 기준으로 변경보고해도 되는지?

- 서로 다른 날짜에 발생한 경우라 하더라도 연속 발생한 변경보고 사유를 합하여 한번에 변경보고 할 수 있음
 - 다만, 이 경우에도 최초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2주 이내에 변경보고 하여야 함

6

업무집행사원(GP) 또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인력이 변경되었을 때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 신규운용인력의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와 투자운용전문인력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 금융투자업규정 별표2-3 참고(증권운용전문인력, 부동산운용전문인력,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운용전문인력 요건에 맞는 서류 첨부)
 -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설립보고시에도 위의 서류 제출(운용인력으로 보고서상 기재된 인력에 한함)

제5절 경영권 참여보고 관련

1

경영참여 목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란?

- 자본시장법 제249조의7제5항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되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 경영참여 목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여부는 펀드 설립시 확정하여 펀드 설립 보고서, 정관에 반영해야 함
 - 집합투자기구 운용 과정에서 경영참여로 투자목적 변경하는 경우 펀드 설립보고서, 정관 변경 및 금감원 보고해야 함
- 경영참여 목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라도 펀드재산을 모두 법 제249조의7제5항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필요는 없으며,
 - 집합투자재산의 일부를 법 제249조의7제5항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경우에도 경영참여 목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함

2

자본시장법 제249조의7제5항 각 호의 방법으로 투자한 경우 반드시 경영참여 목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는 것인지?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다른 회사에 대한 경영권 참여, 사업구조 또는 지배구조의 개선 등을 위하여 자본시장법 제249조의7제5항 각 호의 방법으로 투자한 경우에는 경영참여 목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
 - * 개별집합투자기구가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지분을 그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20%를 취득했으나, 의결권 행사는 5%만 하는 경우라도 경영참여 목적 펀드에 해당

3

경영참여 목적으로 취득한 지분증권에 대해 15년 이내 처분 의무가 적용되는데, 지분증권의 처분 대상 및 처분 범위는?

- 경영참여 목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법 제249조의7제5항 각 호의 방법으로 취득한 지분증권을 모두 처분해야 함

4

경영권 참여보고 이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지분을 추가 취득한 경우 다시 경영권 참여보고를 해야 하는지?

- 추가적으로 경영권 참여보고를 하지 않아도 됨*

* 투자대상 회사별로 해당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최초 경영권 참여 투자시 1회만 보고 하면 됨

5

경영권 참여보고시 지분율 및 투자주식수는 의결권 없는 지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지?

- 의결권 있는 지분만 대상으로 하며 의결권 없는 지분은 제외함

- 특히, 주주명부 등 증빙서류에도 취득하는 지분이 '의결권 있는 지분'임을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함

6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해외 투자목적회사 등을 통해 투자하는 경우에도 경영권 참여 보고 대상인지?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외국투자대상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설립한 외국법인*의 지분을 취득한 경우, 경영권 참여 목적 투자가 아니므로 경영권 참여 보고 대상이 아니나
 - 해외 투자목적회사를 통하여 외국기업에 대한 경영권 참여 투자를 한 경우에는 경영권 참여 보고를 할 필요가 있음

* 법 제249조의13에 따른 SPC와 유사한 목적 또는 형태를 가진 외국법인으로서 외국 투자 대상자산의 취득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국내자산이 총 자산의 30% 미만인 외국법인

7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경영권 참여 투자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 무엇을 제출해야 하는지?

- 입증서류를 일괄적으로 정하기는 어려우나,
 - 일반적으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SPC가 보유하고 있는 의결권이 10%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투자대상회사의 주주명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임원 선임의 경우 임원 선임 관련 자료(투자대상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 등)를 제출하여야 함

제6절 GP 등록 관련

1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설립시 마다 업무집행사원(GP)으로 등록해야 하는지?

■ GP 등록(1회) 이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계속 설립 가능

※ 다만, 사모펀드 제도개편 이전 등록 GP인 경우에는 사모펀드 제도개편('15.10.25.) 이후 기관 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설립하려면 개정법에 따라 GP로 등록하여야 함

2

업무집행사원(GP) 등록 관련 자기자본 산정 기준은?

■ 등록신청일의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산정함

3

외국 법인이 업무집행사원(GP)이 될 수 있는지?

■ 국내 법인에 한해 GP가 될 수 있음

4

업무집행사원(GP)의 감사가 '운용인력'이 될 수 있는지?

■ GP의 감사는 운용인력이 될 수 없음

○ 감사는 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 사용인 직무를 겸하지 못함

제7절 2021.10월 사모펀드 제도 개편 이후 규정 관련

1

舊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개정법령에 따른 유한책임사원(LP)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법적지위는?

* 개정법령 시행일 전에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설립·보고된 집합투자기구

- 舊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개정법령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며, 개정법령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관련 조항이 적용됨
 - 다만, 개정법령에 따른 LP요건을 불충족한 경우에는 개정법령에도 불구하고 법령 개정전 운용방법(종전의 법 §249의12 및 법 §249의13)이 적용(부칙 §8②)

2

舊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15년 존속기한이 적용되는지?

- 법령개정전 운용방법으로 운영하는 舊경영참여형 사모펀드(부칙 §8②)는 15년 이내 존속기한 의무를 준수해야 함
 - 다만, 개정법령에 따른 LP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정관에 반영하고, 변경 보고를 이행해야 존속기한을 변경할 수 있음

3

개정법령 시행전 舊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유한책임사원(LP)이 개정법령 시행후 그 집합투자기구에 추가 출자할 수 있는지?

- 舊경영참여형 사모펀드가 개정법령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LP로만 구성된 경우* → 개정 법령의 요건을 충족한 LP의 추가 출자약정 가능
 - * 정관을 변경하여 개정법령에 따라 운용할 수 있음

- 舊경영참여형 사모펀드가 개정법령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LP를 포함한 경우
 - 원칙적으로 해당펀드의 LP는 추가 출자약정 불가(기존의 출자약정을 이행하기 위한 추가 출자는 가능)
 - 다만, 해당펀드의 기존 LP 중에서 법 제249조의11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LP는 개정법령 시행 이후에도 추가 출자약정 가능(부칙 §8⑤)

4

舊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유한책임사원(LP)이 개정법령 시행후 그 출자지분을 다른 투자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지?

-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LP 구성과는 상관없이 개정법령의 요건을 충족하는 다른 LP에게만 출자지분 양도 가능

5

개정법령 시행 당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LP)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개정법령 시행 이후 유한책임사원(LP) 요건을 충족하게 된 경우 개정법령에 따른 운용방법(개정된 법 §249의12 및 법 §249의13)이 적용되는지?

- 개정법령 시행일 이후 개정법령에 따른 LP 요건을 모두 충족하게 된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정관 변경 및 금감원 보고 이후 개정법령에 따른 운용방법이 적용됨

6

개정법령 시행 이전 등록된 업무집행사원(GP)이 운영하는 모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투자운용전문인력 운용 의무가 3년 유예되는 것인지?

- 시행일 이전 설립·보고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만 투자운용전문인력 운용 의무를 3년간 유예*(시행일 이후 보고된 집합투자기구는 적용X)

* 3년 유예 기한 : '24.10.20.까지

7

개정법령 시행 이전 설립·보고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개정법령 시행 이후에 운용인력을 등록(변경)하는 경우에도 개정법령에 따른 투자운용전문인력으로 등록해야 하는지?

- 시행일 이전 설립·보고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여도 시행일 이후 운용인력을 새로 등록(변경)할 경우에는 투자운용전문인력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등록(변경)해야 함

제8절 기타

1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지구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 업무자료 → 공통업무 → 공통업무자료*

* 자료검색란에서 '기관전용'을 검색하면 매분기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지구 현황을 파악할 수 있음

2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지구 관련 법규를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

■ 관련 법규는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음

3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지구의 회계처리는 어떤 기준을 따르는지?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지구는 한국회계기준원이 제정한 회계처리기준을 따름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지구에 대하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5003호가 적용됨

○ 한국회계기준원 홈페이지(www.kasb.or.kr) → 회계기준 → 특수분야회계기준 → 제5003호 집합투자지구

4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해산보고 방법은?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청산인은 해산일부터 30일 이내에 해산의 사유 및 연월일, 청산인에 관한 사항을 금융위(금감원)에 보고하여야 함
 - 해산 보고양식은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별책서식 1 별지 <제8호> 서식 (투자회사 등 해산보고서)을 사용하며,
 - 해산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해산등기부등본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아울러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재산상황을 조사하여 청산인으로 취임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산목록과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 금융위(금감원)에 제출하여야 함

업무집행사원 및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보고 실무

제1절 GP 등록 이후 보고 전 준비사항

제2절 GP 및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보고

제 6 장

업무집행사원 및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보고 실무

제1절

GP 등록 이후 보고 전 준비사항

1 | 전자문서교환시스템 가입 및 금융정보교환망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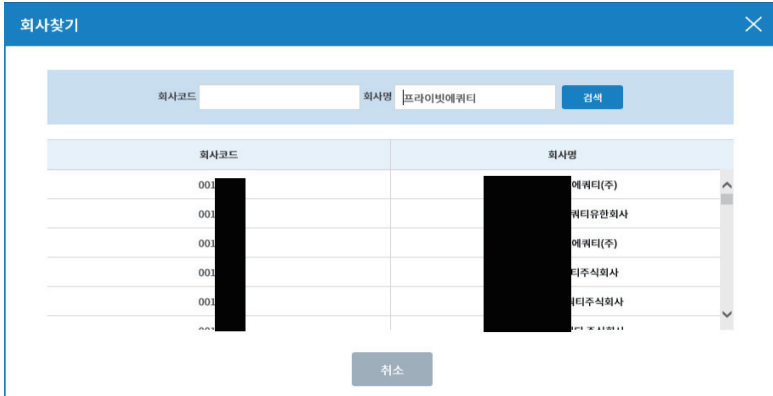
1) 전자문서교환시스템(<https://edes.fss.or.kr>) 가입

- 온라인신청 > 회사등록신청 > EDES 가입

The screenshot shows the FEDI 전자문서교환시스템 interface. At the top, there's a navigation bar with '로그인' (Login) and '회원가입' (Sign Up) buttons. The main menu includes '발신' (Outgoing), '수신' (Incoming), '승인' (Approval), '접수' (Receipt), '보안문서' (Security Document), and '환경관리' (Environment Management). A dropdown menu is open over the '접수' category, showing '온라인신청' (Online Application) and '회사등록신청' (Company Registration Application). Below the menu, there's a 'NEWS 공지사항' (News/Notice) section with a date range from 2022-07-18 to 2022-07-22. At the bottom, there are four service tiles: '발신' (Outgoing) with sub-items '공문서 등록' and '승인대기함'; '수신' (Incoming) with '미수신함' and '수신대장'; '승인' (Approval) with '승인대기함' and '미발신문서함'; and '접수' (Receipt) with '접수대기함' and '미수신함'.

- 회사코드의 경우 '회사코드 > 회사코드찾기' 버튼을 눌러 업무집행사원의 법인명*을 검색

* 회사명 검색이 안 될 경우, 금감원 GP 등록 담당자에 연락하여 확인



- 회사명 선택 후, 아이디/패스워드 발급 진행

2) 금융정보교환망(http://fines.fss.or.kr) CPC 활성화

- EDES 가입으로 부여받은 아이디, 패스워드로 로그인
- 메뉴 > CPC지원 클릭하여 권한승인 신청



- ※ 향후 CPC 시스템을 통해서 안내·협조사항 발송시 해당사항은 ‘CPC 지원 > 요청자료/회신현황’에서 확인 가능
- 담당자 변경시, CPC지원 > CPC알림메시지 수신관리에 담당자 연락처 업데이트

CPC지원

CPC(Central Point of Contact)제도 지원용
위탁 시스템(02-3145-5440)

요청자료/회신현황

CPC지원시스템 견의사항

CPC알림메시지 수신관리

CPC알림메시지 수신관리

휴대전화1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button" value="인증"/>	<input type="button" value="삭제"/>	<input type="checkbox"/> 수신동의 <input type="checkbox"/> 업무시간 종료 후에도 수신 동의
휴대전화2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button" value="인증"/>	<input type="button" value="삭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수신동의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업무시간 종료 후에도 수신 동의
휴대전화3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button" value="인증"/>	<input type="button" value="삭제"/>	<input type="checkbox"/> 수신동의 <input type="checkbox"/> 업무시간 종료 후에도 수신 동의

이메일1	<input type="text" value="aaaaaaaaaaaaaaaaaaaaaaaa"/>	<input type="text" value="@naver.com"/>	<input type="button" value="삭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수신동의
이메일2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button" value="삭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수신동의
이메일3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button" value="삭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수신동의

[알려드립니다]
 1. 업무시간 종료 후에도 수신 동의'항목에 동의하지 않으신 경우 업무시간 종료 후 도착한 문건은 다음 날 09시 이후에 도착 알림메시지가 전송됩니다.
 2. 휴대폰 등록 시 본인인증을 위한 메시지는 업무시간 종료 후에도 전송됩니다.

제2절 GP 및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군 보고

1 | GP 보고 및 제출 관련

1) GP 변경보고

- 금융정보교환망(<http://fines.fss.or.kr>) 접속
- 아이디/패스워드(GP 계정)로 로그인하여 진행
- 집합투자기군 > GP보고 > 업무집행사원 변경보고서

- 변경보고서, 변경대비표(변경 전후 기재), 기타첨부서류(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만)를 제출

2) GP 재무제표 제출

- 금융정보교환망(http://fines.fss.or.kr) 접속
- 아이디/패스워드(GP 계정)로 로그인하여 진행
- 집합투자기구 > GP보고 > 업무집행사원 재무제표 제출

업무집행사원 재무제표 제출

수신 : 금융감독원

제목 : 업무집행사원 재무제표 제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5 제9항에 따라 불임과 같이 업무집행사원 재무제표를 제출합니다.

1. *업무집행사원 명칭 :

2. *재무제표 작성 기준일 :

3. *주요 내용 : (원단위로 작성)

4. *작성자 정보 :

필임

1. *재무제표 : (감사보고서, 회계법인에서 발급받은 재무제표확인원 등)

취소 등록

보고인 금융감독원관리자 인

- 재무제표 작성 기준일은 결산월의 말일을 기재(ex. 12월 결산 -> 20XX.12.31.)

※ 자본시장법 제249조의15제9항에 따라 기한(사업연도 경과 후 45일)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유의

2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금 보고 관련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금 보고는 펀드별로 진행해야 하며, 이를 위해 펀드별로 전자 문서교환시스템에 가입 후 보고 진행 필요*

* (예) GP가 2개의 펀드(펀드1, 펀드2)를 설립한 경우, 각 펀드별로 계정을 생성하여 보고 진행 필요 (펀드1 보고는 펀드1 계정으로, 펀드2 보고는 펀드2 계정으로 진행)

1) 전자문서교환시스템 가입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금의 경우 아래와 같이 회사코드 발급을 신청해야 함
- 회사코드 발급 신청 : 전자문서교환시스템 가입신청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금의 법인등기부등본을 pef@fss.or.kr로 송부 하면 회사코드 발급 후 회신(0~1일 소요)
- 회신 받은 회사코드로 전자문서교환시스템 가입을 진행 (세부과정은 GP의 가입 과정과 동일)

2) 설립·변경·해산 등 보고

- 금융정보교환망(<http://fines.fss.or.kr>) 접속
- 보고가 필요한 집합투자기금 계정으로 로그인
- '집합투자기금 > 기관사모펀드'에서 보고가 필요한 항목을 선택하여 보고 진행

기관사모펀드

설립보고
투자구조등 보고
변경보고
해산(청산)보고
제출현황조회
경영권참여투자내역보고
경영권참여투자내역보고현황
특정사유발생보고
특정사유발생보고 목록

- 반송된 보고건은 반송사유 등을 반영하여 재보고* 진행 필요 (기존 보고건에서 수정제출 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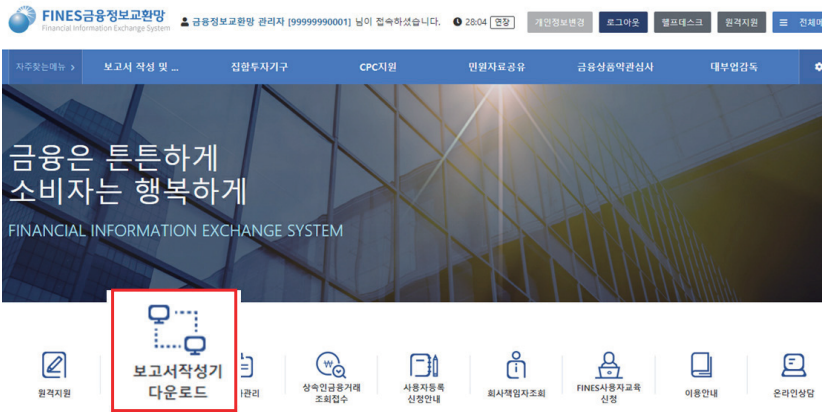
* 변경보고 재보고시 시스템상에 입력하는 LP수·약정액·이행액은 가장 최근 수치를 기준으로 입력

※ 자본시장법 제249조의12제1항에 따라 특정사유발생보고는 발생일자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고할 수 있도록 유의

3) 정기보고서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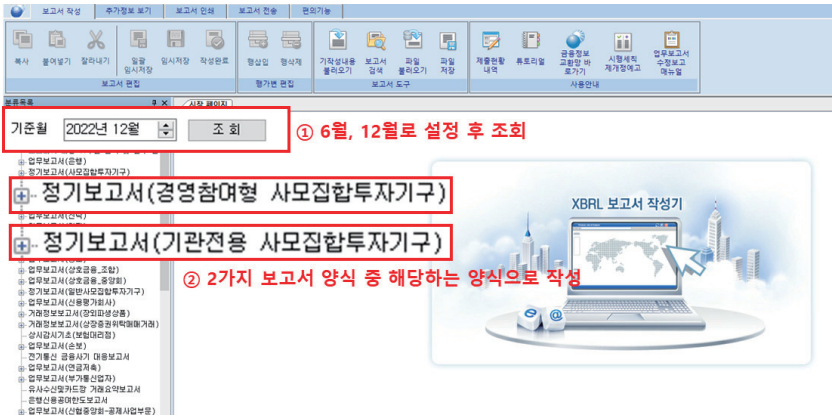
- 금융정보교환망(<http://fines.fss.or.kr>)에서 보고서작성기 다운
- 보고가 필요한 집합투자기금 계정으로 로그인(GP 계정X)

제6장 업무집행사인 및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 보고 실무



- 기준월 설정 후 경영참여형*/기관전용 중 해당하는 양식으로 작성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LP 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령개정전 운용방법이 적용되는
 옛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FAQ 7절 1번 확인)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양식 사용



※ 자본시장법 제249조의12제2항에 따라 기한(기준일*로부터 1개월)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유의

* 매 반기말(펀드재산총액 100억원 이상), 매 연말(펀드재산총액 100억원 미만)

참고자료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관련 서식

구분	서식명	비고
기관전용 사모펀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설립(변경) 보고서	시행세칙 별책서식1 제46의7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정기보고서	시행세칙 별책서식1 제46의8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재산운용에 대한 예외승인 신청서	시행세칙 별책서식1 제46의9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처분기한 연장승인 신청서	시행세칙 별책서식1 제46의10호
	사모집합투자기구 경영권참여 보고서	시행세칙 별책서식1 제46의11호
	사모집합투자기구 특정사유 발생 보고서	시행세칙 별책서식1 제45의7호
	투자회사등 해산 보고서	시행세칙 별책서식1 제8호
업무 집행 사원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업무집행사원 등록신청서	규정 별지 제3의3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업무집행사원 변경보고서	
	업무집행사원 등록취소 신청서	시행세칙 별책서식1 제46의4호